

20세기 전반 彦陽의 小農社會⁽¹⁾

이 영 훈

경남 울주군 언양면의 토지대장과 호적에서 관찰되는 20세기 전반 토지소유와 농민의 기본 형태는 자작농 체제였다. 산간부 도작지대라는 자연환경이 그 배경을 이루었다. 통설적 이해와 달리 일제의 지배기에 언양면의 농가경제는 오히려 안정되었다. 대량의 인구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언양장을 중심으로 시장경제가 발전한 것도 다른 한편의 원인이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법제로서 가족의 성립과 가족 규모의 확대였다. 그에 따라 동성의 친족집단이 확산되었다. 가족결합의 강화와 친족집단의 확산은 양반과 상민 신분 간의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0세기 전반 언양의 소농사회는 근대적 전환과 유교적 전환이 어울린 복선의 전환을 경험하였다.

주제어: 소농사회, 산간부 도작지대, 자작농체제, 근대적 전환, 유교적 전환, 복선의 전환

1. 머리말

이 글은 논증하기보다는 素描하는 것이다. 대상은 20세기 전반의 慶南 蔚山郡 彦陽面이다. 20세기 전반이라 함은 191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곧 朝鮮王朝의 패망, 日帝의 통치, 일제로부터의 해방, 大韓民國의 건국까지의 40년간이다. 그 사이 언양면이란 지역에서 전개된 사회·경제의 변화를 눈에 띄는 대로 옮겨 그린 것이 이 글이다. 소묘하는 것, 굳이 논증하지 않은 것이 地域史 연구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에 가려져 눈에 띄지 않은 것은 그럴 수 없다. 어느 한 곳을 너무 세밀하게 그려도 지역사가 아니다. 그저 편하게 눈에 띄는 전부를 그리는 것이 지역사이다. 그려 놓고 보면 望外の 성취가 있음을 느낀다. 時限을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잡았기 때문에 곧이어 시행된 農地改革을 포함한 이후의 역사는 그림의 대상이 아니다. 필요에 따라 소묘의 시한을 1950년대까지로 늘리기도 한다. 그렇지만 1950년대 이후는 아무래도

(1)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해외연수 지원 사업'의 후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결과물이다.

나중에 그리게 될 그림의 몫이다.

망외의 성취라 했는데, 그에 대해 설명하겠다. 우선은 지배적 기억으로부터의 解放感이다. 그 시대의 역사는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조선인을 다스려 온 전통 왕조가 망하고, 異民族이 지배하고, 그에 저항하는 民族運動이 일어나고, 격렬한 국제적 전쟁으로 막을 내린 시대이다. 그에 대한 집단기억으로서 역사가 정치화하는 것은 어찌면 불가피하기도 하다. 그 시대의 역사는 獨立運動의 역사이다. 다른 것은 역사가 아니라는 턱도 없는 주장이 한 때를 풍미하기도 하였다. 그 政治史는 저항과 협력의 틀에서 쓰였다. 經濟史 연구도 수탈인가 개발인가의 二項對立에 규정되었다. 農村社會史의 서술에서는 小作爭議나 農民組合을 둘러싼 농민운동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벌어진 여러 사건을, 그것들을 둘러싼 자연과 문화의 환경까지 輕重을 가릴 것 없이 늘어놓으면, 이제껏 지배적으로 중요했던 것들이 의외로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그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있음을 깨닫는다. 1932년 언양면 중심가의 약 400호에 電氣가 들어왔다. 같은 해에 그 곳에서 赤色農民組合運動이 일어났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였을까. 농촌 주민의 입장에서선 전자가 훨씬 중요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껏 역사가의 눈에는 후자만 중요하였다. 赤色農組를 주도한 사람은 日警에 체포되어 2년의 懲役刑을 살았다. 이후 대한민국은 그의 독립운동 공적을 기려서 勳章을 수여하였다. 그런데 釀造場을 경영하여 이룬 재산을 학교 증축과 빈민 구제를 위해 희사한 어느 有志가 있었다. 누가 언양면의 발전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던가. 후대의 역사가는 전자만을 기억하고 표창하지만,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많이 접하다 보면, 불현듯 역사라는 것이 많은 경우 후대의 정치가와 역사가에 의해 만들어진 權威主義的 記憶에 다름 아님을 깨닫는다. 그러한 해방감으로 그린 그 시대의 역사에서 나는 나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자취를, 그들이 교유한 이웃과 마을을, 결국 나의 존재를 발견한다. 그것을 두고 망외의 성취라 한 것이다.

다른 하나를 더 소개하면, 長期持續으로서 역사의 再發見이다. 그 시대 농촌 주민의 삶에 있어서 열심히 노동하고 축적하여 가정경제의 자립을 이루고, 자녀를 건강하게 출산하여 양육하고, 좋은 배필을 구하여 짝을 지워 주고, 조상 제사를 받들 후계자를 길러 家系를 계승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었다. 이러한 가정경제의 단위는 소규모 가족의 농업, 곧 小農이었다. 한국사에서 소농의 가정경제는 언제 성립하였을까. 나는 대개 17세기 이후라고 생각하고 있다. 언제까지였을까. 소농이 여전

히 人口의 다수를 점했던 1960년대까지였을 것이다. 이 글의 대상이 되는 20세기 전반은 그 300년 이상 역사의 마지막 국면에 해당한다.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 관찰한 사건들의 상당 부분은 小農들의 所有와 勞動, 다시 말해 그들의 가정경제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 이야기는 오래 전부터 이어져 왔으며, 또 이어져 갈 것이었다. 소농들이 남긴 삶의 자취는 그 자체로 장기지속의 역사이다. 20세기 전반, 일제가 조선인을 지배한 그 시기를 나는 日政期라고 부른다. 그 일정기에 소농들의 삶의 이야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 점은 이 글의 소묘에서도 명확하다. 그렇지만 그 변화가 재래의 전통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변화는 전통에 편승하여 슬그머니 인간 삶의 현장에 침투하였다. 그 점에서 전통은 오로지 낡은 것이라기보다 새롭게 계승되고 창조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선별된 기억의 역사에서 이러한 장기지속은 관찰되지 않는다. 民族과 國家를 주체로 하는 권위주의적 역사학에서 조선왕조 시대는 일정기와 끊어져 있고, 일정기는 대한민국 시대와 끊어져 있다. 끊어진 역사는 否定의 역사이다. 前代가 後代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들의 적나한 삶의 자취를 그린 역사에서 前後 시대는 연속하는 변화로서 또는 변화하는 연속으로 온전히 연결되어 있다. 이어진 역사는 肯定의 역사이다. 21세기 초 오늘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있는 조선시대와 일정기를 느끼는 것이다. 그런 장기지속의 시간 감각으로 역사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즐거움과 보람, 그것을 두고 망외의 성취라 한 것이다.

글의 제목을 ‘彦陽의 小農社會’라 한 것은 이러한 장기지속의 관점에서 20세기 전반의 韓國史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취지이다. 그 시대의 농촌은 소농을 지배적 구성원으로 했으며, 그런 의미에서 소농사회였다. 소농은 가족의 안정적 생존을 추구하는 합리적 경영체이다. 가족과 마찬가지로 소농은 성립, 확장, 해체의 과정을 밟는 有機體이다. 그 과정을 일관하는 소농의 행동원리는 가족의 안정적 생존에 맞추어져 있다. 그로 인해 소농은 利潤의 극대화보다 所得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소농경영에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한 비용 개념은 일반적으로 성립해 있지 않다.

소농은 독립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소농은 모자라는 耕地나 耕牛 등의 생산수단을 농촌의 지배계층인 地主로부터 빌려야 한다. 소농은 그 대가로 地代를 지불한다. 소농과 지주의 토지 임대차 관계는 소농사회를 구성하는 중심축이다. 또한 소농은 농업생산과 가정경제의 영위에 필요한 공동노동, 수리, 營林, 치안, 교육, 신앙 등의 조

건을 확보하기 위해 이웃과 협동해야 한다. 소농의 이웃과의 협동은 친족 또는 촌락을 비롯한 제반 단체의 결성과 운영으로 실현된다. 소농사회는 개별 소농과 그를 둘러싼 各樣 社會의 총합이다.

소농사회의 제반 양태는 그를 둘러싼 자연환경, 문화환경, 시장환경, 정치환경에 민감하게 규정된다. 자연환경은 경지의 조성, 이용, 관리를 제약하는 자연적 諸條件을 말한다. 평야지대나 산간지대나 입지조건을 비롯하여 물, 비료, 연료, 원료의 취득과 관련된 河川과 山林의 유무나 이용방식이 그와 관련된 요소들이다. 문화환경은 소농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신앙, 그것들이 지시하는 사회적 성취의 기준을 말한다. 소농은 가족의 안정적 생존을 추구하지만, 문화환경에 따라 그것은 一族의 번성, 職業의 계승, 身分의 향상과 같은 다양한 양태로 실현된다. 소농들이 상호 협동하거나 단체를 결성하는 원리도 문화환경의 차이에 따라 한결 같지 않다.

시장환경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지역 내 상업의 발전 수준, 지역 간의 교통사정, 특히 상업이 번창한 도시와의 거리가 중요하다. 大都市와 貿易港에 근접한 지역이라면 소농경영 역시 쉽게 상업화하거나 공업화의 대열에 참가할 수 있다. 정치환경은 소농으로부터 지대와 조세를 징수하는 地主와 國家와의 관계를 말한다. 지주와 국가의 역할이 소농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소극적인가 적극적인가, 약탈적인가 육성적인가에 따라 개별 또는 집단으로서 소농의 사회적 행동은 크게 달라진다.

2006~2007년 나는 동료 연구자와 더불어 蔚山廣域市 蔚州郡廳과 彦陽邑事務所의 협조를 얻어 1910~1970년대 언양면의 土地臺帳과 除籍簿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이미 몇 편의 창의적인 논문이 결혼과 가족을 주제로 작성되었다.⁽²⁾ 이 글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기초하고 있다. 그 외에 일정기의 신문, 관보, 읍지, 기타 문헌으로부터 언양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몇 차례의 답사도 있었다. 언양면은 조선왕조 시대 彦陽縣의 邑底이다. 언양현의 지역에는 18~19세기의 量案, 戶籍, 籌板 등이 전하고 있다. 그 밖에 兩班家에

(2) 박기주·김성남(2013): 「한국인 초혼연령의 추이: 전시기를 중심으로」.

박이택(2013a): 「20세기 언양지역의 인구변천 - 언양읍 호적 자료의 분석」.

朴二澤(2013b): 「20세기 언양지역의 가족구성의 변천 - 언양읍 제적부와 재제부의 분석」.

박이택(2014a): 「20세기 언양지역에서의 유년인구의 가족형태 - 언양읍 제적부와 재제부의 분석」.

朴二澤(2014b): 「20세기 언양지역에서의 노년인구의 가족형태 - 언양읍 제적부와 재제부의 분석」.

〈표 1〉 舊 上北面·中北面과 新 彦陽面の 所屬 里

1711년		1777년		1789년	1832	1861년	1894년	1910년	1914년 이후	
○面	○○里 邑內里 馬屹里 泉所里	上 北 面	松北里	松北里 北部里 南部里 於音里 盤於里 泉所里	松北里 邑內里 (東部 里· 南部里) 於音里 盤松里 盤湖里泉 所里	松北里 東部里 南部里 於音里 盤松里 泉所里	松北里 東部里 南部里 於音里 盤松里 泉所里 釜堤里	松臺里 東部里 路東里 路上里 西部里 南部里 於音里 盤松里 泉所里 盤湖里	彦 陽 面	松臺里 東部里 西部里 南部里 於音里 盤松里 盤泉里 盤淵里 盤谷里 大谷里 茶開里 平里 台機里 直洞里
			東部里							
北面	大谷里 庫下里 茶開里 機池里	中 北 面	瓮台里 庫下里 茶開里 直洞里	大谷里 茶介里 直洞里	盤谷里 茶開里 直洞里	盤谷里 茶開里 直洞里	大谷里 庫下里 茶開里 直洞里	盤谷里 茶開里 台洞里 機池里 直洞里 南洞里		

자료: 彦陽邑誌發刊推進委員會(2001, p.88, 136).

서 전하는 고문서가 있다. 언양면을 지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은 20세기의 토지대장과 제적부에 비견될만한 선행 시대의 자료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를 모두 활용하여 18~20세기에 걸친 언양 소농사회의 역사 전체를 복구하는 것은 장래의 연구과제로 미뤄져 있다. 이 글은 18~20세기 彦陽의 全體史를 추구하는 공동연구의 준비 작업에 해당한다.

2. 토지와 인구

2.1. 언양면의 성립

彦陽面은 원래 조선왕조 경상도 언양현 上北面과 中北面이었다. 상북면과 중북면의 성립 시기와 그에 속한 里에 관해서는 『彦陽縣戶籍大帳』(1711, 1777, 1825, 1863), 『戶口總數』(1789), 『彦陽縣邑誌』(1871, 1894, 1899, 1916, 1919)를 참조할 수 있다. 〈표 1〉은 이들 문헌으로부터의 정보를 종합한 것이다.

조선왕조 시대에 오늘날과 이어지는 지방행정구역으로서 面里制가 출현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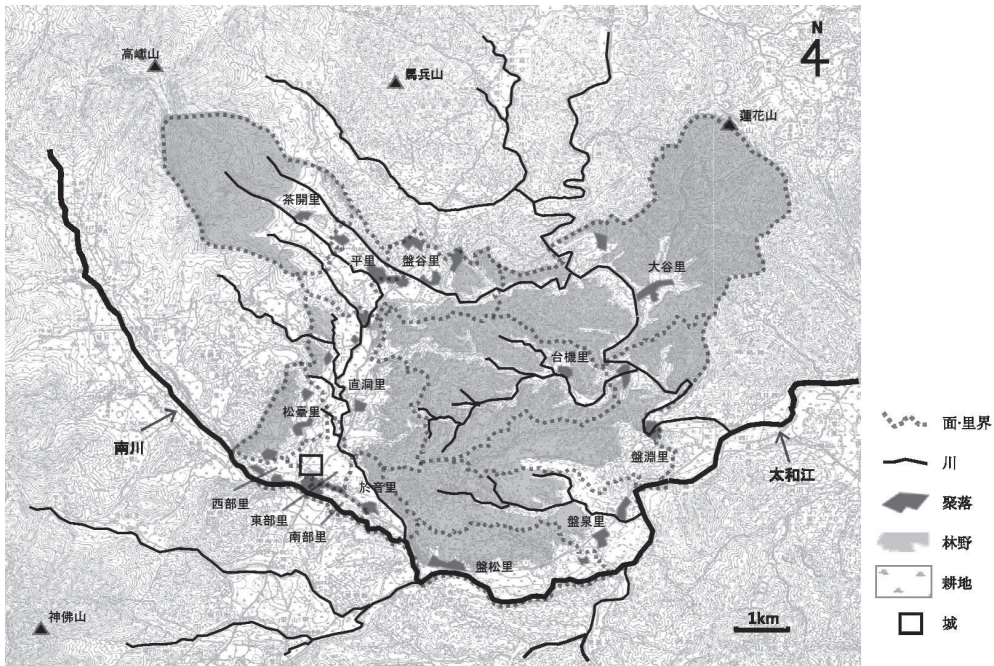
5家統事目이 반포된 1675년 이후의 일이다. 군현마다 진행의 차이가 있어서 언양현에서는 1711년까지 ○面,⁽³⁾ 北面, 南面의 3개 면이 있었다. 언양현 6개 면 - 上北面, 中北面, 下北面, 上南面, 中南面, 三同面 - 의 성립은 1777년의 호적에서 최초로 확인되는데, 실제 성립 시기는 그보다 더 빨랐을 것이다. 1777년 상북면의 7개 리와 중북면의 4개 리는 큰 변화 없이 1894년까지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서 일부 리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했으며, 리의 명칭이 고정되지 않고 번갈아 바뀌기도 했다. 1894년 11개인 상북면과 하북면의 리는 1910년 16개로 크게 늘었다. 18~19세기에 걸쳐 里가 두 셋으로 나뉘는 分里 현상이 널리 전개되었다. 예컨대 인근 울산부 대현면, 청량면, 농소면, 유포면 4개 면에 속한 동리는 1699년의 63개에서 1801년의 114개로 증가하였다[鄭震英(1993, p.7)]. 초창기의 총독부는 리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할 목적에서 그 같은 역사적 추이를 계승하여 리의 수를 늘렸다.

1914년 이후 총독부는 전국의 지방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다. 그에 따라 기존의 317개 군이 220개 군으로, 4,336개 면이 2,522개 면으로, 6만 2,532개 리가 2만 7,595개 리로 통폐합되었다. 그 결과 인구와 토지의 규모가 균일한, 그리고 상호간의 경계가 명확히 그어진 지방행정구역이 성립하였다. 언양 지방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다. 구 언양군이 신 울산군에 편입되었으며,⁽⁴⁾ 구 상북면과 중북면이 신 언양면으로 통합되었다. 아울러 구 16개 동리는 신 14개 동리로 통폐합되었으며, 리의 명칭도 일부 변경되었다. 그 과정에서 구 언양군 中南面의 평리 일부, 구 울산군 斗東面 대곡동의 전부(후술), 동 천전동의 일부, 구 울산군 斗西面 구수동의 일부, 동 차동의 일부가 신 울산군 언양면에 편입되었다. 반면 구 언양현 중북면 반곡리의 일부가 신 울산군 두동면으로 떼어졌다. 결과적으로 구 상북면과 중북면에 비해 신 언양면의 영역은 확장되었다.

1914년 총독부가 측정한 地形圖에서 언양면과 소속 14개 리의 경계를 확인하면 <지도 1>의 점선과 같다. 이처럼 면과 리의 경계가 명확히 그어진 것은 1914년 지방행정구역 재편에 의해서였다. 지도에는 각 리에 속한 크고 작은 聚落의 입지가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전까지 리라 하면 인간의 집단적 주거로서 이러한 취락이나 그 몇 개의 집합을 가리켰다. 리에 소속한 경지, 하천, 임야나 그것을 포괄한 리의 고유한 영역이나 그것을 감싼 里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3) 縣內面이었다고 추정되고 있다[彦陽邑誌發刊推進委員會(2001, p.88)].

(4) 彦陽縣, 蔚山府가 彦陽郡, 蔚山郡으로 된 것은 1894년의 甲午更張에 의해서이다.



자료: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지도 1〉 언양면의 환경

이 다소 생소한 주장과 관련해서는 동부리와 대곡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도 1〉에서 보듯이 동부리는 彦陽邑城(지도 상의 사각형)을 감싸고 있다. 곧 구 언양현의 官衙가 놓인 邑底에 해당하는 곳이다. 그런데 1914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자료에 의하면, 盤淵里가 새롭게 생겨날 때 동부리의 일부를 흡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越智唯七(1917, p.593)]. 그런데 〈지도 1〉에서 보듯이 반연리와 동부리 사이에는 직동리, 반천리, 어음리가 가로 놓여 있다. 다시 말해 반연리가 생겨날 때 동부리의 일부를 흡수했다는 이야기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의문에서 〈지도 1〉의 원자료인 地形圖를 자세히 살펴보면 반연리, 태기리, 대곡리의 접경부에 또 하나의 동부리가 있음을 발견한다. 다시 말해 구 언양현에서 동부리는 두 곳으로 나뉘었으며, 그 하나가 반연리에 속하였다. 동부리를 주도한 언양현의 鄉吏들이 무언가의 필요에 따라 현의 동쪽에다 또 하나의 동부리를 설치한 것이다. 아마도 향리들의 契房村이었을 터이다.⁽⁵⁾

(5) 契房村이란 鄉吏들이 사사로이 설치한 除役村을 말한다. 거기서 수취하는 조세는 향리들의 소득이 되었다. 丁若鏞(1979, p.227) 참조.

어느 아버지 리가 다른 리를 건너뛰어 아들 리를 설치한 이 같은 현상은 군현 간에도 있었다. 잘 알려져 있듯이 군현 간의 越境地가 그것이다. 마치 날아가 앉은 모양새로 하여 飛地라고도 하였다. 1914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은 이 오랜 기원의 월경지를 최종적으로 해소하였다[정요근(2014, p.158)]. 마찬가지로 이전까지는 면 또는 리의 경계는 불분명하거나 錯綜하였다. 중북면 大谷里에서 또 하나의 예를 찾을 수 있다. <표 1>에서 보듯이 대곡리는 1711년 언양현 북면에 속하였다. 1777년에는 상북면 웅태리로 소속과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1789년에는 고하리와 합쳐져 다시 대곡리로 되어 있었다. 이후 1831년까지 반곡리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1861년에도 마찬가지였다. 1894년에는 고하리와 분리되었으며, 대곡리라는 옛 명칭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1910년 대곡리와 고하리는 없어지고 반곡리가 복구되었는데, 저간의 사정이 매우 복잡하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해 다시 생겨난 대곡리는 구 반곡리의 일부와 인근 울산군 두동면 대곡동을 구역으로 하였다. 다시 말해 1894년 이후 언젠가 언양군 중북면 대곡리는 울산군 두동면으로 이속되었다. 그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두동면이 생겨나는 것은 1908년의 일인데[彦陽邑誌發刊推進委員會(2001, pp.95~96)], 그 때 인접한 언양군 중북면의 대곡리가 할양되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1910년 언양군 중북면에는 대곡리와 고하리가 합해졌다고 보이는 반곡리가 존속하였다. 이러한 연유에서 1900년대까지 울산군 두동면과 언양군 중북면이 경계는 애매하였다. 예컨대 1914년 지형도에는 구 행정구역의 경계도 표시되어 있는데, 구 중북면의 경계는 신 대곡리의 일부를 포섭해 있었다.

1914년 총독부의 지방행정구역 재편은 군, 면, 동리의 人口와 토지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을 뿐 아니라, 人的 緣故와 開發 順序에 따라 들쭉날쭉했던 군 간, 면 간의 경계를 바로 잡았다. 나아가 이전에는 없던 리 간의 경계를 그었다. 이로써 총독부는 인구와 토지를 포괄한 지방행정의 기초 단위로서 면과 리를 창출하였다. 지방행정의 새로운 중심은 구래의 里가 아니라 面으로 바뀌었다. 면의 행정은 도로, 교량, 하천, 제방, 관개, 배수, 시장, 조림, 농사, 축산, 묘지, 위생, 소방 등에 두루 걸쳤다. 면의 행정을 책임지는 面長은 총독부의 관료로서 判任官의 직위를 부여받았다. 면사무소를 구성한 면장과 面書記는 구래의 2등 신분이었던 향리를 위시한, 개항 이래 그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승시켜 온, 신흥 유력자로 충원되었다[金翼漢(1996, pp.56~86)]. 그렇게 면은 일제하에서 새롭게 생겨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그렇게 탄생한 彦陽面이 인접한 삼동면의 구수리를 포섭하여 오늘날의 彦陽邑이 되는 것은

1973년이다.

2.2. 자연환경

〈지도 1〉은 1914년의 지형도로부터 언양면의 공간을 채우는 林野, 耕地, 聚落, 川을 개략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면의 서북은 언양의 鎭山인 高巘山(1,033m)이다. 그 옆은 馬兵山(504m)인데, 그 자락이 길게 뻗어 언양면의 중심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면의 서쪽 경계, 송대리 뒤편은 야트막한 花藏山(285m)이다. 고현산 너머는, 지도에는 없지만, 加智山(1,241m)이 높이 솟아 있다. 면의 동남은 神佛山(1,208m)과 肝月山(1,069m)이다. 고현산,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은 오늘날 영남 알프스로 불리는 산맥을 구성하는 7대 名山 중의 4개이다. 가지산과 고현산의 계곡에서 발원한 川이 언양면의 남쪽 경계를 감싸고 흐르는데, 곧 南川이다. 남천 북변의 사각형 표시는 彦陽邑城이다. 구 언양현의 東軒, 軍器庫, 獄舍, 客舍, 養士齋 등의 官衙가 읍성 남문의 안쪽에 밀집하였다. 조선왕조가 망한 뒤 그 자리에 彦陽公立普通學校가 들어섰다. 남문 바깥은 서부리와 남부리인데, 언양현의 향리와 상인들이 집주했던 곳이다.

다시 지도의 북쪽을 보면, 고현산 계곡에서 세 줄기의 川이 흘러내린다. 그것들이 조성한 최초의 취락과 경지가 언양면 서북의 다개리이다. 거기서 두 줄기의 천이 남쪽으로 흘러 직동리 초입에서 합쳐지는데, 곧 坎川이다. 감천은 직동리와 어음리를 거쳐 남천과 합류한다. 그 사이 화장산에서 몇 줄기의 천이 흘러 감천과 합해진다. 이렇게 다개리에서 南流하는 천을 따라 좌우에 폭 1~2km, 길이 8km 가량의 평야가 펼쳐 있다. 평야를 따라 북에서 남으로 다개리, 평리, 직동리, 송대리, 서부리, 동부리, 남부리, 어음리가 차례로 자리를 잡았다.

다개리에서 동쪽으로 흐른 다른 한 줄기의 천은 마병산 자락의 반곡리를 거쳐 대곡리에 이르러 북방의 두동면에서 발원한 長川과 합류하는데, 곧 盤龜川이다. 반구천은 대곡리, 태기리, 반연리의 동쪽을 흘러 남천과 만난다. 여기서부터가 太和江이다. 이 언저리는 지형에 구애되어 천이 심한 曲流로 흐르나 물이 깊어 연못처럼 고요하였으며, 이에 曲淵이라 불렀다. 다개리에서 출발한 천이 장천과 만나 반구천을 이루어 곡연에 이르기까지의 溪間에도 좁고 긴 경지가 조성되었다. 태기리의 골짜기에서도 한 줄기의 천이 흘러 반구천과 합류하는데, 그 사이에도 소규모 농지가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 남천이 어음리를 지나 반송리, 반천리, 반연리를 거쳐 곡연에 이르는 사이, 남천과 마병산 자락 사이에 비교적 넓은 경지가 펼쳐졌다.

〈표 2〉 구 상북면과 중북면의 수리시설(1910년대)

	貯水池	所在里	蒙利面積 (斗落)	湫	所在里	蒙利面積 (斗落)
上北面	교동못(橋洞堤)	반송리	120.5	盤松湫	반송리	622.2
	황사못(黃沙堤)	반송리	52.3	大廳湫	반송리	355
	새못(新堤)	반호리	139.4	沙湫	반송리	154.8
	가막못(釜堤)	반연리	211.9	浮里湫 於音湫	서부리 어음리	2,276.6 239.4
中北面	추성못(秋成堤)	직동리	201.9	石川湫	다개리	60
	직동못(直洞堤)	직동리	49.8	古羅湫	다개리	160.5
	가고못(加古堤)	직동리	142.5	폼리湫	반곡리	120.5
	기지못(機池堤)	태기리	488.4	大谷湫	대곡리	248
	다개못(茶開堤)	다개리	442.7			
	황검못(黃劍堤)	평리	546.3			

자료: 彦陽邑誌發刊推進委員會(2001, pp.58~61).

비고: 1斗落=200坪.

이처럼 언양면은 溪間에서 發源한 川水를 용수원로 하는 山間部 稻作地帶의 전형 을 이루었다.⁶⁾ 언양면 곳곳에 川水나 地下湧水를 貯留한 못이 일찍부터 개발되었다. 다개리에 고현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담은 못이 있는데, 곧 茶開池이다. 다개지는 1469년에 편찬된 『慶尙道續撰地理誌』에서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그에 의하면 다 개지의 관개면적은 근방에서 가장 큰 12결이었다. 동 지리지는 이외에 松道里의 秋 成堤와 瓮谷里 機堤의 존재도 전하고 있다. 관개면적은 각각 5결과 9결 17부라고 하 였다. 송도리와 옹곡리는 오늘날의 송대리와 태기리이다. 『경상도속찬지리지』는 언양 이 유서 깊은 산간부 도작지대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6) ‘山間部稻作地帶’라는 용어는 히사마겐이치(久間健一)가 全北의 농업경영을 平野部稻作地帶 와 山間部稻作地帶로 구분하면서 사용한 것이다. 平野部는 全北平野를 끼고 있는 전주, 익산, 옥구, 김제, 정읍, 부안, 고창을 말하며, 山間部는 무주, 장수, 진안, 남원, 임실, 순창을 말한다. 평야부와 산간부의 농업경영을 규정한 지리적 조건은 판이하였다. 평야부에서는 水利組 습에 의해 개발된 대규모 貯水池가 관개의 주요 형태를 이룬 반면, 산간부에서는 共同水利로 서 전통적인 湫에 의한 관개가 발달하였다. 稻作의 경우, 山間部가 더 집약적인 土地利用과 높은 生産性을 보였다. 久間健一(1950, pp.392~408) 참조. 히사마는 경남의 농업경영에 대해 서는 평야부와 산간부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稻作地帶로 분류하였다. 나는 언양면의 농 업경영에 관한 한, 히사마가 소개한 전라도 산간부의 농업경영을 규정한 지리적 조건이 그대 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그의 ‘산간부도작지대’라는 용어를 여기서 借用한다.

1910년대에 두 차례 편찬된 彦陽邑誌는 구 상북면과 중북면의 수리시설을 다음의 <표 2>와 같이 열거하였다.

貯水池는 모두 10개이다. 그 가운데 『경상도속찬지리지』가 언급한 3개의 못이 있다. 관개면적은 도합 2,395.7두락이다. 湫는 9개이며, 관개면적은 모두 4,237두락이다. 상북면의 5개 보는 모두 남천을 수원으로 한 것이다. 그 가운데 浮里湫의 관개면적이 2,276.6두락으로서 압도적으로 컸다. 부리보는 <지도 1>에서 서부리 서쪽 끝 부분의 남천에서引入된 것으로서 서부리, 송대리, 동부리, 어음리를 적신 뒤 다시 남천으로 주입하였다. 부리보는 언양면 도작의 짓줄을 이루었다. 반면 고현산과 마병산 자락에 놓인 중북면의 주요 수리시설은 계간 천수를 담은 6개의 저수지였으며, 보는 4개로서 그 규모는 모두 작았다. 1910년대 언양면의 수리시설은 이상의 저수지와 보만은 아니었다. 1912년 언양면에는 26개의 크고 작은 저수지가 있었는데, 그에 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소개하겠다.

이상과 같은 자연환경에서 언양은 예부터 山多水冽 또는 山紫水明한 고장으로 알려져 왔다. 소설가 吳永壽(1909~1979)는 언양면 동부리 출생이다. 그는 그의 자전적 소설 ‘三湖江’에서 그의 고향을 “산이 깊고 물이 맑고 미나리로 널리 알려진 조그만 산간 촌읍”으로 회상하였다.⁽⁷⁾ 그는 평생 그가 어릴 적에 맛본 봄미나리의 향기로운 맛을 잊지 못하였다. 그의 고향에 대한 달콤한 기억에는 간월산 계곡에서 나는 엉개와 두릅, 남천에서의 川獵, 가을의 과일 등이 자리 잡았다. 오영수의 소설에서 20세기 초의 언양은 더 없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고장이다. 그렇지만 20세기 초의 제반 자료로 들여다 본 언양의 사회경제적 실태는 그렇게 풍요롭지만은 않았다.

20세기 초 언양의 경제, 사회, 문화를 가장 심각하게 제약한 것은 열악한 道路 사정이었다. 사방의 높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풍족한 천수는 일찍부터 언양을 산간부도작지대로 개발하였지만, 조그만 降雨에도 사방으로의 통행을 가로 막는 天然의 장애이기도 하였다. 1911년의 조사에 의하면 언양면에서 동으로 蔚山面까지 20여 km에 고개가 돌이고 하천이 여섯이었다. 도로는 대개 평탄하지만 橋梁이 전혀 없어서 하루아침의 비에도 며칠 간 교통이 두절되었다. 남쪽으로 梁山까지 30km에는 고개가 돌, 하천이 열인데, 경부선의 勿禁驛이 그 쪽에 있어서 비교적 왕래가 잦지만, 이 역시 강우 시에는 교량이 없어 교통이 두절되었다. 북쪽으로 32km의 경북 慶州까지

(7) 오영수가 소설의 제목으로 칭한 三湖江은 구수리 앞 남천을 가리키는데, 어디까지나 그가 임의로 붙인 江名이다.

는 고개 하나에 하천이 다섯인데, 마찬가지로였다. 서쪽으로 淸道까지 60km는 험한 고개가 여섯, 하천이 다섯으로서 더욱 그러하였다[朝鮮總督府農商工部(1911, p.158)].

1904년 4월 13일 울산의 時禮에서 彦陽을 거쳐 曲淵까지 약 30km를 여행한 일본인 農業技師의 눈에 비친 주변의 풍광은 다음과 같았다. 山嶽이 매우 급하고 높다. 큰 고개가 있는데 경사가 심하고 도로가 좁아 馬夫가 말 등의 짐을 내리고 스스로 지고 넘는다. 고개 부근은 나무가 조금 많지만, 언양 방면은 벌거숭이 산이다. 土砂가 무너져 河流를 메우지 않은 곳이 없다. 잦은 수해로 경지가 감소하고 있다. 논은 溪流를 이용하여 관개한다. 토지의 이용은 한계에 달하여 큰 고개의 마루까지 다락논으로 개간되었다. 언양에서 미나리가 무성하게 자라는데, 읍내의 污水가 모이는 곳이다. 경지는 결코 비옥하지 않으며, 언양 주변의 작은 마을 외에는 볼만한 들판이 없다. 이 일행은 전날 4월 12일 密陽에서 時禮까지를 여행하였다. 높은 산을 통과하는 도중의 谷間은 자갈로 메워져 도로인지 하류인지 경지인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었다. 密陽川 상류에는 밭에서 주워 모은 자갈로 두둑과 조그만 산을 이룬 것이 도처에 널렸다. 그들은 노래하였다. “전해들은 三途川邊의 돌무지도 눈앞의 자갈밭 한국의 들”[三成文一郎·有働良夫(1905, pp.75~78)].

이렇게 20세기 초 언양은 오염수의 회상과 동떨어진, 궁벽하기 그지없는 산촌이었다. 사방의 산은 험벗었고, 내는 막혔다. 도로가 열악하여 조그만 비에도 교통이 끊어졌다. 주요 운반 수단은 사람의 등이었다. 잦은 수해는 경지를 갉았다. 오랜 전통의 산간부 도작지대로서 언양면의 농업 개발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언양의 사회와 문화도 침체하였다. 1908년 『皇城新聞』은 언양에 대해 “산이 많고 물이 차가워 도읍의 변화한 모습이 없는데, 國朝 수백 년 이래 위대한 인물로서 후세에 큰 이름을 남긴 자가 없다”고 하였다.⁽⁸⁾ 지적된 그대로 언양에는 근읍 경주나 밀양에서 보는 일류의 양반 씨족이 발달하지 못했다. 조선왕조 500년에 걸쳐 언양 출신으로 文科에 급제한 사람은 2명에 불과하였다[손숙경(2012)]. 더구나 정치적 혼란이 심했던 舊韓末에는 주변의 험준한 山勢로 인해 도적떼가 들끓었다. 1900년 9월에는 火賊 100여 명이 雲門山에서 내려와 일제히 放砲하며 각리에 들어와 45호를 불태우고 15명의 부상자를 냈다. 양산 通道寺에는 수백 명이 活貧黨旗를 걸고 屯聚하였다. 1905년 5월에는 화적 40여 명이 총검을 지니고 彦陽城에 난입하였다. 그들은 관아의

(8) 『皇城新聞』 1908년 9월 2일.

〈표 3〉 彦陽面 土地의 内역(1912~1952)

단위: 坪

年度	畚	田	垓	社寺地	林野	道路	溝渠	溜池	河川	堤防	墳墓地	雜種地	合計
1912	1,992,650 (54.7)	1,168,185 (32.1)	205,616 (5.6)	685 (0.0)	158,095 (4.3)	811 (0.0)	1,202 (0.0)	35,203 (1.0)	265 (0.0)		77,509 (2.1)	235 (0.0)	3,640,456 (100.0)
1922	2,027,623 (55.4)	1,154,041 (31.5)	202,906 (5.5)	868 (0.0)	158,485 (4.3)	1,426 (0.0)	1,202 (0.0)	36,211 (1.0)	1,239 (0.0)		77,752 (2.1)	914 (0.0)	3,662,667 (100.0)
1932	2,118,798 (57.8)	1,053,373 (28.7)	201,671 (5.5)	1,015 (0.0)	162,159 (4.4)	6,931 (0.2)	1,866 (0.1)	36,391 (1.0)	5,631 (0.2)		76,485 (2.1)	702 (0.0)	3,665,022 (100.0)
1942	2,243,893 (61.1)	910,508 (24.8)	203,717 (5.5)	1,145 (0.0)	171,729 (4.7)	14,565 (0.4)	2,101 (0.1)	38,722 (1.1)	8,223 (0.2)	1,047 (0.0)	75,946 (2.1)	1,695 (0.0)	3,673,291 (100.0)
1952	2,209,642 (60.0)	909,246 (24.7)	204,542 (5.5)	1,145 (0.0)	174,572 (4.7)	18,547 (0.5)	13,103 (0.4)	63,021 (1.7)	11,339 (0.3)	1,047 (0.0)	75,946 (2.1)	3,578 (0.1)	3,685,728 (100.0)

자료: 『彦陽面土地臺帳』.

물건을 탈취한 다음, 邑中의 민가를 수색하여 佩物과 衣服을 빼앗았다.⁹⁾ 도적떼의 발호는 1911년까지 끊어지지 않았으며, 언양의 경제를 위축시켰다.

2.3. 토지의 구성

총독부의 土地調査事業에서 언양면의 토지가 측량되고 소유자가 査定되는 것은 1911~1912년의 일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지방행정 기초로 활용되는 土地臺帳이 조제되었다. 언양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별 면적을 1912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제시하면 〈표 3〉과 같다. 토지대장과 별도로 조제된 林野臺帳 상의 임야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1912년 언양면의 토지는 총 364만여 평이다. 지목은 畚, 田, 垓, 社寺地, 林野, 道路, 溜池, 溝渠, 河川, 堤防, 墳墓地, 雜種地로서 도합 12종이다. 畚은 199만여 평(54.7%), 田은 116만여 평(32.1%)이다. 이렇게 언양면 농업의 중심은 畚作에 있었다. 그래서 앞서 산간부 도작지대라 하였다. 답은 1942년까지 224만여 평(61.1%)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후는 1952년까지 220만여 평(60.0%)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그 사이 溜池와 河川敷地가 증가하여 그에 편입된 답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답과 대조적으로 전의 면적은 1912년의 116만여 평(32.1%)에서 1952년의 90만여 평

(9) 『皇城新聞』 1900년 9월 1일, 1905년 5월 29일.

(24.7%)으로 계속 감소하였다. 답작의 수익성이 높고 수리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답으로 지목 변환하는 전이 많았기 때문이다. 도로나 하천부지에 편입되는 전도 있었다. 1912년 20만 5,000여 평(5.6%)에서 1932년까지 20만 1,000여 평(5.5%)으로 조금 줄었는데, 道路 편입이 주원인이다. 이후 1952년까지 20만 4,000여 평(5.5%)으로 조금 늘지만, 1912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 같은 대지의 추이는 동기간 언양면의 人口가 정체하였음을 이야기한다.

社寺地는 종교시설의 부지이다. 1912년에 3필지 685평이 있었는데, 대곡리에 2필지, 태기리의 1필지이다. 대곡리 2필지의 소유자는 ‘대곡리’와 ‘김남곤 외 4인’이다. 태기리 1필지의 소유자는 ‘태기리’이다. 리가 소유자임으로부터 사사지는 洞祭가 거행되는 城隍堂의 부지로 짐작된다. 그런데 대곡리에서 사사지가 둘이고 소유자 명의가 각기 다른데, 그 이유를 알기 힘들다. 대곡리와 태기리를 제외한 다른 12개 리에서 사사지가 없는 이유도 알기 힘들다. 사사지는 1918, 1931, 1937년에 1필지씩 증가하는데, 앞의 둘은 耶蘇敎會의 부지이다. 기존의 塚地에 敎회가 건립되면서 지목이 사사지로 바뀌었다. 그런데 반천리 261번지에는 1911년부터 야소敎회가 있었지만 지목은 사사지가 아니라 塚였다. 송대리 404번지에는 天主敎會가 1911년부터 있었는데, 부지가 696평이나 되었다. 그 역시 지목은 대였다. 토지행정에 있어서 지목을 사사지로 사정함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 같지 않다.

林野는 앞서 지적한대로 임야대장 상의 임야가 아니다. 토지조사사업이 완료될 즈음인 1917년부터 총독부는 林野調査事業을 벌였다. 그 결과 임야대장이 조제되었다. 그 대장에 <지도 1>에서 보는 언양면 영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山地로서 임야가 등록되었다.⁽¹⁰⁾ <표 3>의 임야는 답, 전, 분묘지 등 다른 지목 사이에 介在한 것을 가리킨다. 1912년 그런 임야의 면적은 15만 8,000여 평인데(4.3%), 1922년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20년대 후반부터 조금씩 증가하여 1952년까지 17만 4,000여 평(4.7%)이 되었다. 산지에 가깝게 개간된 田의 경작이 포기되고 임야로 지목 변환한 경우도 있지만, 河川改修事業의 일환으로 堤防을 보강하기 위해 川邊의 전이 임야로 전환한 경우가 더 많았다. 반송리의 예를 보면 1928년부터 1945년까지 12필지 5,904평의 전이 임야로 지목 변환하였다. 산지에 접한 것은 3필지에 불과하고 나머지 9필지가 남천의 천변이다. 그 중의 6필지가 1928년에 임야로 일괄 전환하는데, 남천 改修工事의

(10) 彦陽面의 林野臺帳은 아직 전산화되지 못했다. 장래의 과제이다.

일환이었다.

道路는 1912년에 1필지 811평(0.0%)에 불과하였다. 이후 1932년에 124필지 6,931평(0.2%), 1952년에 300필지 18,547평(0.5%)으로 늘었다. 도로의 면적 비중은 전체 토지의 1%도 되지 않지만 그것의 증가 속도는 여러 지목에서 가장 빠르다. 여기서 도로라 함은 대부분 언양면의 중심부로서 面事務所가 위치한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일대의 市街를 말한다. 이 일대가 구 언양현의 邑底로 성립, 발전하는 과정은 무계획적이었다. 오늘날처럼 읍내를 종횡으로 가르는 여러 갈래의 도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최초의 시가지 정비는 1919년이다. 그 때 16필지의 대지에서 얼마씩이 분할되어 도로로 바뀌었다. 읍성 남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대지가 그 대상이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1930~1932년에 있었다. 그 때 123필지의 田과 塚가 가 도로로 전환하였다. 뒤이어 1940년까지 도로는 277필지로 증가하였다. 도로의 확장에 따른 시가지의 정비는 언양면이 근대적 지방도시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대변하였다.

溝渠는 배수시설이다. 1912년에 2필지 1,202평에 불과했는데, 1927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1928년 서부리에서 8필지가 구거로 전환했으며, 1932년까지 11필지 1,866평으로 늘었다. 生活下水의 배수를 위한 시설이었다. 이 역시 시가지의 정비와 함께 언양면이 근대적 지방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을 대변하였다. 뒤이어 구거가 대폭 증가하는 것은 1944년이다. 다개리와 태기리에서 41필지가 구거로 변환하였다. 이는 수리시설이었다. 구거의 위치가 溜池의 아래여서 간선수로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溜池는 수리시설로서 저수지이다.⁽¹¹⁾ 언양면의 유지는 1912년에 26필지 35,203평(1.0%)인데, 1932년까지 30필지 36,391평(1.0%)으로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전술한 대로 언양면은 고현산에서 흘러내리는 천수와 남천을 수원으로 하는 산간부 도작지대로서 오래 전부터 곳곳에 천수나 지하용수를 담은 유지가 발달하였다. 개발은 20세기 초에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그러한 생태환경에서 1930년대 말까지 언양면의 수리시설에는 불만한 변화가 없었다. 유지가 대폭 확장되는 것은 일정기 最末인 1944년과 美軍政期인 1947년의 일이다. 그 결과 1952년 언양면의 유지는 113필지에 63,021평로 늘어나 있었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다.

河川은 하천의 川底나 川邊으로서 하천구역을 말한다. 1912년에 하천은 반천리

(11) 토지대장에서 溜池는 1917년까지 池沼와 溜池의 두 지목으로 구분되는데, 이후 유지로 통일되었다.

187번지의 1필지 265평에 불과하였다. 앞서 소개한대로 산은 험벗었고, 하천은 토사로 막혔으며, 잦은 수해는 경지를 침해하였다. 남천에 연한 여러 리에서 특히 그러하였다. 1907년 구 언양현 上北面의 籌板에 의하면 도합 257結의 경지 가운데 9結 정도가(3.6%) 川反浦落地였다. 수해를 입어 하천으로 떨어진 토지를 말한다. 1결의 면적이 대략 6,000평 정도이니 무려 5만 평이 넘는다. 토지조사사업에서는 구래의 포락지를 토지대장 밖의 公有 하천으로 돌렸다. 그래도 경지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원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완강하게 제기된 1필지의 토지가 하천을 지목으로 하여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하천은 1920년에 6필지로 늘어나는데, 모두 기존의 경지를 분할하여 국유지로 매입한 뒤 하천으로 지목 변경한 것이다. 곧 河川改修事業의 일환이었다. 그렇게 조금씩 늘어 1952년에는 47필지 11,339평(0.3%)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30필지가 남천에 연한 서부리, 남부리, 어음리, 반송리, 반천리, 반연리에 속하였다.

하천개수와 더불어 남천의 堤防이 축설되는 것은 1923~1927년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언양면은 거의 매년 홍수에 따른 남천 범람의 피해를 입어 왔다. 어느 해 큰 홍수에는 남천이 서부리를 침입하여 오랫동안 물길을 남겼는데, 그로 인해 소똥섬이란 불린 섬이 생겨나기도 했다[울산대곡박물관(2015, p.66)]. 1923년 9월 언양면은 蔚山郡의 보조금과 面民의 出捐金을 합한 1만 2,000여 원의 예산과 면민 1,600호로부터의 연인원 1만 3,000명의 出役으로 남천의 護岸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때 언양읍성의 남쪽 벽이 石材의 공급을 위해 헐렸다. 1927년 3월 총연장 506間의 제방이 준공되었다.⁽¹²⁾ <표 3>에서 1942년부터 나오는 제방 1,047평이 그것이다. 제방의 부지는 천변인 서부리의 9필지이다. 이들의 지목이 제방으로 일괄 변환하는 것은 1935년이다. 1927년의 준공과 8년의 시차가 있는데, 그 내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墳墓地는 1912년 7만 7,000여 평(2.1%)으로서 전, 답, 대, 임야 다음의 큰 비중인데, 1952년까지 7만 5,000여 평(2.1%)으로 조금 줄었다. 분묘지의 일부가 전으로 분할되었기 때문이다. 雜種地는 1912년 4필지에 235평에 불과하였다. 2필지는 도로와 수로에 붙은 小片의 草生地이고, 나머지 2필지는 이후 답지로 개간되었다. 전술한대로 유서 깊은 산간부 도작지대로서 언양면에서 개간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이후 잡

(12) 『朝鮮日報』 1923년 9월 21일, 『東亞日報』 1927년 6월 19일. 彦陽南川護岸工事紀念碑에 의하면, 제방의 연장은 456간이고 총공사비는 2만 7,776원이었다[彦陽邑誌發刊推進委員會(2001, p.216)]. 동 기념비는 현재 언양읍사무소 경내에 서 있다.

〈표 4〉 彦陽面の 人口(1910~1944)

年度	世帶	男	女	人口	世帶當人口	全國 總人口
1910	1,545	3,674	3,301	6,975	4.51	16,467,610
1925	1,808	4,539	4,522	9,061	5.01	19,522,945
1930	1,868	4,660	4,709	9,369	5.02	21,058,305
1935	1,864	4,707	4,880	9,587	5.14	22,899,038
1944	1,864	4,405	4,843	9,248	4.96	25,900,142

출처: 内部警務局(1910), 朝鮮總督府(1925, 1930, 1935), 朝鮮總督府(1944), 김낙년 편(2012, p.636).

종지가 1952년까지 3,578평으로 증가하는 것은 彦陽城址를 토지대장에 등록하면서 잡종지로 지정하고, 또 무언가 공용의 목적으로 11필지를 잡종지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2.4. 인구의 동태

1910~1940년대의 언양면 人口에 관해 알려진 정보는 〈표 4〉와 같다. 1910년은 동년 5월 大韓帝國 内部 警務局이 행한 民籍 조사의 결과이다. 1925, 1930, 1935년은 1925년부터 5년 간격으로 실시된 총독부 國勢調査의 결과이다. 1944년은 총독부가 戰時動員을 위해 임시로 행한 인구조사의 결과이다. 국세조사의 결과인 1925년 이후의 인구가 정확한 것임에 비해 1910년의 인구는 정확하지 않다.

1910년 당시는 아직 구 상북면과 중북면의 시대이다. 〈표4〉의 1910년 인구는 두면의 조사 결과를 합한 것이다. 전술한대로 1914년 언양면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두동면, 두서면과 界面에 있어서 약간의 조정이 있었다. 그로 인해 1910년과 1925년의 면 영역에는 약간의 어긋남이 있다. 이와 별도로 1910년의 조사는 인구에 관한 첫 조사인 만큼 여러 모로 不備하였다. 조사의 방식이나 행정력에서 1925년 이후의 국세조사에 미치지 못하였다.

1910년의 인구는 남자 3,674명, 여자 3,301명, 합 6,975명이다. 1925년의 인구는 남자 4,539명, 여자 4,522명, 합 9,061명이다. 15년간의 인구증가는 1.3배이다. 이 수치가 얼마나 과장된 것인지는 동기간 전국 인구의 증가비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1910년 전국의 인구가 얼마였는지에 관해서는 몇 가지 추계가 있다. 〈표 4〉에 제시된 16,467,610은 2006년 金洛年 팀의 추계로서 가장 믿을만하다. 그에 의하면 1910~1925년 조선의 인구는 1.19배 증가하였다. 이 증가비에 준하여 언양면의 1925

년 인구로부터 1910년 인구를 추계하면 7,642명이 된다.

1910년의 조사가 불완전했음은 世帶當 人口에서도 알 수 있다. 1910년 세대당 인구는 4.51명으로서 1925년의 5.01명보다 0.5명이나 적다. 여자가 남자보다 373명이나 적듯이 특히 여자의 조사가 불완전하였다. 15년간 세대의 규모에서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1925년의 세대당 인구를 1910년의 세대 수 1,545에 곱하면 7,742명이 산출된다. 이 같은 추계로부터 1910년 언양면의 실제 인구는 7,700명 전후였다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 1925~1944년 언양면 인구는 9,061명에서 9,248명으로 1.02배 증가하였다. 동기간 전국의 인구는 1,952만여 명에서 2,590만여 명으로 1.33배 증가하였다. 전국적 추세에 비해 언양면의 인구가 크게 정체한 것은 대량의 인구가 유출하였기 때문이다. 언양면의 인구가 전국과 동일하게 1.33배 증가했다면 1944년의 인구는 12,021명이 된다. 그러니까 1925~1944년 대략 2,700여 명의 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출하였던 셈이다. 이 점은 일정기 언양면의 사회와 경제를 살핌에 있어서 유념해야 할, 다른 지역과 뚜렷이 구분되는 언양면의 특별함이다.

언양면의 인구이동과 관련해서는 除籍簿가 직접적인 기초 자료이다. 1909년 대한제국은 일본식의 호적인 민적의 작성을 규정한 民籍法을 공포하였다. 그에 따라 1910년까지 전국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민적이 작성되었다. 민적은 1922년에 공포된 朝鮮戶籍令에 따라 호적으로 개칭되었다. 이하 민적과 호적을 통칭하여 戶籍이라 부른다. 호적은 戶主의 사망이나 이사에 따라 戶가 폐지되면 戶籍簿에서 除籍되어 별도의 장부로 編綴되는데, 이를 제적부라 하였다. 1910년대 이래의 언양면 제적부는 현재 언양읍사무소에 보관되어 있다. 그 제적부를 자세히 살피면, 초창기 호적 행정의 불실로 인해 1915~1922년의 제적부가 망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머리말에서 밝힌 대로 나와 공동연구자들은 이 제적부를 전산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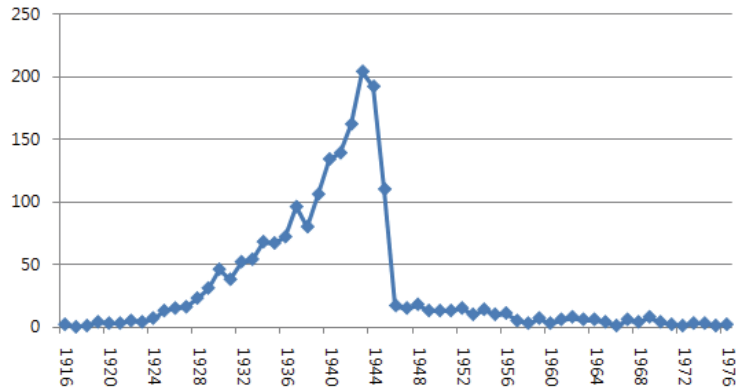
이 장부가 제공하는 인구이동에 관한 정보는 풍부하다. 인구이동은 리, 면, 군, 도 간의 國內移動과 일본, 만주로 향한 國外移動으로 나뉜다. 그 모두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여기서의 과제가 아니다. 국내이동과 달리 국외로 이동한 호는 제적의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국외로 이동한 상태에서 가족 성원에 사망, 출생, 결혼 등과 인구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은 국외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언양면에 통보되어 호적에 반영되었다. 여기서는 일본으로 渡航한 뒤 인구변동을 맞아 호적에 반영된 경우를 간략히 소개한다.

〈표 5〉 彦陽面 日本 移住者の 人口變動 事由別, 居住地別 分布(1911~1977)

移住地	出生	死亡	婚姻	轉入, 轉出, 寄留	計	移住地	出生	死亡	婚姻	轉入, 轉出, 寄留	計
岡山県	46	4			50	三重県	52	13			65
京都府	87	23			110	石川県	9	3			12
高知県	1	1			2	神奈川県	56	11	1		68
廣島県	48	15		2	65	新潟県	22	4	1	1	28
群馬県	37	12		1	50	岩手県	5	1			6
宮城県	12	1	1		14	愛媛県	19	1	3		23
岐阜県	36	7			43	愛知県	204	45	1	4	254
埼玉県	7	1	1		9	熊本県	4	1			5
吉敷郡	1				1	茨城県	5				5
奈良県	22	2			24	滋賀県	6	3			9
大分県	81	19		1	101	長崎県	15	2	1		18
大阪府	192	32	3		227	長野県	25	7	1		33
徳島県	21	6			27	静岡県	59	3	5		67
島根県	9	3			12	静岡県	4	12			16
東京都	80	19	1	1	101	鳥取県	9	2			11
東北県	1	1			2	佐賀県	9	1			10
鹿児島県	1	51			52	千葉県	17	3	3		23
兵庫県	197	5	2	1	205	青森県	10	1			11
福岡県	179	46			225	秋田県	24	4	1		29
福島県	17	5	4		26	香川県	9	1			10
福井県	35	12			47	和歌山県	25	1		1	27
富山県	22	7	3		32	樺太	17	3			20
北海道	40	13	2	1	56	栃木県	12	4	2		18
山口県	175	35			210	未詳		5			5
山梨県	15	4			19	計	1,979	455	36	13	2,483

자료: 『彦陽面除籍簿』.

〈표 5〉는 1911년~1977년 언양면을 본적으로 하는 일본 이주자의 인구변동 사유별, 거주지별 분포이다. 1977년까지 인구변동이 이어진 것은 1945년의 해방 후에도 일본에 체류한 이른바 在日僑胞들이 그 때까지 인구변동을 신고해 왔기 때문이다. 동 67년간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은 1,979명, 사망한 사람은 455명, 혼인한 사람은 36명, 일본 내에서 전입, 전출, 寄留한 사람은 13명으로서 도합 2,483명이다. 이 가운데 출생했다가 사망하는 등, 중복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인구는 2,276명이다. 언양면 호



자료: 『彦陽面除籍簿』.

〈그림 1〉彦陽面民의 渡日 年度

적에서 관련 호는 892호이다. 戶當 인구변동은 2.55명이다. 출생의 경우 부모 2명이 일본에 거주했음이 확실하다. 이를 고려하면 대개 4~5명 전후의 소규모 세대가 일본으로 이주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들이 호적 상 892호의 구성원 전부는 아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소규모 세대는 호 구성원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다. 대개 戶主를 비롯한 호의 구성원 전부가 도항하는 경우는 드물고, 호주의 장남 또는 차남 가족과 같은, 호를 구성하는 소규모 세대가 도항하였다. 따라서彦陽面民으로서 일본으로의 이주자는 정확히 말해 892호가 아니라 그 일부인 892세대였다. 〈표 5〉에서 보듯이 이들의 이주지는 일본 내의 49개 府縣으로서 거의 전국적 범위에 걸쳤다. 이주가 가장 많았던 곳은 아이치(愛知)현, 오사카(大阪)부, 후쿠오카(福岡)현, 효고(兵庫)현, 야마구치(山口)현의 순서이다.

892세대의 도항 시기가 언제인지는 〈그림 1〉과 같은 일본 내 출생자의 연도별 분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최초의 출생자는 1916년의 2명인데, 1925년 이후 가속적으로 증가하여 1943년에 최고 204명에 다다랐다. 이후 1944년 192명, 1945년 110명으로 감소한 것은 美國의 일본 空襲이 심해짐에 따라 이주자가 줄고 귀환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해방을 맞아 대거 철수하여 1946년에는 17명에 불과하였다. 언양면민의 일본 이주가 집중된 것은 1935년 이후이다. 1945년까지의 출생자 가운데 1935~1945년의 출생자가 78%로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언양면의 전 인구에서 일본 이주자의 비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호

적에 인구변동이 신고된 세대 이외에 다른 이주자가 있었다. 單身으로 이주했다가 귀환한 경우가 있다. 세대가 이주했으나 인구변동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호적의 내용에 아무런 변동이 없으며, 이에 호적만으로는 그들의 이주 여부를 알 수 없다. 또한 이주가 명확한 892세대라 해도 그 귀환 시기를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1945년 8월까지 일본에 머문 세대가 많지만, 그 전에 귀환한 세대도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특정 시기 언양의 전 인구에서 이주자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추산하기는 어렵다. 여기서 이주가 명확한 892세대 모두가 1944년 말까지 일본에 체류했다고 가정한다. 그들이 이주하지 않았다면, 1944년 말 언양면의 세대 총수는 <표 4>의 1,864세대와 892세대를 합한 2,756세대가 된다. 이에 일본으로 이주한 892세대는 그것의 32.4%를 점한다. 이외에 호적만으로 알 수 없는 이주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 점까지 고려하면 일정기 언양면민의 거의 4~5할이 일본으로 장기간 또는 단기간 이주했다고 이야기해도 좋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경남, 경북, 전남에서, 특히 연안 지방에서, 일정기에 대량의 인구가 일본으로 도향하였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주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도는 경북인데, 1940년 현재 도내 총인구의 17%가 일본으로 넘어가 있었다. 경남에서는 11%였다[外村大(2004, p.58)]. 언양면과 가까운 울산군 府內面 達里를 대상으로 한 1935년의 조사에 의하면, 주민 637명 가운데 121명이 일본에 거주하는 중이었다. 1930~1935년에 결혼한 달리의 처녀 22명 가운데 6명이 일본행 결혼이었다[강정택(2008, pp.247~254)]. 일본에 이주한 울산 청년이 고향의 처녀를 배우자로 구하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주의 물결은 이후 더욱 급해졌다. 밀항자도 적지 않았다. 1937년 7월 언양의 김봉해는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강제 송환되었다.⁽¹³⁾ 언양면은 일본으로의 관문인 釜山港에서 멀지 않았다. 그러한 지리환경에서 언양면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은 일본 이주자를 배출하였다. 언양면은 일정기 다른 지역이 직면했던 人口壓力으로부터 자유로웠다. 그에 따른 正의 효과는 뒤이어 살피는 언양 소농사회의 경제적 동태에서 뚜렷하게 관찰된다.

2.5. 찾아온 일본인들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반면, 훨씬 적은 수이지만 언양으로 오는 일본인

(13) 『東亞日報』 1937년 7월 15일.

이 있었다. 벌써 1904년에 최초의 일본인이 언양에 들어왔다. 동년 4월 이곳을 지나간 일본인 농업기사는 언양에 ‘日本藥局’이란 깃발을 내건 ‘邦人’이 있다고 하였다[三成文一郎·有働良夫(1905, p.78)]. 1911년 이후 언양면에 거주한 일본인에 관해서는 현재 언양읍사무소에 소장 중인 『在彦陽日本人除戶簿』라는 자료를 참조할 수 있다. 총독부는 1911년 본적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숙박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宿泊 및 居住規則’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2개월 이상 동일 郡內에 거주하는 사람은 자신과 동반하는 가족에 관해 성명, 본적, 직업, 생년월일, 거주지주소, 轉入日, 前住所를 거주지의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했다. 그 결과 居住者登錄簿가 만들어졌다. 조선인과 일본인의 등록부는 따로 만들어졌다. 戶主는 가족의 출생, 사망 등의 변화가 생기면 이를 신고해야 했으며, 그에 따라 등록부가 수정되었다. 거주자의 호 전체가 전출 등의 사유로 등록부에서 말소될 경우, 그 호는 除戶簿에 순서대로 編綴되었다[細谷定(1915, pp.317~321)]. 『재언양일본인제호부』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동 제호부는 언양면에 거주하다 떠난 모든 일본인을 다 신고 있지는 않다. 1925년 언양면에 거주한 일본인은 25호에 73명이었다.⁽¹⁴⁾ 그런데 제호부를 통해 확인되는 1925년의 일본인은 9호에 불과하다. 모든 일본인이 ‘거주규칙’에 따른 신고의 의무에 충실하지는 않았다. 1913년 이래 彦陽公立普通學校와⁽¹⁵⁾ 彦陽尋常小學校에 일본인 교장과 교사가 부임하였다. 『朝鮮總督府及附屬官署職員錄』에 의하면 그 수는 1941년까지 총 29명에 달하였다. 평균 재직기간은 3년이었다. 그런데 제호부에서는 1918년까지 재직 한 2명만 보일 뿐이고, 이후 재직 한 27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반면에 巡査들의 轉出入은 비교적 충실하게 기록되었다. 1918년 이후 일부 신분의 일본인에게 거주 신고의 의무는 면제된 듯이 보이는데, 자세한 사정은 추후 연구의 과제이다. 대조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거주규칙’의 시행과 등록부 및 제호부의 관리는 비교적 충실했다고 보인다. 제호부의 기록은 무언가의 사유로 1942년에 중단되었다.

제호부에 의하면 1911년 말 언양면의 일본인은 17호이다. 1913년 말에는 20호로서 피크를 이루었다. 이후 조금씩 줄어 1925년 말에는 9호이다. 이 호수는 1934년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러다가 1936년에는 5호로 더욱 줄었다.⁽¹⁶⁾ 이처럼 일정기에 걸쳐

(14) 『朝鮮總督府慶尙南道統計年報 第五編』 1925年度版, p.8.

(15) 언양공립보통학교는 1938년 彦山尋常小學校로 개명하였다.

(16) 『在彦陽日本人除戶簿』에 등록된 일본인 호주는 총 110명이다. 그 가운데 15명의 경우, 除戶日이, 즉 언양면을 떠난 시기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除戶簿에의 編綴 순서가 除戶의 순서이므로 전후 인물의 제호일로부터 그 시기를 추론함에 큰 어려움은 없다.

언양면의 인구에서 일본인의 비중은 보잘 것 없었다. 제호부에 등록되지 않은 일본인이 있긴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았다. 산간부 농업지대인 언양면에 다수의 일본인이 들어올 유인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몇 년간 꽤나 많은 일본인들이 언양면을 찾았다. 1911~1914년 모두 58호의 일본인이 전입하였다. 마지막 전입자는 1936년이다. 1911~1936년 총 110호가 언양에 들어왔는데, 그 절반 이상이 1911~1914년에 들어왔다. 1915년 이후 언양에 들어오는 일본인의 수는 푹 떨어졌다.

1911~1914년에 전입한 58호는 언양면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 중의 20호가 6개월 이내에, 17호가 1년 이내에, 11호가 3년 이내에 다른 곳으로 진출하였다.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10호이다. 58호의 직업을 보면 우선 敎員, 巡査, 官吏와 雇員, 郵便所 職員 등이 18호이다. 이들은 교원, 관리, 순사의 4호를 제외하고 대개 1년 이내의 단기 체류에 그쳤다. 다음은 雜貨, 菓子, 木炭, 藥 등을 판매한 상인이 16호이다. 이들 역시 4호를 제외하고 대개 2년 내에 언양을 떠났다. 그 다음은 飲食店, 代書業, 木手를 비롯한 서비스업이 11명이다. 이 중에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은 2호이다. 나머지는 鑛業 및 土木業 4호, 農業 4호, 無職 4호인데, 대개 마찬가지로 단기 체류자들이었다.

일정 초기에 언양에 들어온 다수의 일본인은 관공리를 제외한다면, 일본의 새로운 영토인 조선에서 보다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분주하게 옮겨 다닌 상인과 서비스업자들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일본사회에서 하층민이었다. 단기간의 탐색 끝에 소수의 사람만 남고, 대부분은 실망한 나머지 다른 곳으로 떠났다. 음식점에는 藝妓者 1명이 고용되기도 했다. 언양의 사회와 경제는 그녀가 머물기에 적당치 않았다. 그녀는 6개월 뒤 울산면으로 떠났다. 일본으로 건너간 최초의 조선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조선을 찾아온 일본인들 역시 정착 과정에서 큰 기대와 빈약한 정보로 이리저리 유동하였다.

그런 가운데 소수의 일본인이 언양면에 장기 정착하였다. 10년 이상 언양면에 거주한 일본인은 모두 8명이다. <표 6>은 제호부와 토지대장으로 확인되는 그들의 관한 정보이다. 연번 7 桑原眞行의 거주 기간은 9년 10개월이지만, 후술하듯이 중요한 인물이어서 표에 실었다.

이 가운데 언양면에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가리야(刈屋益髓)이다. 1876년 생으로서 야마구치(山口)현 출신이다. 1911년 7월, 35세의 가리야는 5살 아래의 부인을 대동하고 언양면 동부리에 들어와 雜貨商과 宿泊業을 차렸다. 1916년에는 야마구치 출신의, 그와 同姓의 인물이 그에 집에 1년간 寄寓하였다. 직업은 농업인데, 정착에

〈표 6〉 日政期 彦陽面에 定着한 日本人

	성명 (생년)	직업	주소	전입년월	전출년월	거주기간	동거 가족	토지(연도)
1	刈屋益槌 (1876)	잡화 겸 숙박	동부리	1911.7	1935.1	23년 4개월	2	137평(1912), 968평(1927)
2	原岡伴次 郎(1889)	제과업	남부리	1911.12	1935.9	23년 9개월	4	329평(1912), 33,153평(1934)
3	吉岡順作 (1879)	잡화상	동부리	1914.6	1928.1	13년 7개월	4	84평(1915), 101평(1929)
4	伊藤辰造 (1882)	상업	동부리	1915.12	1942.1	26년 1개월	2	789평(1933), 1,300평(1944)
5	増崎政市 (1881)	농업	동부리	1918.6	1936.12	18년 6개월	6	517평(1926), 6,065평(1936), 4,905(1944)
6	森谷久吉 (1871)	농업	동부리	1918.6	1936.4	17년 10개월	2	209평(1911), 209평(1940)
7	桑原真幸 (1875)	농업	서부리	1921.1	1931.3	9년 10개월	5	4,865평(1917), 15,447평(1922), 276평(1944)
8	山崎虎吉 (1873)	상업	남부리	1926.2	1936.2	10년	2	213평(1911), 4,950평(1926), 696평(1935)
9	中道祐次 (1888)	순사	동부리	1930.6	1942.9	12년 3개월	9	

자료: 『在彦陽日本人除戶簿』, 『彦陽面土地臺帳』.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1923년에는 가리야의 어머니가 합류하였다. 그렇게 가리야의 정착 의지는 확고하였다. 그렇지만 그의 언양 생활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의 잡화상과 숙박업 경영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1912년 그의 토지재산은 대지 137평에 불과했는데, 1927년까지 田 1필지 787평을 마련했을 뿐이다. 1927년 10월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다. 彦陽場이 열린 어느 날, 上南面の 金敬道(34세)가 가리야의 상점 앞에 숯을 팔았다. 김경도는 가리야의 처에게 성냥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녀는 돈을 주지 않으면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에 가리야와 김경도 사이에 말다툼과 격투가 벌어졌다. 가리야가 김경도의 국부를 찔렀으며, 그로 인해 김경도는 며칠 뒤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커다란 사회적, 민족적 이슈로 떠올랐다. 가리야는 체포되었으며, 1928월 1월 첫 공판

이 열렸다.⁽¹⁷⁾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으나, 그저 放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호부에 의하면, 가리야가 그의 妻와 母를 데리고 언양을 떠나는 것은 1935년 10월의 일이다. 그 사이 일정 기간 刑務所에서 복역했다고 보인다. 어디로 떠났는지는 제호부에 나타나 있지 않다. 토지대장에서 그의 주소는 1929년에 울산면으로, 1934년에는 야마구치현으로 바뀌었다. 이로 미루건대 가리야의 처와 모는 1929년에 언양면을 떠나 울산면으로 이주하였으며, 가리야의 出所를 기다려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보인다.

가리야보다 5개월 늦게 언양 남부리에 들어온 하라오카(原岡伴次郎)는 제과점을 차렸다. 1889년 생으로 오이타(大分)현 출신이다. 그의 제과점 경영은 성공적이었던 모양이다. 1912년 329평에 불과한 그의 토지재산은 1934년까지 33,153평으로 불어났다. 1934년 그는 언양면에서 개인지주로서는 제2의, 재지주로는 제1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이 그는 언양에서 1남 3녀를 출생하였다. 그의 이름이 紙上에 보도되는 것은 彦陽水利組合의 결성과 관련해서이다. 그의 꾸준한 노력으로 수리조합의 결성이 가시화하는 것은 1930년 11월이다. 경상남도는 언양수리조합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자 이후 2년간 언양면 주민의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대규모 시위를 포함하여 활발하게 벌어졌다. 결국 1932년 언양수리조합의 계획은 취소되었다. 그 대신 浮里淤契가 토지개량사업의 주체로 선정되었다. 이 사건이 영향을 미쳤는지, 하라오카는 1935년 11월 언양을 떠나 부산으로 갔다. 동년 4월에는 그의 처가 사망하였다. 하라오카가 언양을 떠난 데에는 처의 죽음이 더 큰 계기였을지 모르겠다. 부산으로 옮겨간 후에도 하라오카는 언양면에 있는 그의 토지를 그대로 소유하였다. 그가 토지의 대부분을 처분하는 것은 1944년이다. 그리고선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보인다.

하라오카에 뒤이어 1914~1915년에 언양에 들어온 잡화상 요시오카(吉岡順作)과 상인 이토오(伊藤辰造)는 토지재산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보아 경제적으로 그리 성공하지 못했던 듯하다. 그에 비해 농민으로 들어온 마수자키(増崎政市)와 구와하라(桑原眞行)의 언양 이주는 하라오카만큼은 아니지만 성공적이었다. 마수자키의 토지는 1926년의 517평에서 1936년의 6,065평으로 늘었다. 구와하라의 토지는 1917년의 4,865평에서 1932년에 15,447평으로 늘었다. 구와하라는 1873년 생으로 미야자

(17) 『東亞日報』 1927년 10월 25일, 29일.

『中外日報』 1927년 12월 27, 30일, 1928년 1월 21일.

키현 출신이다. 원래 직업은 경찰로서 1913~1917년에 울산경찰서의 警部(署長)를 지냈다.⁽¹⁸⁾ 이후 충남 論山郡 江景警察署로 전보되었다. 구와하라가 가족 5명을 대동하고 언양면에 들어오는 것은 1921년이다. 아마도 경찰 생활을 그만 두고 언양에의 정착을 결심한 모양이다. 1931년 그는 거주를 중남면으로 옮겼다. 거기서 그는 1940년 사망한 듯하다. 1941년 이후 그의 토지재산의 명의를 모두 그의 처 구와하라 타키로 변경되었다. 1945년 12월까지도 언양면에 소재한 구와하라 타키의 토지는 14,273평의 큰 규모였다. 중남면 일대에 분포한 구와하라 家의 토지는 더욱 많았을 것이다. 구와하라는 언양에 장기 정착하다가 인생을 마친 드문 사례를 이루었다. 解放 이후, 일본인으로서의 敗戰 이후, 구와하라 家는 그 모든 재산을 남겨둔 채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다. 구와하라 이외에 전직 경찰로서 나카미치(中道祐次)가 언양에 12년 이상을 정착하였는데, 그는 1942년 부산으로 떠났다. 그는 언양면에서 조금의 토지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생업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 외에 장기 정착자가 두 명 더 있는데, 언급을 약한다.

이들 장기 정착한 일본인과 토착 조선인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기록이 부족하다. 두 집단의 경계에는 갈등과 협력의 혼재하였다. 가리야(刈屋) 사건이나 수리조합 사건에서 보듯이 두 집단은 갈등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두고 그 시대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상투적으로 언급하는 ‘민족적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가리야 사건을 두고 당시에도 그것이 민족 차별의 사건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흔하게 벌어지는 일개 쟁투에 불과한지를 둘러싼 의견의 대립이 있었다. 수리조합 사건은 총독부의 산업정책이 일방적이지만은 않았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총독부는 민간의 요구를 대안으로 선택하는 융통성을 보여 주었다.

내가 언양을 처음 찾은 것은 대학원생 시절인 1982년이다. 나는 上北面 陵山里의 鄭寅泰翁을 방문하였다. 鄭翁이 소장한 彦陽縣戶籍을 열람하기 위해서였다. 용무가 끝난 뒤 정용은 일정기 상북면에서 살았던 일본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일본인 支署主任은 매우 규칙적으로 마을을 巡視하였다. 그가 허리에 찬 칼이 다리와 부딪히는 소리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은 시각을 알 정도였다. 어느 날 마을에서 앞뒷집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앞집에서 보리를 너무 많이 먹고 배가 터져 죽은 소

(18) 『朝鮮總督府及附屬官署職員錄』 1913~1917년판.

를 屠殺했는데, 이를 뒷집이 密屠殺로 고발한 것이다. 그 일본인 순사는 앞뒷집을 불러 놓고 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를 도살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웃의 허물을 관에 고발한 사람은 더욱 큰 잘못이라고 꾸짖은 다음, 술자리를 베풀고 양자를 화해시켰다.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을 감복시켰다. 어느 일본인 校長이 있었는데, 아이가 병으로 죽었다.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갔더니 교장 부부는 전혀 슬픈 표정을 짓지 않고 손님들을 정중하게 맞았다. 왜 일본인은 슬퍼하지 않은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여긴 몇 사람이 밤중에 교장의 官舎를 찾아가 몰래 엿보니, 교장 부부가 서로 붙들고 울고 있었다.⁽¹⁹⁾ 일본인은 절대 남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25년 뒤 나는 언양읍사무소에서 『在彦陽日本人除戶簿』를 열람하였다. 그리고선 정인태 옹이 들려준 일본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떠올렸다. 언양에 체류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는 갈등과 쟁투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신뢰와 조정의 관계도 성립했으며, 그를 통해 일본의 이질적인 생활문화가 슬그머니 조선인의 사회로 스며들기도 하였다.

3. 토지소유와 사회

3.1. 토지소유자의 분포

〈표 7〉은 1912년과 1945년의 토지소유자의 거주지별 분포이다. 토지는 전 12개 지목 가운데 畓, 田, 垸, 林野, 溜池만을 뽑았다. ‘동리인’은 토지가 소재한 그 동리에 거주한 소유자를, ‘타리인’은 언양면 내 다른 리에 거주한 소유자를 말한다. 이 두 부류는 自作農 내지 在地地主의 토지이다. ‘타면인’은 울산군 내 다른 면에 거주한 소유자, ‘타군인’은 경상남도 내 다른 군이나 釜山府에 거주한 소유자, ‘타도인’은 경남 이외의 다른 도나 京城府에 거주하는 소유자를 말한다. ‘일본’은 주소가 일본으로 기재된 소유자이다. ‘타면인’, ‘타군인’, ‘타도인’, ‘일본’은 토지의 경작이 불가능한, 그래서 지대를 수취하는 不在地主의 토지이다.

1912년 각각의 소유지 비중을 보면, ‘동리인’이 57.2%, ‘타리인’이 15.6%로서 自作地 내지 在地地主가 72.8%의 큰 비중을 점하였다. 대조적으로 부재지주로서 ‘타면인’은 16.0%, ‘타군인’은 8.3%, ‘타도인’은 1.8%, ‘일본’은 1.1%로서 도합 27.2%이다. 전체 畓 가운데 자작지 내지 재지주지의 비중은 62.1%, 부재지주지의 비중은

(19) 이 가운데 일본인 순사 이야기는 李榮薰(2000, pp.69~70)에서 소개한 적이 있다.

〈표 7〉 彦陽面 土地所有者의 居住地別 分布(1912, 1945)

	단위: 평											
	1912년					1945년						
	畓	田	垓	林野	溜池	合計	畓	田	垓	林野	溜池	合計
同里人	892,617 (44.8)	812,467 (69.5)	185,142 (90.0)	113,651 (71.9)	33,307 (94.6)	2,037,184 (57.2)	941,163 (42.2)	608,636 (67.1)	169,302 (82.7)	121,701 (69.9)	42,890 (84.3)	1,883,692 (52.8)
他里人	345,136 (17.3)	181,305 (15.5)	11,010 (5.4)	17,329 (11.0)	518 (1.5)	555,298 (15.6)	524,058 (23.5)	134,283 (14.8)	15,092 (7.4)	18,270 (10.5)	4,039 (7.9)	695,742 (19.5)
他面人	419,139 (21.0)	129,642 (11.1)	6,482 (3.2)	13,944 (8.8)	159 (0.5)	569,366 (16.0)	384,910 (17.3)	106,991 (11.8)	13,129 (6.4)	20,647 (11.9)	1,802 (3.5)	527,479 (14.8)
他郡人	264,584 (13.3)	28,466 (2.4)	1,755 (0.9)		335 (1.0)	295,140 (8.3)	230,537 (10.3)	28,063 (3.1)	4,779 (2.3)		1,133 (2.2)	264,512 (7.4)
他道人	35,626 (1.8)	14,459 (1.2)	1,227 (0.6)	13,171 (8.3)	884 (2.5)	65,367 (1.8)	98,685 (4.4)	23,626 (2.6)	2,234 (1.1)	13,567 (7.8)	994 (2.0)	139,106 (3.9)
日本	35,548 (1.8)	1,846 (0.2)				37,394 (1.1)	49,866 (2.2)	6,128 (0.7)	64 (0.0)			56,058 (1.6)
合計	1,992,650 (100.0)	1,168,185 (100.0)	205,616 (100.0)	158,095 (100.0)	35,203 (100.0)	3,559,749 (100.0)	2,229,219 (100.0)	907,727 (100.0)	204,600 (100.0)	174,185 (100.0)	50,858 (100.0)	3,566,589 (100.0)

자료: 『彦陽面土地臺帳』.

37.9%이다. 부재지주의 토지는 상대적으로 田보다 답에 집중되었다. 어쨌든 언양면의 농업에서는 자작지 내지 재지지주지가 지배적이었다. 전술한대로 언양면은 산간부 농업지대로서 대규모 地主制가 발달할 만큼 평야가 넓거나 개발의 여지가 큰 곳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1912년에 37,394평을 소유한 ‘일본’의 부재지주가 있는데, 東京에 본사를 둔 東洋拓植株式會社이다. 구 언양현의 상북면과 중북면 일대에는 조선왕조의 官屯, 驛屯, 別砲屯, 禁衛營屯, 雇馬屯과 같은 둔토가 많이 있었다. 이들 토지는 大韓帝國期에 이르러 皇室有인 驛屯土로 통합, 관리되었다. 1912년의 토지대장에 의하면 그 면적은 도합 33만 3,400평이다. 황실은 1908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설립될 때 역둔토의 일부를 現物出資하였다. 언양면에 東拓의 社有地 37,394평이 생긴 것은 그 때의 일이다.⁽²⁰⁾

언양면과 같은 山間部에 일본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진입할 유인은 없었다. 앞서 소개한대로 언양면에 들어온 일본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나마 언양에 들어온 일본인들은 가난한 상공인이 그 중심을 이루었다. 1912년 토지대장에서 토지를 소유한 일본인은 6명인데, 모두 대지로서 다 합해도 821평에 불과하였다. 언양면에서 최대 지주는 梁山郡의 通道寺였다. 1912년 통도사는 52,002평을 소유하였다. 이상과 같은 토지소유자의 거주지별 분포는 일정기에 걸쳐 크게 변하지 않았다. <표 7>에서 보듯이 1945년에도 ‘동리인’과 ‘타리인’의 소유지 비중은 72.3%로서 1912년과 거의 같다. 부재지주지의 비중에도 차이가 없는 가운데 ‘타면인’과 ‘타군인’의 소유지가 줄고, ‘타도인’과 ‘일본’의 소유지가 약간 증가하였을 뿐이다.

3.2. 토지소유자의 형태

<표 7>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바는 林野나 溜池와 같은, 一見 公共性이 강한 토지가 ‘타리인’과 ‘타면인’, 심지어 ‘타군인’과 ‘타도인’의 소유지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1910년대 언양면 사회의 조직적 특질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시사를 던진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토지소유자의 존재형태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각각의 소유

(20) 나머지 29만여 평의 역둔토는 이후 황실유에서 국유로 바뀌었다. 국유지는 연고소작인에게 저수준의 定額地代付로 대여되었다가 1923년 이후 그들에게 불하되었다. 이에 <표 7>에서는 29만여 평의 국유지를 ‘타도인’의 부재지주로 간주하지 않고 ‘동리인’으로 분류하였다. 사실상 연고소작인의 자작지와 같기 때문이다.

〈표 8〉 彦陽面 土地所有者의 存在形態別 分布

단위: 坪

	1912						1945					
	畓	田	垈	林野	溜池	合計	畓	田	垈	林野	溜池	合計
個人	1,671,938 (83.9)	1,108,968 (94.9)	194,223 (94.5)	137,147 (86.7)	4,181 (11.9)	3,116,457 (87.5)	2,033,909 (91.2)	862,262 (95.0)	191,299 (93.5)	135,658 (77.9)	19,421 (38.2)	3,242,549 (90.9)
共同	3,332 (0.2)	5,667 (0.5)	891 (0.4)	1,002 (0.6)	27,544 (78.2)	38,436 (1.1)	85,128 (3.8)	38,317 (4.2)	5,724 (2.8)	14,854 (8.5)	415 (0.8)	144,438 (4.0)
里	3,748 (0.2)	1,338 (0.1)	99 (0.0)	5,516 (3.5)	25 (0.1)	10,726 (0.3)	533 (0.0)	103 (0.0)		269 (0.2)	25 (0.0)	930 (0.0)
國公有	220,526 (11.1)	49,176 (4.2)	8,910 (4.3)	14,430 (9.1)	3,453 (9.8)	296,495 (8.3)	6,583 (0.3)	2,426 (0.3)	1,987 (1.0)	10,128 (5.8)	30,997 (60.9)	52,121 (1.5)
公共機關	4,002 (0.2)	1,190 (0.1)	525 (0.3)			5,717 (0.2)	4,571 (0.2)	1,823 (0.2)	3,603 (1.8)	13,276 (7.6)		23,273 (0.7)
宗教機關	52,855 (2.7)		968 (0.5)			53,823 (1.5)	60,750 (2.7)	1,221 (0.1)	995 (0.5)			62,966 (1.8)
會社	36,249 (1.8)	1,846 (0.2)				38,095 (1.1)	37,745 (1.7)	1,575 (0.2)	992 (0.5)			40,312 (1.1)
合計	1,992,650 (100.0)	1,168,185 (100.0)	205,616 (100.0)	158,095 (100.0)	35,203 (100.0)	3,559,749 (100.0)	2,229,219 (100.0)	907,727 (100.0)	204,600 (100.0)	174,185 (100.0)	50,858 (100.0)	3,566,589 (100.0)

자료: 「彦陽面土地臺帳」.

지 비중을 구했는데, <표 8>이 그것이다. 소유자의 존재형태는 ‘個人’, ‘共同’, ‘里’, ‘國公有’, ‘公共機關’, ‘宗教機關’, ‘會社’로 구분되었다. ‘개인’은 토지소유자가 自然人 1명인 토지이다. ‘공동’은 자연인 2명 이상의 共有를 말한다. ‘리’는 리가 소유자인 토지이다. ‘국공유’는 面, 郡, 道, 國의 소유지이다. ‘공공기관’은 鄕校와 學校의, ‘종교기관’은 사원, 야소교회, 천주교회의, ‘회사’는 동척을 비롯한 각종 회사, 조합, 협회의 소유지를 말한다.

1912년의 지배적 소유자는 ‘개인’이었다. 전 토지에서 87.5%의 압도적 비중이다. 그에 비해 2명 이상의 자연인에 의한 ‘공동’은 1.1%, ‘리’는 0.3%에 불과하다. ‘개인’의 압도적 비중은 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여기서 임야는 山地가 아니라 다른 지목에 개재한 樹木을 말한다. 오늘날의 상식에서 그런 임야는 防風, 防水, 護岸, 景觀을 위한 공공재인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 임야 15만 8,000여 평 가운데 13만 7,000여 평, 86.7%가 ‘개인’이다. 반면 ‘리’, 곧 리의 소유는 3.5%에 불과하다.

수리시설인 溜池의 공공성은 임야보다 더 크다. 1912년 유지는 도합 26필지에 35,203평이다. 그 가운데 면적 1,000평 미만의 소규모 유지는 17필지이다. 그 가운데 16필지는 ‘개인’으로 자연인 16명의 소유이다. 나머지 1필지는 ‘리’이다. 소규모 유지를 소유한 16명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우선 경북 慶州郡과 慶山郡, 울산군 下廂面과 下北面에 거주하는 부재지주가 4명이다. 그 다음 ‘타리인’이 4명이다. ‘동리인’은 8명이다. 이처럼 타지인이 소규모 유지의 절반을 소유하였음에서 타지인의 유지 개발과 용익에 대한 현지 주민의 간섭이나 제약은 없었다고 보인다. 소규모 유지는 전답과도 같이 자유롭게 개발, 매매, 증여, 상속되는 개인적 재산이었다.

반면 대규모 유지의 사정은 다르다. 1,000평 이상의 유지는 모두 9필지, 30,997평이다. 가장 큰 유지는 면적이 7,203평이나 했는데, <표 2>에서 소개한 반연리의 가막못이다. 1912년의 토지조사사업에서 대규모 유지 9필지 가운데 2필지는 국유로, 7필지는 4~9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사정되었다. 예컨대 가막못의 소유자는 ‘김상복 외 6인’이다. 이처럼 규모가 큰 유지는 개인이 아니라 부근 주민의 공동 개발, 관리, 용익 하에 있었다. 그들은 토지조사사업에 임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을 신고했으며, 臨時土地調查局의 査定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 공동명의로의 인물들이 과연 주민이나 리를 대표하는 자격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대규모 유지 가운데 3필지는 直洞里에 있는데, 각기 査定의 결과가 다르다. 1개는 국유로 사정되었다. 소유권 신고에

공동으로 대응할 水利組織이 없었던 것이다. 2개는 ‘공동’으로 사정되었는데, 공동명 의의 대표가 다르다. 다시 말해 수리조직은 개별 유지를 단위로 결성되었으며, 복수의 유지를 포괄하는 리 단위의 수리조직은 없었다고 보인다.

대규모 유지의 수리조직과 관련하여 가막뭇의 소유권을 취득한 ‘김상복 외 6인’의 대표자 김상복에 대해 살핀다. 제적부에서 그의 주소는 반연리 96번지로서 곧 현지 주민이다. 1839년에 출생하여 1919년에 사망하였다. 본관은 金寧으로서 후술하겠지만 양반 신분이 아니다. 1912년 사정 당시에는 73세의 노인으로서 57세 된 처와 살았다. 그의 아들 김성문은 1864년 생으로 1898년 그의 처와 함께 반연리 104번지로 分家하였다. 김상복의 처는 김성문의 어머니가 아니다. 김상복과 김성문의 家計는 엄격히 구분되지 않았다. 1918년 김성문은 처와 함께 아버지 김상복의 호에 전입하였다. 아들이 성년이 되어 아버지로부터 분가하는 것은 조선시대의 관행이었다. 일정기에 새로운 호적제가 시행되자 당초 별개로 조사, 신고되었던 아버지의 호와 아들의 호가 이후 어느 시기에 하나로 합치는 경우가 많았다. 김상복, 김성문 부자의 舍戶도 그러한 경우이다. 토지대장에서 김상복 개인의 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아들 김성문이 畓 2필지 357평, 田 5필지 1,208평, 塚 1필지 114평을 소유하였다. 김성문은 아들이 없이 1929년에 사망하였다. 이 같은 家族史로 보건대 김상복, 김성문 부자를 반연리를 대표한 班家나 富民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반연리에는 가막뭇 이외에 ‘김상복 외 6인’을 공동명의로 하는 모두 10필지의 전, 답, 대 1,198평이 있었다. 이 공동명의로의 토지는 반연리의 소유이거나 김상복이 속한 금녕 김 문중의 소유가 아니었다. 바로 다음해인 1913년에 10필지의 소유권이 반연리의 최만룡에게 일괄 이전되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매매되었을 것이다. 이 사실은 가막뭇의 소유권을 취득한 ‘김상복 외 6인’이 반연리의 里中이나 金寧 金氏 문중을 대표하는 자격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가막뭇은 반연리의 재산이 아니었다. 김상복 등이 10필지의 공동명의를 매각할 때 가막뭇을 함께 처분할 수는 없었다. 경남도장관이 임시토지조사국의 사정 결과에 不服하여 소유권 분쟁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나머지 6필지 대규모 유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상으로 미루건대 ‘김상복 외 6인’은 토지조사사업을 호기로 삼아 그들이 관리해 온 수리시설이나 소유권이 애매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성공한 私組織이었다고 보인다. 그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은 토지에 대해서는 성공했지만 저수지에서는 실패하였다. 1918년 임시토지조사국의 紛爭地審査委員會는 언양면의 7필지 대규모

유지가 모두 국유라는 裁決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는 1910년대 총독부의 水利政策에 떠밀린 것으로 정치적이었다. 그렇긴 하지만, 유지를 둘러싼 기존의 수리조직이 강고한 단체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했다면 총독부가 소유권을 강제로 취소함에 따른 저항이나 비용이 상당하였을 터인데, 그에 관한 어떠한 보고도 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규모 저수지를 둘러싼 전통 수리조직은 존재하긴 했지만 그리 강고한 것은 아니었고, 더욱이 리 그 자체는 아니었다. 수리에 연고가 있는 하층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임의적인 조직이었다고 보인다.

다음, ‘국공유’는 29만여 평인데, 그 비중은 ‘개인’ 다음으로 큰 8.3%이다. 그 대부분은 앞서 설명한 구 언양현 시대에 이곳에 분포한 각종 屯土가 총독부의 국유지로 접수된 것이다. 다음, ‘공공기관’은 鄉校와 普通學校의 토지로서 5,717평, 0.2%이다. 그 중의 1필지 234평은 1913년 3월에 총독부의 인가를 얻은 彦陽公立普通學校의 부지이다. 나머지는 彦陽鄉校의 재산이다. 총독부는 전국의 郡에 분포한 향교의 재산을 郡守의 관리 하에 두었으며, 토지조사사업에서는 향교를 일종의 法人으로 간주하여 향교의 토지를 향교 명의로 등록하였다. 향교 재산의 수입은 대부분 지방관에 의해 공립보통학교의 경비에 충당되었다[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查局(1918a, p.168)]. 언양공립보통학교의 설립과 운영도 마찬가지였다. 다음, ‘종교기관’은 通道寺, 石南寺, 天主敎會, 耶蘇敎會 등 종교기관의 부지와 전답을 말한다. ‘종교기관’이 5만여 평이나 된 것은 전술한대로 언양면 최대의 지주가 통도사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회사’는 앞서 소개한 동척의 社有地를 말한다.

이 같은 1912년의 토지소유자 형태는 1945년까지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보였다. 첫째, ‘개인’이 311만여 평에서 324만여 평으로 조금 증가하였다. 상대적 비중도 87.5%에서 90.9%로 증가하였다. 이는 총독부가 토지조사사업이 끝난 뒤 1923년부터 29만여 평의 국유 전답을 緣故小作農에게 불하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국유지 비중이 8.3%에서 1.5%로 크게 줄었다. 둘째, 그럼에도 국유 溜池의 면적이 3,453평에서 30,997평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대로, 1918년 1,000평 이상의 7개 유지를 민유에서 국유로 돌렸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공동’의 유지가 크게 줄었다. 셋째, 1918년 이후 유지의 증가는 ‘개인’의 유지가 주를 이루었다. 1912년 4,181평이던 ‘개인’ 유지는 1945년 19,421평이 되었다. 그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살펴겠다. 넷째, ‘공동’의 답이 크게 증가하였다. 2명 이상의 자연인이 공동으로 답을 소유하는 것은 1912년에 3,748평, 0.2%에 불과했는데, 1945년까지 85,128평, 3.8%로 꽤나 크

게 증가하였다. 이는 1912년만 해도 낮은 共有의 관행이나 제도가 일정기에 걸쳐 조금씩 보급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912년 朝鮮民事令의 공포와 토지조사사업의 실시는 근대적 소유권의 개념과 법제에 대한 대중적 이해를 심화하였으며, 이에 필요에 따라 토지를 공동명의로登記하는 민간의 관행을 확산시켰다. 다섯째, ‘리’의 소유지가 10,726평에서 930평으로 크게 줄었다. 이는 1930년 리 소유지를 모두 면 소유지로 강제 전환하였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리에 어떤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실치 않다. 어쨌든 리는 토지나 기타 재산을 소유할 단체로서 그 法人格이 인정되지 않았다. 총독부 지방행정의 중심은 면이었다. 여섯째, ‘공공기관’의 임야가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공유’ 임야를 1924, 1932년에 걸쳐 蔚山郡學校費로 이전한 결과이다. 그 외에 ‘종교기관’과 ‘회사’에서 두드러진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1912년 당시 ‘회사’는 동척의 사유지가 유일하였다. 동척의 사유지는 1912년의 37,394평에서 1945년의 35,018평으로 조금 줄었다. 그 사이 동척 이외에 彦陽金融組合, 中南土地改良組合, 三重産業合名會社, 한신不動產株式會社, 梁山自動車株式會社, 慶南自動車株式會社, 煙草小賣人協會 등이 생겨났다. 그로 인해 ‘회사’는 1912년에 비해 2,000여 평 증가하였다. 이 증가한 ‘회사’는 주로 업무용 대지였다.

3.3. 문중

이상과 같이 1912년 언양면의 토지소유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한 것은 개인적 소유였다. 共有 또는 總有에 기초한 인간들의 신뢰·협력관계로서 共同體나 結社는 토지대장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향교, 학교, 사원, 교회, 동척과 같은 조직체가 소수 있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관변 단체이거나 일정 초기에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다. 언양면 주민을 성원으로 하는 전통적 단체로서 예컨대 書堂을 운영하는 學契, 泮를 운영하는 泮契, 영림을 위한 松契, 친족 간의 제사와 부조를 위한 族契, 동리의 질서와 공공기능을 위한 洞契 등이 토지의 소유자로 토지대장에 등록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계들이 얼마나 조직되어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일부 조직되어 있었겠지만, 공유재산을 마련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럴 정도로 제반 단체의 결성과 활동이 활발했다면, 그들은 토지조사사업을 맞아 공유재산을 ‘공동’의 형태로 등록하였을 터이다.

임야나 유지와 같은 공공성이 큰 토지에서도 개인적 소유가 많았다. 1,000평 이상의 대규모 유지를 둘러싸고서는 수리조직이 있긴 했지만, 그리 강고한 단체는 아니

었다. 리 역시 그 단체성이 취약하였다. 19세기까지 동리는 취락, 경지, 산림, 하천의 구조적 결합이 아니었다. 전통적으로 리는 주민의 聚落을 가리켰으며, 몇 가지 계기로 소규모 재산을 보유했으나 그 규모나 기능은 보잘 것 없었다. 총독부는 지방행정 제도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독자의 경계와 공간을 지닌 리를 창출하였지만, 리의 法人格을 인정하지 않았다. 총독부는 리가 보유해 온 얼마 되지 않은 재산을 지방행정의 새로운 중심인 面의 소유로 이전하였다.

토지대장이 전하는 1910년대 언양면 사회의 조직적 특질이 과연 위와 같았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 언양에서도 다른 지방에서처럼 男系 親族集團이 발달하였다. 그들은 조상제사와 상호부조를 위해 門中이나 族契를 결성하였다. 문중이나 족계의 공유지는 어느 자연인, 곧 宗孫의 소유였으며 그렇게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토지대장에서 문중이나 족계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그 이유 때문이다. 문중이나 족계의 결성을 중심으로 한 언양의 사회조직은 의외로 강고하였을 수 있다. 이하 이 같은 대안적 해석의 가능성을 검토한다.

구 언양현에서 인근 密陽이나 慶州에서처럼 사회적 위세가 높은, 일류 신분의 양반 친족은 발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鄉班이라 불리는 낮은 위세의 양반 친족은 존재하였으며, 상호 경쟁적으로 발전하였다. 孫淑景에 의하면 구 언양현을 대표하는 양반 가문은 여덟이었는데, 상남면 鳴村의 慶州 金氏, 하북면 池內의 東萊 鄭氏, 상남면 吉川의 慶州 李氏와 密陽 朴氏, 삼동면 荷峇의 靈山 辛氏, 하북면 稜山의 旴州 姜氏, 상북면 泉所의 延安 宋氏, 중북면 盤谷의 安東 權氏이다. 이 가운데 상북면의 연안 송씨와 중북면의 안동 권씨는 지금 분석 중인 언양면의 범위에 속한다. 8대 성씨 가운데 가장 강세한 것은 삼동면의 신씨와 중북면의 권씨였다. 남천을 경계로 권씨는 북쪽에, 신씨는 남쪽에 있다 하여 北權南辛이라고도 했다. 권씨와 신씨의 黨色은 老論이며, 나머지 6대 성씨는 南人이었다.

이들 언양의 8대 성씨는 조선후기에 科擧 급제자를 거의 배출하지 못했다. 조선시대의 약 14,600명에 달하는 文科 급제자 중 언양인은 2명에 불과하였다. 8대 성씨는 生員과 進士도 거의 배출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과거보다는 배타적인 통혼권을 유지하거나 鄉校, 書院, 祠宇의 조직을 독점하고 祭禮를 주도하는 것으로 그들의 신분적 지위를 고수하였다. 손숙경에 의하면 이들 8대 성씨 밑에는 보다 낮은 위세의 8개 성씨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또 보다 낮은 위세의 집단이 있었다. 이들 하위 향반의 일부는 원래 鄉吏였는데, 19세기 어느 시기에 향교의 儒案에 子弟의 이름을 등

록함에 성공함으로써 향반 신분으로 진입하였다. 구 언양현에서 생원과 진사는 이들 하위의 향반 가문에서 배출되었다. 이처럼 구 언양현에는 약 20개에 달하는 향반 신분의 친족집단이 성립해 있었다[손숙경(2012)].

언양의 鄉班社會는 어느 정도 강고한 조직을 이루었을까. 다른 지방의 양반 친족을 살펴보면, 그 중심이 되는 종가에는 조상 전래의 墓位 전답과 齋舍가 있어서 제사의 비용과 기물을 뒷받침하였다. 친족집단은 종가를 중심으로 한 제사조직으로서 門中 또는 宗中이라고 하였다. 또한 문중은 크고 작은, 구성원의 범위를 달리하는 복수의 족계를 운영하였다. 족계는 성원의 각출로 구성된 공유 契畝를 보유했으며, 그로부터의 소출로써 성원에 대한 각종 부조, 賓客 접대, 기타 공동비용을 지출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 임하여 임시토지조사국은 이 같은 문중의 재산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宗中財産은 祖宗의 유산, 宗中 일동의 각출 및 종중 特志家의 기부 등에 의하며, 이 재산으로써 영원히 조종의 제사를 행할 목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인해 門長·有司 등 개인의 소유가 아님은 물론이며, 이 종중재산은 量案, 기타 官公簿에는 ‘무슨 무슨 宗中’, ‘무슨무슨 門位’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음이 보통이지만, 때로 宗孫 혹은 문장·유사 등의 개인명의로 등록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종손 혹은 문장·유사 등은 종중에서 위임 받지 않은 한 단독 의사로써 종중재산을 처분할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문장 혹은 종손이 자의로 이를 타인에 매도하여 同派 문중간에 공유권의 관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1918a, p.170)].

이에 임시토지조사국은 문중 및 기타 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설정하였다. “宗中 기타 단체명으로 신고되는 것에 대해서는 民事令 기타 법령에 의해 法人 자격을 구비하는가 여부를 조사하여, 법인자격을 갖지 않은 것은 그 성질에 따라 個人名義 혹은 共有名義로 신고하게 하고, 관계자 전원의 공유로 신고된 것을 제외하면, 申告書의 地主名 좌측에 괄호를 하여 ‘宗中財産’ 혹은 ‘무슨 學校財産’ 등으로 附記해 둘 것”[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1918a, p.67)]. 이처럼 문중은 스스로를 법인으로 등기하여 그 이름으로 재산을 등록하든가, 그런 까다로운 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공동소유자 전원의 이름을 등록하든가, 특정 자연인을 신고자로 한 다음 괄호 속에 ‘종중재산’을 부기해 받을 수 있었다.

1912년 언양면의 토지대장에서 법인으로 등기된 문중의 존재나 개인명의로 이어 괄호 속에 ‘문중재산’을 부기한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2~3명의 이름을 나열

하거나 누구 외 몇 명의 형식으로 표기한 경우가 있다. 토지대장은 실무 행정을 위한 장부로서 이런 편의적 형식을 취하였지만, 법원에 비치된 토지대장의 원본에는 공동명의자 이름 전부가 열기되었을 것이다. 이 부류의 토지가 앞서 소개한 ‘공동’의 소유지로서 도합 38,486평이다.

이 가운데 전, 답, 대의 세 지목에 한하여 ‘공동’의 소유지를 살펴보면 모두 35필지이다. 그 가운데 공동명의자의 姓이 다르거나, 주소가 ‘타면인’, ‘타군인’, ‘타도인’의 부재지주이거나, 얼마 있지 않아 타인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는 종종재산으로 볼 수 없다. 이것들을 제외한, 동성의 공유자가 1959년까지 장기간 소유한 토지를 추리면 7필지이다. 그 가운데 2필지는 반송리에 거주한 ‘송종서 외 12인’이 소유한 대곡리 890번지의 대 642평과 891번지의 전 1,565평이다. 이 두 필지는 언양 8대 성씨의 하나인 연안 송씨의 종종재산임이 확실하다. 송종서는 소유지가 15,590평에 달하는 지주적 존재로서 송씨 문중의 중심인물이다. 반면 반곡리에 거주한 권씨 일족은 한때 北權南辛의 위세를 누렸지만, 문중을 유지함에 성공하지 못했던 것 같다. 평리에 거주한 ‘권만술 외 4인’과 ‘권태운 외 4인’이 각각 993평과 679평의 전을 등록하였는데, 권씨 문중을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 권만술은 1929년 이후 재산의 일부를 처분한 다음, 장남 이하 전 가솔을 이끌고 일본 나고야(名古屋)로 건너갔으며 거기서 영구 정착하였다. 권태운은 개인 재산이 308평에 불과한 빈농이다. 연안 송씨처럼 문중재산임이 확실해 보이는 경우는 반천리에 거주한 英陽 千氏 일족이다. ‘천치봉 외 4인’은 반천리에 대 85평과 전 1,565평을 공동소유하였다. 천치봉은 4,395평을 소유한 부농이며, 그의 동생 천치정도 2,790평의 건실한 중농이다. 영양 천씨는 향반 사회에 끼이지 못한 신분이지만, 篤農과 친족 결합의 강화를 통해 가문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있었다. 그 외에 1필지의 공동소유지가 있으나 64평의 자투리에 불과하여 논할 바가 못 된다.

이 외에도 언양면에는 다수의 성씨 집단이 있었다. 어음리, 태기리, 반천리에 거주한 慶州 金氏가 있었다. 송대리에는 향리 가문의 海州 吳氏가 있었다. 이들은 토지조사사업을 맞아 조상 전래의 묘위전이나 계답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지 않았다. 종손이 그의 개인명의로 등록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토지가 없었을 수도 있다. 더 이상의 자세한 사정은 토지대장만으로 알기 힘들다. 종손이 그의 개인명의로 등록한 묘위전은 종종의 공유재산이었던가, 아니면 종손의 개인소유였던가. 위와 같이 토지조사사업 당시 공유지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제도는 알려져 있었으며, 민간은 필

요에 따라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었다. 그 점을 전제하면, 종손이 개인명으로 등록한 묘위전은 그의 개인적 소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앞서 잠시 소개하였듯이 토지조사사업 이후 공동명의의 토지가 늘어났다. 문중재산을 공동명으로 등록하는 관행도 일정기를 거쳐 확산되었다고 보인다.

일반적으로 말해 문중재산은 양반 신분의 친족집단이라 해서 어디에나 있지는 않았으며, 있다 해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 1935년 善生永助의 조사에 의하면 울산군 三同面 荷峯里的 신씨 동족부락에는 답 5두락의 문중재산이 있었다. 동 菴基里的 신씨 동족부락에는 13두락의 문중재산이 있었다. 전술한 북권남신의 그 신씨이다. 반면 울산군 農所面 松亭里的 박씨 부락에는 문중재산이 없었다. 인근 밀양군 밀양면 校洞里的 손씨 부락, 밀양군 山外面 竹東里的 손씨 부락과 동 竹西里的 손씨 부락은 다수의 顯祖와 현직 高官을 배출한 일류의 班村이었는데, 거기서도 공동재산은 없었다[朝鮮總督府(1925, pp.870~877)]. 1900년 대한제국기에 이루어진 충남 燕岐郡의 양전에서 여러 문중의 位土로 등록된 토지는 동군 7개 면에 걸쳐 전 면적의 1.1%를 점하였다. 이들 토지는 이후 토지조사사업에서 대부분 종손의 개인명으로 등록되었다[金鴻植 외(1990, pp.17~18)]. 구 언양현의 사정도 대개 비슷했으리라 짐작된다.

문중은 기본적으로 종손이 주도하는 조상 제사를 위해 뭉쳐진 文化的 威勢集團이다. 제사의 비용을 위한 문중 재산은 종손 개인의 재산인 경우가 많고, 문중 재산이라 해도 종손의 개인 재산과 구분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문중은 공동의 재산이나 공동의 이해관계로 뭉친 단체는 아니었다. 따라서 토지대장에서 문중의 재산이 없거나 적다고 해서 문중 조직이 없거나 약했던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문중의 역할이 중요하여 농촌생활을 구석구석 제약할 만큼 포괄적이나 강력하지도 않았다. 문중에 대한 이런 정도의 이해를 전제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말해 1910년대 언양면에서 사회단체의 존재와 역할이 희박했다는 앞서의 지적은 여전히 타당하다. 농업, 상업, 수공업, 사회·문화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공동의 권리나 의무에 바탕을 둔 인간관계나 단체는 별로 존재하지 않았다.

크게 말해 1910년대 언양 소농사회는 개별 가족이 어우리(병작), 품앗이, 머슴, 장시, 행상 등의 단기계약으로 만나고 헤어지는 경제활동을 토대로 하는 위에, 개별 가족의 친족집단이 철따라 행하는 조상 제사, 지배 세력인 향반사회가 鄉校, 祠宇, 齋舍에서 정례로 거행하는 先賢 제사, 契會, 詩會 등의 문화 활동으로 구성되었다.

〈표 9〉 彦陽面 耕地 所有의 階層分化(1912, 1945)

단위: 坪, %

所有規模	1912년				1945년			
	所有者	不在地主	面積	比重	所有者	不在地主	面積	比重
60,000坪 이상	1		269,247	8.5				
15,000-60,000평	9	7	276,455	8.7	13	8	305,630	9.7
12,000-15,000	7	4	96,473	3.1	7	2	92,279	2.9
9,000-12,000	8	4	84,955	2.7	7	6	77,555	2.5
6,000-9,000	41	8	298,821	9.5	22	10	156,484	5.0
3,000-6,000	160	33	655,984	20.8	127	24	506,466	16.1
1,500-3,000	347	73	726,587	23.0	346	65	712,300	22.7
300-1,500	882	336	699,831	22.1	1,617	420	1,171,019	37.3
0-300	353	93	52,482	1.7	778	177	115,214	3.7
0	309	16			491	66		
합계	2,117	574	3,160,835	100.0	3,408	778	3,136,946	100.0

자료: 『彦陽面土地臺帳』.

비고: 경지소유 0은 垡地만의 소유자임.

4. 소농과 지주

4.1. 경지 소유의 계층 분화

〈표 9〉는 田과 畓 두 지목만을 대상으로 10개 구간별 소유자 수와 면적 합이 1912년과 1945년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면적 합이 0인 구간은 垡地만을 소유한 사람을 가리킨다. 부재지주는 〈표 7〉의 ‘타면인’ 이하를 가리킨다. 최상위 60,000평 이상의 구간에 속하는 지주는 앞서 소개한 국유지이다. 1923년 이후 국유지는 모두 연고소작인에게 불하되었으며, 이에 1945년에는 그런 큰 지주가 없다. 소유 면적이 6,000평, 2정보 이상인 사람을 임의로 地主 계층으로 간주하자. 1912년 이 계층에 속하는 소유자는 66명이다. 그들의 소유지는 모두 102만여 평으로서 전체 316만여 평 가운데 32.5%이다. 국유지 8.5%를 제하면 24.0%이다. 소유자 수는 총 2,117명인데, 부재지주가 574명이다. 〈표 9〉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유지를 제외한 부재지주의 면적은 총 92만여 평으로서 전체의 29.4%이다. 이러한 지표들은 1910년대 초 언양면에서 地主制의 범주가 지배적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산간

〈표 10〉 1910년 舊 上北面과 中北面의 職業 構成(戶)

	官公吏	兩班	儒生	商業	農業	工業	日稼	其他	無職	計
上北面	10	5	2	151	693	3	40	33	17	954
中北面	1	3	3	32	528	2	20	27	4	620
계	11	8	5	183	1,221	5	60	60	21	1,574

출처: 内部警務局(1910).

부 농업지대로서 언양면은 지주제가 발전할 환경이 아니었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잠시 지주의 면모를 살핀다. 국유지를 제외하면 최상위가 되는 15,000~60,000평 구간에 속하는 지주는 9명이다. 그 가운데 7명이 부재지주이다. 양산군의 通道寺가 5만 2,000여 평으로서 제1의 지주이다. 東拓의 소유지는 3만 7,000여 평이다. 자연인으로 가장 큰 지주는 송태관인데, 울산군 下廂面에서 거주한 부재지주이다. 나머지 4명의 부재지주 가운데 3명도 울산군의 다른 면에 거주하였고, 1명은 경북 경산군의 안병길이란 사람이다. 이처럼 지주의 중심은 부재지주였다. 재지지주로서 가장 지주는 반천리에 거주한 김상봉이란 사람인데, 2만 9,000여 평을 소유하였다.

1912년 언양면의 경지 소유에서 지배적인 범주는 6,000평 이하의 자작농지였다. 6,000평이면 斗落으로 환산하여 30~40두락으로서 自作이 가능한 규모이다. 300평 이상 6,000평 이하의 자작농지에 해당하는 소유가 208만여 평으로서 65.9%의 큰 비중을 점하였다. 이 구간에 속하는 소유자는 1,742명이다. 여기서 동 구간의 부재지주 535명을 제하면 1,207명이다. 이들은 자신의 소유지만을 경작하는 自作農이거나 국유지, 부재지주, 재지지주로부터 부족한 경지를 임차하는 自小作農이었다. 純小作農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1912년 언양 소농사회의 중심부는 이들 1,200여 명의 자작농과 자소작농으로 구성되었다.

1910년 内部 警務局이 호적을 조사할 때 세대주의 직업도 함께 조사하였다. 당시 구 상북면과 중북면의 직업 구성은 〈표 10〉과 같다. 두 면의 합계가 1914년 이후에 생겨난 언양면 주민의 직업 구성에 해당한다. 농업이 1,221호로서 앞의 1,207명과 거의 일치한다. 상업, 공업, 日稼, 기타, 무직은 329호이다. 〈표 9〉에서 垡만을 소유한 사람은 309명인데, 부재지주 16명을 제하면 293명이다. 이들이 상업, 공업, 일가 등에 종사한 329호의 대부분이었다고 짐작된다.

자작농지를 지배적 범주로 하는 1912년 언양면의 소유구조는 1945년까지 큰 변함이 없었다. 1945년 6,000평 이상의 지주 계층에 속하는 인물은 49명으로서 1912년의 65명에 비해 오히려 줄었다. 그들의 면적 비중도 23.9%에서 20.1%로 줄었다. 여기에다 26만여 평의 國有小作地가 민유지로 불하된 것을 고려하면, 언양면에서 지주제는 일정기에 걸쳐 후퇴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주지하듯이 1910~1920년대에 日本人農場을 필두로 한 대규모 지주제가 바다와 강 沿岸의 平野部에서 발달하였다. 언양면은 그러한 일정기의 주류적 동향과 무관하였다.

개별 지주의 모습을 보더라도 靜態的이다. 통도사의 소유지는 1912년의 5만 2,000여 평에서 1945년의 2만 3,000여 평으로 크게 줄었다. 통도사는 1942년 소유지의 상당 부분을 서울의 太古寺에 이전하였는데, 그 결과 태고사가 3만여 평의 새로운 부재지주로 등장하였다. 통도사와 태고사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동척의 사유지도 3만 7,000여 평에서 3만 4,000평으로 조금 줄었다. 그 외의 대표적 부재지주는 경북 경산군의 안병길이다. 그의 소유지는 1912년의 2만 8,000여 평에서 3만 2,000평으로 조금 늘었다. 그 다음은 경성부의 宋錫夏이다. 그는 1912년의 부재지주인 울산군 하상면 송태관의 아들이다. 송태관의 소유지 3만 8,000여 평은 1928년 경성부에 주소를 둔 두 아들 송석하와 송석봉의 공동 명의로 상속되었으며, 1942년 그 대부분이 송석하의 개인 명의로 바뀌었다. 1945년 송석하의 소유지는 3만여 평, 송석하와 송석봉의 공동 명의로는 5,000여 평이다. 결과적으로 송씨가 토지는 일정기에 걸쳐 조금 줄었다.

宋錫夏(1904~1948)는 民俗學者로서 유명한 인사이다. 1904년 언양면에서 출생하였다. 그 때까지 부 송태관은 언양면의 재지주였다. 이후 언제인가 송태관은 울산군 하상면으로 이주하였다. 송씨 일가는 앞서 소개한 구 언양현을 대표하는 8대 양반 성씨의 하나인 연안 송씨의 일원이다. 송석하는 일본 東京商大에 유학하였으며, 1923년 귀국한 뒤 전국을 순회하면서 1만 점이 넘는 民俗資料를 수집하고 촬영하였다. 1932년 朝鮮民俗會를 창립하여 회장을 맡았으며, 해방 후 1946년 서울 남산에 民族博物館을 건립하였다. 1948년 병사하였다. 민족박물관의 소장품은 아쉽게도 6·25 전쟁 통해 상당 부분 흩어졌다.⁽²¹⁾ 그가 일찍이 일본에 유학하고 민속자료를 방대하게 수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부 송태관의 財力 덕분이었다. 민속학자로서 그는 지

(21) 『東亞日報』 1974년 9월 7일.

주경영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언양면에 분포한 그의 소유지는 그를 대리한 현지 마름(畝音)에 의해 관리되었을 것이다. 송석하의 농업에 대한 관심은 매년 일정액의 지대를 마름으로부터 수취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는 일정기의 조선인 부재지주가 대개 그러했듯이 ‘靜態的 地主’에 속하였다. 언양면의 다른 부재지주도 마찬가지였다. 1912~1945년에 걸쳐 소유지의 규모가 전혀 변하지 않은 2명의 부재지주도 있었다.

1912년 제1의 재지주인 김상봉의 소유지 2만 9,000여 평은 1945년 2만 4,000여 평으로서 줄었지만, 실제로 김씨가 가진 재산은 그 사이 증식하였다. 1945년 김상봉의 장남 김정목이 1만 3,000여 평을 별도로 소유하였기 때문이다. 김정목은 1919년부터 토지를 집적하였다. 1940년 부 김상봉은 사망하지만, 토지대장 상의 그의 명의로는 1959년까지 변경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정목은 1929년 이후 사실상 부산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호적 상의 주소는 여전히 언양면 반천리이지만, 그의 자녀와 손자는 부산으로 생활의 근거를 옮겼다. 김씨는 1940년 김상봉의 사망 이후 부재지주로 바뀌었다. 그 밖의 재지주로서는 언양면에 진입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2명의 일본인이 눈에 띄는데, 그에 관해서는 앞서 소개하였다. 이런 정도의 변화를 제외하면 재지주의 동향은 전반적으로 정체적이었다.

〈표 9〉에 관찰되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300~1,500평의 영세한 소유자가 1912년의 882명에서 1945년의 1,617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 구간의 면적 비중도 22.1%에서 37.3%로 증가하였다. 1945년의 소유자 총수는 3,408명인데, 부재지주 778명을 제하면 2,630명이다. 이 수는 1944년의 세대 수 1,884를(〈표 4〉) 크게 능가한다. 이 같은 현상은 소유자가 사망하더라도 토지대장 상의 명의를 변경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이나 일본으로 이주를 하면서 재산의 일부를 남기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가 300~1,500평의 소규모 재산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구간의 소유자 수가 위와 같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4〉에서 보는 대로 언양면의 세대 수는 1920년대 이래 1,800여 세대에서 정체하였다. 1910년대에 비해 250여 세대가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후술하듯이 彦陽場의 발전에 따른 상공인들이었다. 1932년 장시가 열리는 남부리, 서부리, 동부리 일대의 언양면 중심부는 500여 인가가 밀집한 지방도시로 발전해 있었다.⁽²²⁾ 나머지 11개 리, 농촌부의 세대 수에는 큰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었다. 다시 말해 자작농과 자소작농을 중심으로 하는 1910

(22) 『東亞日報』 1932년 11월 12일.

년대 언양 소농사회의 기본구조에는 일정 말기까지 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4.2. 1907~1912년의 소농경영

구 언양현의 자료로서 1907년에 만들어진 籌板이 있다. 주판이란 납세자의 本名과 戶名을 적은 다음, 납세의 대상이 되는 田, 畓, 塚 각 필지의 員·坪, 字號, 地番, 地目, 結負, 斗落을 열거한 徵稅臺帳을 말한다. 전통적 양식의 주판에는 본명과 두락이 없었는데, 統監府의 징세제도 개혁에 의해 1907년부터 주판에 적히게 되었다. 주판은 현재 경남 언양군 각 면과 전남 潭陽郡 각 면의 것이 奎章閣에 희귀하게 전하고 있다[한국고문서학회(1996, pp.433~439)].

1907년 언양군 상북면 주판에 적힌 납세자는 모두 805명이다. 그들이 보유한 전, 답, 대의 토지는 도합 257結에 6,982斗落이다. 각 납세자의 토지는 당시 소작인 납세의 관행에 따라 대개 자작지와 소작지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주판은 각 납세자 농민의 경작규모를 나타낸다. 소작지 가운데는 앞서 소개한 23결여의 官屯, 驛屯, 別砲屯, 禁衛營屯, 雇馬屯이 있다. 주판에서 이들 둔토의 필지는 監官과 같은 현지 관리인의 명의로 취합되었다. 이에 주판에 나타난 농민의 경작규모에는 둔토가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전제하면서 1907년의 상북면 주판에서 확인되는 경작규모의 분포를 제시하면 <표 11>과 같다. 田 1두락은 畓 0.5두락으로 환산되어 통합되었다. 塚는 제외하였다. 전답 가운데는 전술한대로 9결여의 浦落地가 있다. 이도 제외되었다. 경작규모가 0인 162명은 대 또는 포락지만을 보유한 농민을 가리킨다. 전체 805명에서 이들 162명을 제하면 643명이다. 이는 <표 9>에서 보는 1910년의 상북면 농업호 693호와 비슷한 수이다. 643명의 납세자 농민 가운데 627명, 97.5%의 절대 다수가 30두락, 곧 6,000평 미만을 경작하였다. 더 이상의 규모를 경작한 16명이 있는데, 그 중의 일부는 둔토의 감관들로서 실제 경작자가 아니다. 이들을 제외한 30두락 이상의 대규모 경작은 10여 명이며, 그들의 면적 비중은 5~6%에 불과하다.

10두락 미만을 경작한 하층 농민의 30% 가까이는 자기 명의로 납세하는 塚地가 없는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다른 사람의 家屋이나 行廊, 挾舍, 挾房, 農幕에 입거하는 자들로서 이른바 挾戶들이다. 나는 이전에 언양군 三南面(三同面)의 주판을 연구하면서 10두락 미만을 경작하는 하층 소농의 상당 부분이 협호임을 지적한 바가 있는데[李榮薰(1988, pp.376~379)], 그 점은 지금의 상북면 주판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11〉 1907년 彥陽縣 上北面 농민의 경작규모

단위: 두락, %

區間	納稅者數	동상 비중	面積合	동상 비중
100두락-	2	0.3	297.1	4.3
50-100두락	4	0.6	241.9	3.5
40-50	2	0.3	89.5	1.3
30-40	8	1.2	259.0	3.7
20-30	55	8.6	1,319.5	18.9
10-20	193	30.0	2,824.8	40.5
0-10	379	58.9	1,950.5	27.9
0	162		0	
合計	805	100.0	6,982.3	100.0

자료: 『慶尙南道彥陽郡籌板』(北一同).

지라고 할 수 있다.

상북면의 주판과 언양면의 토지대장은 시차가 5년에 불과하다. 두 장부를 대조하면 주판 상의 납세자 805명 가운데 390명을 토지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자가 415명으로서 더 많다. 5년의 짧은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장부의 인물이 이렇듯 크게 일치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확인되지 않은 415명의 일부는 5년 사이에 죽거나 다른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다. 보다 중요한 이유는 두 장부의 이름형태가 달랐다는 점이다. 총독부가 조제한 토지대장의 이름은 반드시 본명이었다. 그에 비해 1907년 대한제국이 만든 주판 상의 이름은 본명이 아닌 경우가 많았다. 조선왕조의 시대는 어느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개일 수 있는 多名의 시대였다. 조선왕조가 작성한 호적에 등록된 양반 신분의 이름은 대개 본명이었다. 그래야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증명해 받을 수 있었다. 그 같은 身元證明制度는 量案, 籌板과 같은 徵稅記類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양안과 주판에 등록된 이름은 본명에 국한되지 않고 奴名, 戶名, 兒名, 字 등으로 다기하였다. 오래 전에 사망한 父祖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백년도 더 넘게 단일의 戶名을 襲用하는 집도 있었다[李榮薰(1990, pp.89~137)]. 그에 비해 총독부가 작성한 호적에는 모든 사람이 본명으로 등록되었다. 비유컨대 모든 인간에 대한 국가적 登記制度가 성립한 것이다. 모든 토지재산의 소유자는 호적과 일치하는 본명으로 토지대장에 등록되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의 증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대한제국기 1907년의 주판과 일정기

〈표 12〉 上北面 農民의 田畝 所有와 耕作 規模의 關係

단위: 坪, 명

경작 소유	0- 500	500- 1,000	1,000- 1,500	1,500- 2,000	2,000- 2,500	2,500- 3,000	3,000- 4,000	4,000- 5,000	5,000- 6,000	6,000-	계	소유> 경작	경작> 소유
0- 500	26	25	12	28	8	11	17	8	5		140	15	125
500- 1,000	9	10	15	6	6	6	8	3			63	12	51
1,000- 1,500	4	4	5	4	4	4	4	4	3	1	37	11	26
1,500- 2,000	6	2	9	5	1	4	7		1	1	36	20	16
2,000- 2,500	7		1	3	1	4	4	2			22	11	11
2,500- 3,000	2	2	2	2		4	1	2	1		16	11	5
3,000- 4,000	6		2	2	1	3	4				18	15	3
4,000- 5,000	1	3		1	1		3	1			10	10	0
5,000- 6,000	6	1	1	1				3	1		13	12	1
6,000-	2		1	1				3			7	7	0
계	69	47	48	53	22	36	48	26	11	2	362		

자료: 『慶尙南道彦陽郡籌板』(北一同), 『彦陽面土地臺帳』.

1912년의 토지대장에는 작성의 취지와 방식에서 이 같은 차이가 있다. 5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두 장부의 인물들이 크게 일치하는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이다.

〈표 12〉는 주판과 토지대장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390명의 주판 상의 경작규모와 토지대장 상의 소유규모의 상관을 제시한 것이다. 390명 가운데 28명은 墾地만 소유한 사람이어서 제외되었다. 두 장부를 비교하기 위해 주판 상의 田 1두락을 100평, 畝 1두락을 200평으로 환산하였다. 소유규모와 경작규모의 상관을 살펴보면, 2,000~2,500평을 경계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이하 구간에서는 경작규모가 소유규모보다 일반적으로 크다. 그런 사람이 모두 218명이다. 모자라는 경지를 소작지의 임차를 통해 보충하는 自小作農들이다. 대조적으로 2,000~2,500평 이상의 구간에

서는 일반적으로 소유규모가 경작규모보다 크다. 소유지의 일부를 소작지로 임대하는自作地主들이다. 그런 사람이 모두 55명이다. 그런데 부유한 농가가 소유지의 일부를 소작지로 방출하기 시작하는 경계가 실제 2,000~2,500평이었는지는 의문이다. 표본의 수도 작고 질도 같지 않은 두 장부의 대조여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결과이다. 인근 삼남면의 1907년 주판과 1871년의 양안을 비교한 나의 이전 연구에서는 자작농이 소작지를 방출하는 경계는 대개 30두락, 곧 6,000여 평 전후였다. 그 편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 <표 12>는 가난한 농민이 소작지를 임차하고, 부유한 농민이 소작지를 대여하는 小農社會를 관철하는 일반 원리는 보여주고 있다. 그 점을 전제하면서 한 가지 지적할 특이점은 소유규모와 경작규모의 상관에서 分散이 심하다는 점이다. 소농의 가족은 성립, 확장, 해체의 과정을 밟은 有機的 生物과 같다. 성립 단계의 가족은 일반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가난하다. 소작지를 구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하여 경작규모를 늘림에도 한계가 있다. 확장 과정의 가족은 소유지는 작지만 노동력이 많아 경작규모를 많이 늘릴 수 있다. 그 결과 살림은 부유해지며, 재산의 축적과 더불어 자작지가 조금씩 늘어난다. 어느 단계에서 소농은 자작지도 경작지도 많은 절정의 단계에 이른다. 여분의 자작지는 성립 단계의 가난한 젊은 세대에게 소작지로 대여된다. 이후 소농은 자식들의 결혼과 분가에 따라 위축과 해체의 과정을 밟기 시작한다. 이 같은 가족의 生涯史가 대부분의 농가에서 규칙적으로 펼쳐진다면, 그 소농사회에서 농가의 소유규모와 경작규모 간에는 강한 相關關係가 성립할 것이다.

그렇지만 <표 12>에서 보는 1907~1912년 상북면 농민의 소유와 경작 규모의 상관관계는 꽤나 분산적이다. 예컨대 소유규모가 작은 가난한 농가의 경작규모가 매우 큰 경우가 있다. 자작농을 나타내는 45도 右上部의 회색 구간이 그에 해당한다. 1,0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가난한 세대가 2,500~6,000평을 경작하고 있다. 여기에 2,500평 이상을 경작하는 128명 중의 58명이 모여 있다. 45도 左下部의 회색 구간은 그와 정반대인 경우이다. 여기에 모인 21명은 2,500~6,000평을 소유한 부유한 세대이지만, 경작규모가 고작 1,000평 미만인, 조기에 地主로 변신한 사람들이다.

이처럼 소유규모와 경작규모의 상관이 분산적임은 앞과 같은 소농 생애사의 전개가 규칙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았음을, 다시 말해 소농경영의 재생산구조가 전반적으로 불규칙하고 불안정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같이 소유와 경작의 상관

이 분산적임은 지금까지 확인된 19세기의 여러 다른 지역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李榮薰(1988, pp.546~550)]. 일반적으로 말해 19세기에 걸쳐 소농경영은 불안정하였다. 잦은 凶作과 災害는 소농의 재생산구조를 교란하였다. 자작지의 보유 기간은 평균 6~7년에 머물렀으며, 소작지의 그것은 평균 3년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소작지에서 소작농은 빈번하게 교체되었다. 농가는 대개 20년을 주기로 다른 면으로 이동하였으며, 양반 신분의 이동주기는 그보다 2배 정도 길었다[이영훈·조영준(2005, pp.3~25)]. 앞서 살폈듯이 전답은 물론, 임야나 유지까지 대부분의 토지는 개인의 재산이었다. 농가를 한 곳에 장기간 정착시킬 기능과 질서를 창출하는 단체는 없거나 약하였다. 소농경영의 불안정성은 19세기에 걸쳐 개선되지 않았다. <표 12>는 그러했던 19세기 역사의 餘波를 보이고 있다.

4.3. 1910년대의 수리조직

앞서 소개한대로 산간부 도작지대로서 언양면에는 오래 전부터 계간 천수를 담은 溜池나 이를 引水, 灌溉하는 湫가 발달하였다. 일정기에 걸쳐 언양면의 수리 사정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가. <표 13>은 토지대장에서 확인되는 1912년 이래 1947년까지 주요 수리시설인 溜池의 필지 수와 면적 합을 제시한 것이다. 제시된 연도는 변화가 발생한 연도를 가리킨다. 예컨대 1912년 다음이 1915년인 것은 1913년과 1914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뜻이다.

1912년, 토지조사사업에서 최초로 조사된 유지는 26필지에 도합 35,203평이었다. 당시는 하나의 유지가 하나의 필지로 조사되었다. 다시 말해 1912년 언양면의 유지 수는 26개였다. 1910년대에 편찬된 언양읍지는 앞의 <표 2>와 같이 언양면의 유지가 10개라 하였지만, 실제로는 조그만 것까지 합하여 모두 26개였다. 유지 1개의 평균 면적은 1,354평이다. 소유자 기준으로는 國有 2개, 里有 1개, 民有 23개이다. 앞서 소개한대로 민유 23개 가운데 7개는 1,000평 이상의 대규모 유지로서 당초 2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 사정되었다. 그에 대해 慶南道長官이 분쟁을 제기하여 1918년 모두 국유로 바뀌고 말았음은 앞서 지적한 그대로이다. 전통적으로 里 자체는 水利團體가 아니었다. 언양면에서 里有의 유지는 표에서 보듯이 1912~1947년 내내 1필지에 그쳤는데, 반천리에 소재한 25평의 조그만 못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소규모 유지는 개인의 소유였다. 대조적으로 관리에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요구되는 대규모 유지를 둘러싸고서는 현지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는 수

〈표 13〉 彦陽面の 溜池(1912~1947)

단위: 坪

年度	全體		國有		里有		民有		民有 내 共同所有		民有 내 他地人所有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筆地	面積
1912	26	35,203	2	3,453	1	25	23	31,725	7	27,544	7	1,896
1915	27	35,173	2	3,453	1	25	24	31,695	7	27,544	8	1,866
1917	28	35,648	2	3,453	1	25	25	32,170	7	27,544	8	1,866
1919	29	36,211	9	30,997	1	25	19	5,189	0	0	8	1,956
1936	31	36,421	9	30,997	1	25	21	5,399	1	216	8	1,866
1939	33	37,261	9	30,997	1	25	23	6,239	1	216	9	2,646
1940	42	38,722	9	30,997	1	25	32	7,700	2	415	13	3,839
1944	81	50,642	9	30,997	1	25	71	19,620	2	415	32	7,968
1945	82	50,858	9	30,997	1	25	72	19,836	2	415	32	7,968
1947	113	63,021	9	30,997	1	25	103	31,999	2	415	45	15,583

자료: 『彦陽面土地臺帳』.

리조직이 있었다. 1904년 4월 일본인 농업기사 둘이 密陽에서 울산 時禮로 여행하였다. 그들은 수리시설과 관련하여 “관개·배수 등의 설비 별로 볼만 한 것이 없지만, 堤堰을 쌓고 用水路를 만드는 것은 여러 차례 본다”고 하였다. 曲淵에 이르러서는 “훌륭한 제언이 있다”고 했는데, 곧 반연리에 소재한 면적 7,023평의 가막못을 가리켰다고 보인다. 그런데 “대저 매년 流失의 피해를 본다고 한다”고 하였다[三成文一郎·有働良夫(1905, pp.75~78)]. 강고한 수리조직이 있어서 저수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앞에서는 가막못의 소유권을 취득한 ‘김상복 외 6인’에 대해 살피면서 그들이 동리를 대표하는 자격이거나 강한 수리조직이 아니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서는 台機里에서의 유사 사례 한 가지를 추가로 소개한다. 태기리 691번지는 면적 4,900평의 대규모 유지이다. 그 소유권은 1912년 ‘김진한 외 5인’의 공동명의로 사정되었다. 태기리의 지배세력은 경주 김씨의 양반 친족집단이다. 그런데 김진한은 金寧 金氏이다.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금녕 김씨는 태기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분이나 족세에서 경주 김씨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태기리에서 금녕 김씨는 下民에 해당하였다. 다시 말해 김진한은 태기리를 대표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 김진한의 농지는 田 703평에 불과하였다. 그 외에 그는 자신의 명의로 89평의 유지 1

필지와 4,925평의 임야를 소유하였다. 김진한은 1853년 출생으로 1919년에 사망하였다. 그에게는 김두연과 김두성이란 두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은 1923년 이후 각자 명의의 토지재산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임야와 유지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임야와 유지의 소유자는 이후 1959년까지도 김진한으로 남았다. 유지는 이후 언젠가 메워져 지금은 태기리 敬老堂에 인접한 裸地가 되었다. 이 사실은 유지와 임야의 재산 가치가 그리 높지 않은 가운데, 당초 김진한이 그것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태기리의 하민으로서 그것을 관리해 온 연고에서였으며, 그에 대해 태기리를 지배한 경주 김씨 종중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김진한 외 5인’이 태기리의 대규모 유지를 그들의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였다. 그들의 행위는 마을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았으나 마을의 總意를 적극 대표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유지를 관리한 마을의 하민으로서 임의적 조직이었다. 1918년 총독부가 마을의 큰 저항 없이 공동명의자들의 권리를 취소한 것도 그 같은 배경에서였다.

대조적으로 소규모 유지는 그 소유권의 귀속이 명확하였다. 소규모 유지는 개인의 재산으로서 매매되었다. 大谷里 714번지의 유지 228평은 1921년, 1925년, 1932년 3차례나 매매에 의해 소유자가 바뀌었다. 1917년 직동리 76번지의 전 621평 가운데 475평이 분할되어 유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그 유지는 3년 뒤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유지가 개인의 수익성 자산으로 개발되고 처분된 사례이다. 유지가 아버지의 사망에 따라 아들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관찰된다. 유지의 소유자는 관개 답의 소유자나 경작자로부터 水稅를 거두었다고 짐작되지만, 그를 뒷받침할 증거나 증언은 아직 채집하지 못했다. 추후의 연구 과제로 미룬다.

개인의 재산인 만큼 소규모 유지의 소유자는 다른 리, 면, 군에 거주하는 사람일 수 있었다. <표 13>에 제시된 ‘民有內 他地人所有’가 그러한 경우이다. 20여 필지의 소규모 유지 가운데 8필지가 타지인의 소유였다. 이 사실은 유지의 개발, 관리, 이용에 있어서 인접 주민으로부터 어떠한 제약도 없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지는 전담처럼 자유로운 개인적 재산이었다. 타지인이 유지를 어떻게 관리하였는지도 추후의 연구 과제이다.

그렇다고 모든 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개인이지는 않았다. 소유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명의가 변경되지 않은 유지에서 그러한 예를 발견할 수 있다. 20여 필지의 민유 유지 가운데 10필지가 그러하였다. 예컨대 반송리 34번의 유지 863평은

1912년 송중후라는 개인의 소유였다. 송중후는 1863년 출생으로 1920년에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토지대장에서 그의 명의는 1959년까지 변함이 없었다. 반송리 351번지의 유지도 마찬가지로이다. 명의자 송중후가 1933년에 사망하지만, 1959년까지 그의 명의는 변경되지 않았다. 이 두 유지는 사실상 반천리의 延安 宋氏 宗中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인다. 나머지 8필지의 사정도 대개 비슷하였을 터이다.

4.4. 수리조합 반대운동과 부리보계량계

1918년 7필지의 대규모 유지가 국유로 바뀐 이후 언양면의 유지에는 1938년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유지의 면적은 1919년 36,211평에서 1938년 36,421평으로 아주 적은 변화가 있었을 뿐이다. 그 사이 전국 도처에서 총독부의 産米増殖計劃에 따른 土地改良事業이 활발하게 펼쳐졌다. 사업의 주체는 水利組合이었다. 수리조합은 저수지를 축설하고, 전통 보를 개량하고, 양수장을 설치하였다. 그렇지만 유서 깊은 산간부 도작지대인 언양면은 그 영향권 밖에 있었다.

언양면에서도 수리조합을 결성하고자 한 시도가 있었다. 그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것은 1927년이다. 茶開里를 중심으로 蓮阜水利組合의 조직을 위한 期成會가 조직되어 몽리 예정구역을 측량하였다. 그러자 인근 두서면과 두동면의 주민까지 포함하여 약 4,000두락의 토지 소유자들이 도 당국에 적극적 반대의사를 진정하였다.⁽²³⁾ 이 조합은 결성되지 못하였다. 언양면의 중심부인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일원에서 수리조합의 결성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은 1925년부터이다.⁽²⁴⁾ 그에 관해서는 앞서 잠시 소개하였다. 그 주역은 1911년 언양면에 진입한 하라오카(原岡伴次郎)라는 일본인이었다. 그는 제과업으로 다량의 토지를 매집하였다. 1932년 남부리, 서부리를 중심으로 분포한 하라오카와 그의 처의 토지는 답 48필지 29,793평을 포함하여 도합 34,267평에 달하였다. 그는 언양면 제1의 재지지주였다. 그의 꾸준한 노력으로 1930년 11월 경상남도 그 해에 인가될 수리조합 가운데 彦陽水利組合이 포함되어 있음을 발표하였다. 몽리구역은 250정보라고 하였다.

이후 언양면에서는 수리조합의 결성을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추진하는 측에서는 지주의 印章을 위조하여 동의서에 捺印하는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23) 『中外日報』 1927년 8월 27일.

(24) 언양수리조합의 추진과 반대 운동에 관해서는 『東亞日報』 1930년 11월 14일, 1932년 5월 27일, 9월 7일 기사, 『朝鮮總督府官報』 1931년 3월 31일 「彙報」를 참조.

1931년 3월 언양면의 토지소유자 300여 명이 浮里湫改良契를 결성하여 토지개량시행자로서 경상남도의 인가를 받았다.⁽²⁵⁾ <표 2>에서 소개한대로 부리보는 남천을 수원으로 하여 서부리, 송대리, 동부리, 남부리, 어음리 일대를 관개하는, 관개 면적이 2,200여 두락에 달한 전통 제1의 수리시설이었다. 그것을 개량하여 관개 개선에 이바지하겠다는 것이 부리보개량계 결성의 취지였다. 그와 더불어 경상남도는 언양수리조합의 계획을 취소하였다. 1932년 5월 언양수리조합의 찬성파와 반대파가 하라오카의 집에서 회동하여 그 추진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대파는 찬성파에게 그간의 추진비용 800원을 보상하였다. 이후 언양의 전답 가격이 배로 뛰었다고 한다.

수리조합의 결성은 여러 지방에서 적지 않은 폐단과 더불어 심각한 반대운동을 야기하였다. 저수지 등의 수원이 개발되고 새로운 수로가 개통됨에 따라 수리사정이 양호한 기존의 답이 水沒되거나 몽리구역에 강제 편입되어 과중한 組合費를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문제점은 언양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상되었다. 이곳의 수리조합 반대운동이 성공한 것은 결국 수리조합의 신설에 따른 경제적 이득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리보개량계의 인가와 언양수리조합 계획의 취소에서 보듯이 총독부의 산업정책은 강압적이지만은 않았다. 전통 수리조직이 총독부의 미곡 증산정책에 부응하고자 할 때 총독부는 그것을 수용하고 지원하는 융통성을 보였다.

대조적으로 남천 건너편인 울산군 中南面에서는 1927년 中南水利組合이 성공적으로 결성되었다. 神佛山의 계간에서 남천으로 흐르는 酌川, 深川 등의 천수에 기반을 둔 중남면의 농업환경은 언양면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에 관한 동아일보의 답사기를 소개한다.⁽²⁶⁾ 이 구역에는 큰 강이 없는지라 防水의 필요가 없고, 경사가 급한 지라 큰 비가 내려도 며칠이면 자연히 흘러내려 沈水의 우려도 없다. 따라서 排水 시설도 필요 없다. 다만 灌溉가 문제인데 재래 전답의 대부분은 작천의 재래 湫로부터 물을 끌어 쓰고, 기타 자연 流水를 이용하여 상당한 수확을 거두어왔다. 약 3분지 1의 면적에서 관개 부족의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灌溉水의 태부족으로 수확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중남수리조합의 결성된 것은 加川里, 象川里 일대에 林野와 雜種地로서 국유지 130정보가 있어 大倉組를 비롯한 몇몇 일본인 지주에게 불하되어 농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농장주들은 당초 果樹 재배를 겨냥하였으나 실패하고 저수지를 축설하여 농장을 畝으로 개량하고자 했다. 농장 부근에는 67정보의

(25)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1월 12일.

(26) 『東亞日報』 1927년 10월 11일.

임야를 소유한 다른 일본인 지주가 있었다. 중남수리조합의 결성은 이들 일본인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조합구역은 248정보이며, 그 가운데 在來畝이 85정보, 임야가 67정보, 在來田이 72정보였다. 임야와 전은 재래 보의 개축과 저수지 2개의 신축을 통해 담으로 변환될 계획이었다. 조합구역에 편입된 재래답의 농민들은 수리조합의 설치에 반발하였지만,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던지 반대운동은 거세지 않았다.

이상에서 언양면과 중남면에서 수리조합의 추진이 상이한 귀결은 본 것은 개발 가능한 미간지와 그에 진입한 일본인 대지주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였다. 언양면에서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거의 없었다. 앞서 지적했듯이 1912년 언양면에서 미간 잡종지는 200여 평에 불과하였다. 언양면에 들어온 제과업자 하라오카가 20년간 집적한 토지도 모두 재래 전답이다. 언양면은 그의 자연환경에 규정되어 오래 전에 개발의 완성을 본 산간부 도작지대이다. 일정기에 걸친 언양면 농업의 변화는 그리 클 수 없었다.

다른 한편, 浮里湫改良契는 수리조합의 설립을 저지하는 데에는 성공하였지만, 그리 오래 존속하지 못하였다. 계의 자금을 契長과 書記가 私用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1933년 1월 4일에 열린 계원의 총회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간의 수입금은 총 1만 4,105여원이고, 지출은 1만 2,800여 원이었다. 1932년 하반기에 湫 시설을 개량하는 공사가 준공을 보았는데, 거기에 1만 2,800여 원이 지출되었다. 계금의 잔액은 1,304원인데, 통장에 남은 것은 단 112원에 불과하였다. 계장과 서기가 임의로 借用하거나 私用하였다. 이것이 事端이 되어 1월 6일 계의 平議員會가 소집되어 계의 폐지를 결의하였다.⁽²⁷⁾ 계금의 유용이 그 빌미가 되었지만, 실은 소기의 공사를 준공한 뒤여서 계가 존속할 실질적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당시의 공사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남천의 물을引入하는 水門이나 幹線水路를 보강하는 수준이었을 것이다. 개량된 보의 시설은 항상적 관리를 요할 정도가 아니었다. 부리보개량계의 결성과 활동으로 언양면의 수리 사정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4.5. 1940년대 유지의 확충

언양면의 수리 사정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긴 것은 1939년부터이다. 1939년은 전국적으로 未曾有의 大旱魃이었으며, 언양면에서의 旱害도 酷심하였다. 동년 9월 28

(27) 『東亞日報』 1933년 1월 4일, 7일, 10일.

일자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언양 지방 5개 면에서는 혹심한 한해로 수확기를 맞아 매일 男負女戴의 遊離民이 수십 호씩 속출하는 가운데, 익지도 않은 도토리를 채취하기 위해 매일 수천 명이 入山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총독부는 각지에 旱害救濟對策事業을 벌였으며, 언양 지방 5개 면에서는 도로개수공사와 저수지 浚渫이 시행되었다.⁽²⁸⁾ 이를 계기로 유지의 개발이 추진되었다. <표 13>에 의하면 유지는 1939년에 2필지, 1940년에 3필지, 1944년에 39필지가 증가하였다. 1944년은 戰時動員體制가 강화된 시기이다. 총독부는 식량 증산을 위해 戰時增米計劃을 추진하였다. 1944년에 39필지의 유지가 개발된 것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였다. 다시 말해 언양면의 수리 사정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난 것은 일정 최말기인 1944년에 이르러서였다.

1944년의 공사 내역을 잠시 소개한다. 그에 의해 반곡리에 유지 1개(無名), 다개리에 유지 2개(오늘날의 새뫓안뫓, 뒷골뫓), 직동리에 유지 2개(오늘날의 샘골저수지, 까꾸당2저수지), 태기리에 유지 1개(오늘날의 태기저수지), 도합 6개의 유지가 신설되었다. 이를 위해 개인 소유지로서 전답 39필지의 전부 혹은 일부가 유지로 수용되었다. 이전까지는 토지대장 상의 1필지가 그대로 1개의 유지였는데, 이 때부터 다수의 필지가 모여 1개의 유지로 되었다. 당시 유지의 개설을 위한 계획, 토지 수용, 공사 과정은 전시기의 분위기를 반영하여 상당히 억압적이었을 것이다. 농지를 수용함에 따른 보상도 없었다고 보인다. 수용된 39필지의 소유자 명의를 아무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유지의 관리와 그에 따른 수익이 소유자의 권리이지는 않았다.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 가운데는 4명의 부재지주가 있었다. 거주지를 달리하는 소유자 간에 긴밀한 협의와 조직이 성립하기는 힘들었다. 유지는 사실상 國公有로서 이용되고 관리되었다.

유지는 美軍政期인 1947년에 다시 크게 확충되었다. 이 때 31필지의 농지가 추가로 수용되었다. 평리에는 원래부터 1,454명의 유지가 있었다. 이 때에 이르러 주변의 18필지가 수용되어 면적이 4배나 넓어졌다(오늘날의 황감2지). 나머지 13필지는 다개리의 다개동뫓의 확장을 위해 수용되었다. 수용된 농지의 명의를 변경되지 않아 수용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이전과 마찬가지로이다. 미군정의 원조로 시행된 이 저수지 공사는 이미 이전의 전시기에 그 계획이 마련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28) 『東亞日報』 1939년 9월 28일.

렇지 않고서는 해방 후의 격심한 정치적 혼란기에 상당한 준비와 행정력을 요하는 土木工事が 착수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요컨대 20세기 전반 언양면의 수리 사정에서 불만한 변화는 뒤늦게도 1944년과 1947년이 되어서였다. 1938년까지 3만 8,000여 평에 머물던 유지의 면적은 1944년에 5만여 평, 1947년까지 6만 3,000여 평으로 대폭 확충되었다. 그에 따른 수리 개선의 효과는 적지 않았다. 1930년대까지의 변화는 미미하였다. 일정기 언양면의 소농 경영이 그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었던 것은 수리의 개선에 의해서가 아니라 후술하듯이 地主制를 견제한 사회운동과 사회정책, 그리고 彦陽場을 무대로 한 상공업의 발전에 따른 종합적 효과에 의해서였다.

4.6. 소작쟁의와 농민조합운동

언양면에서 小作爭議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제기된 것은 1931년 11월이 처음이다. 通道寺소작인의 대표 8명이 통도사를 방문하여 4개 조건의 개선을 강경하게 요구하였다. 첫째는 定額 小作料를 매년 생산고에 비례하는 定率 소작료로 바꾸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도사는 예산 관계 상 들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둘째는 소작인이 소작료를 통도사까지 운반한 종래의 제도를 폐지하고, 10리 이내는 소작인이 無賃으로 운반하되, 10리를 초과할 경우 통도사가 5리에 10전씩 運賃을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 통도사는 동의하였다. 셋째 종래 地稅의 절반을 소작인이 부담했는데, 이를 통도사가 전부 부담하라는 것이다. 그에 대해서도 통도사는 동의하였다. 넷째는 鷲山 農業獎勵會를 설립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에 대해 통도사는 보류하겠다고 하였다.⁽²⁹⁾ 취산농업장려회가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통도사는 언양면에 5만 2,000여 평을 소유한 제1의 지주이다. 다수 소작인의 부담을 경감한 이 사건이 언양 지역사회에 미친 충격은 적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당시 통도사와의 교섭을 주도한 인물은 申周極인데, 본명은 申學業(1901~1975)이다. 신학업은 1901년 언양면 남부리에서 출생했으며, 1917년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다. 1918년 일본으로 유학하여 慶應大學 商科 夜學部에 입학했으나, 1919년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퇴학을 당하였다. 아마 동경에서 있었던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사건에 관련되었을 것이다. 동년 10월 신학업은 上海로 건너가 臨時政府와 접촉

(29) 『東亞日報』 1931년 11월 21일.

한 뒤 귀국하였다. 여타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울산군에서도 3·1운동은 사회·문화의 계몽운동에서 있어서 일대 획기를 이루었다. 울산군 도처에서 다수의 私學과 夜學이 발흥했으며, 청년단체가 조직되었다. 언양에서는 彦陽青年會가 조직되었다. 언양청년회는 각지의 유학생을 망라하여 巡廻 講演會를 열었다. 1921년 8월의 순회 강연회에는 신학업이 연사로 참가하였다. 이로 미루건대 상해에 머물던 신학업이 귀국한 것은 동년 8월 이전이었다. 이후 그는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東京正則英語學院에 입학했으나 1923년 7월에 귀국하였다. 그는 한 동안 京城에 머물렀으며, 고향에 돌아와 사회운동가로 활동하는 것은 1927년 또는 1928년 이후였다.⁽³⁰⁾

그 사이 언양의 사회운동을 주도한 것은 언양청년회였다. 동 청년회는 순회 강연회를 개최하고, 新派 연극을 공연하고, 少年團을 조직하여 雄辯大會와 歌劇會를 열고, 勞動夜學과 婦人夜學을 개설하였다. 언양청년회의 활동은 1924년에 가장 활발했는데, 青年會館까지 마련하였다. 이후 청년회의 활동은 중심인물의 부재로 침체하였다. 언양의 청년운동이 다시 활성화하는 것은 1927년 하반기부터이다. 1926년의 6·10 만세사건을 계기로 1927년 2월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연합으로 新幹會가 결성되었다. 신간회는 일정기에 조선인이 조직한 가장 규모가 큰 사회운동단체였다. 신간회는 전국적으로 120~150여 지회를 두었다. 1927년 11월 울산에서 新幹會支部를 결성하기 위한 사회단체의 간담회가 열렸다. 그 때 언양의 대표로 申榮業이 참가하였는데, 그는 신학업의 형이다.

바로 그 전 달인 10월에 언양면에서는 앞서 소개한 가리야 사건이 벌어졌다. 언양 장날에 상남면의 김경도가 동부리 가리야(刈屋)의 잡화점 앞에서 숯을 팔다가 성냥을 빌리고자 했으나 거절당하였다. 이로 인해 金敬道와 가리야사이에 격투가 벌어졌으며, 가리야가 김경도의 국부를 차서 김경도가 죽었다.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알려졌으며 反日民族運動을 자극하였다. 11월 울산에서 열린 사회단체의 간담회는 신영업으로부터 가리야 사건을 보고 받고 전국적인 성토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가리야 사건은 오만한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 탄압한 사건으로 규정되었다. 이에 11월 울산청년회가 가리야 사건을 성토하는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뒤이어 경주와 동해안 지방 기자들의 단체인 慶東記者大會가 열려 가리야 사건을 규탄하였다. 12월에는 멀리 충남 唐津의 청년회에서도 이 사건을 劇團의 소재로 삼았다.⁽³¹⁾

(30) 「한국근현대인물자료」(<http://db.history.go.kr>), 『東亞日報』 1921년 8월 23일.

(31) 『東亞日報』 1927년 11월 13일, 22일, 12월 5일.

울산청년회의 대회에서는 부산 모 신문사의 사장과 기자가 성토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가리야 사건을 “대수롭잖은 어느 장날의 싸움”에 불과하다고 보도하였기 때문이다. 살인자 가리야에게 氏라든 敬稱을 붙인 것, 가리야의 이력을 소개하면서 언양의 ‘오랜 기둥’(古柱)이니 학교조합의⁽³²⁾ 관리자라 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신문은 아마도 일본인이 발행한 釜山日報였을 것이다. 울산청년회는 부산일보의 이 같은 보도를 “살인자를 공공연히 비호하는 탈선적 악덕일 뿐 아니라, 勞動階級을 멸시하고 고리대금업자 등 搾取者類의 走狗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작태”라고 규탄하였다.⁽³³⁾ 가리야 사건을 보는 조선인사회와 일본인사회의 눈은 달랐다. 어쨌든 가리야는 傷害致死罪로 체포되어 응분의 징역형을 살았다.

1927년 11월에 열린 울산 사회단체의 간담회는 울산의 청년운동을 위해 단일의 靑年同盟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1928년 5월 언양청년회를 대신하여 彦陽靑年同盟이 결성되었다. 이 때 신학업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³⁴⁾ 1928년 12월 彦陽少年會의 不穩文事件이 발생하였다. 언양소년회의 李東桂, 金東河 두 소년이 언양청년동맹의 지도를 받아 共產主義思想이 담긴 불온한 광고지를 작성하여 언양 駐在所 앞에 붙이고, 언양공립보통학교의 萬國旗에 太極旗를 그려 넣은 것이다. 두 소년은 징역 8개월을 복역하였다.⁽³⁵⁾ 이 사건의 배후에는 신학업, 신영업 형제가 주도한 언양청년동맹이 있었다. 이전의 언양청년회와 달리 언양청년동맹의 활동에는 공산주의사상이 강하게 침투했는데, 경성에서 내려온 위원장 신학업에 의해서였다.

1929년 1월 蔚山勞動夜學聯合會가 발족하였으며, 언양 방면 6개 면의 70여 야학도 참여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울산노동야학연합회의 창립대회를 금지하였다. 1929년 8월 신간회의 울산지회가 설립되었는데, 제5구 언양면·중남면 위원장에 신학업 외 2인이 취임하였다.⁽³⁶⁾ 1931년 6월에는 蔚山農民組合이 발의되었는데, 彦陽農民組合이 참가하였다. 언양농민조합이 언제 조직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신학업이 언양청년동맹의 위원장에 취임한 이후라고 짐작된다. 회원은 300여 명에 달하였다. 1931년 10월에는 彦陽夜學에 대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³⁷⁾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사회

(32) 언양에 정착한 소수 일본인을 위한 彦陽尋常小學校의 학교조합을 말한다.

(33) 『東亞日報』 1927년 11월 13일.

(34) 『東亞日報』 1929년 1월 9일.

(35) 『東亞日報』 1929년 3월 23일, 30일, 12월 19일.

(36) 『東亞日報』 1929년 1월 29일, 2월 19일, 8월 9일

(37) 『東亞日報』 1931년 6월 30일, 10월 29일.

운동에 대한 총독부의 탄압은 강도를 더하였다. 바로 그 시기에 앞에서 소개한 통도사와의 소작조건 교섭이 신학업의 주도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932년 5월 초 언양에서 檄文事件이 발생하였다.⁽³⁸⁾ 5월 13일 경찰은 신학업을 주모자로 지목하여 검거했으나 사흘 만에 석방하였다. 증거가 불충분하였던 모양이다. 신학업은 이미 경찰의 주요 감시 인물이었다. 곧이어 19일 徐鳳伊 사건이 발생하였다. 언양면 송대리의 서봉이는 부재지주 안병길의 소작지 4두락을 13년간이나 경작해 왔다. 그 해 봄 안병길의 마름 신인호가 서봉이를 해고하고 이재춘을 신 소작인으로 정하였다. 이에 서봉이와 이재춘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서봉이가 이재춘의 엄지손가락을 상하게 하였다.⁽³⁹⁾ 그 때 언양농민조합이 여기에 개입하여 약간의 소동이 있었던 모양이다. 그로 인해 서봉이는 이후 의외로 큰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었다. 서봉이는 1894년생으로서 1932년 당시 답 568평, 전 548평, 대 224평, 합 1,240평을 소유한 가난한 농민이었다.

1931년 9월에 金海郡 東上面 동아일보 지국의 기자인 崔汝鳳, 韓聖鳳과 신학업 등이 梁山郡 上西面에서 회동하여 각지에 이미 설립된 농민조합을 赤色農民組合으로 바꾸자는 계획에 합의하였다. 1932년 7월 경찰은 이들 공산주의자들이 慶南赤色農組東部委員會를 결성했다고 사건을 부풀린 다음, 이들을 治安維持法으로 구속하였다.⁽⁴⁰⁾ 그 때 언양면 송대리의 서봉이도 함께 구속되었는데, 신학업의 언양농민조합이 서봉이를 사주하여 소작쟁의를 일으켰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서봉이는 순진한 소작농임이 밝혀졌다. 그는 석방된 뒤 傷害罪로 벌금 30원을 언도 받았다. 반면 신학업 등은 2년의 징역형을 언도받고 복역하였다. 出所 이후 신학업은 사회운동을 중단하였는지 더 이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후 그는 언양의 대표적 사회운동가로 널리 기억되었다. 1937년 7월 동아일보는 울산지방을 소개하는 特別版에서 울산 문화의 역사를 회고하였다. 그 때 신학업은 3·1운동 이후 울산의 사회·문화운동을 지도한 중심인물의 하나로 거론되었다.⁽⁴¹⁾ 다소 과장되었다고 여겨지지만, 1928년 이래 그가 주도한 언양 청년동맹과 농민조합 운동이 지역 사회에 커다란 인상을 남긴 것은 사실이다.

(38) 『東亞日報』 1932년 5월 3일, 13일, 16일.

(39) 『東亞日報』 1933년 1월 29일, 3월 16일.

(40) 『東亞日報』 1932년 8월 29일, 9월 10일, 1933년 1월 29일, 3월 16일, 20일, 27일.

(41) 『東亞日報』 1937년 7월 25일.

언양면 호적에서 신학업은 형 申根業을 호주로 하는 호에 속해 있었다. 토지대장에서 신근업은 답 1,445평과 대 286평을 소유하였다. 신학업과 함께 청년동맹을 이끈 신영업을 別戶로 분가해 있었는데, 소유한 토지는 없었다. 이들 3형제의 경제적 처지는 빈한하였다. 신학업이 구속된 이후 1933년 신근업과 신영업은 경주군 경주읍으로 이사하였다. 석방된 신학업도 형을 따라 경주로 갔다. 신학업 형제는 언양 지역사회로부터 마음의 지원을 받지는 못하였다. 赤色農組 사건이 터지고 신학업이 구속되자 언양농민조합은 활기를 잃었다. 1932년 9월 언양농민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해체를 결의하였다. 경찰의 강권에 의해서였다. 뒤이어 1933년 2월까지 경남 일대의 농민조합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져 梁山, 金海, 宜寧 등지의 농민조합이 거의 해산하였다.⁽⁴²⁾ 이로써 1926년 이래 고양되었던 경남의 농민운동은 막을 내렸다.

4.7. 소작정책

이후 소작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지한 것은 역설적으로 총독부 권력이었다. 1932년 총독부는 朝鮮小作調整令을 제정하여 모든 종류의 小作爭議에 대해 지방재판소가 조정을 행하거나 판결을 내리게 하였다. 재판소의 위임을 받아 조정을 행할 기구로서는 小作委員會가 결성되었는데, 여기에는 군수와 경찰서장이 참여하였다[박섭(1997, pp.189~196)]. 1934년 총독부는 朝鮮農地令을 공포하였다. 지주계급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정된 이 법은 小作權을 제3자 新地主에 대해 대항력을 갖는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였다. 또한 지주들은 소작료 체납을 이유로 소작농을 함부로 바꿀 수 없게 되었다. 이후 소작지에 대한 소작농의 권리는 부쩍 강화되었다. 소작위원회 조정활동의 70% 이상은 소작농의 요구를 그대로 채택하였다[박섭(1997, pp.196~201)].

소작위원회의 활동은 언양면에서도 관찰되었다. 1936년 5월 태기리의 김기진이 12년간 어음리 鄭宅夏로부터 얻어 경작해 온 4두락의 소작지를 빼앗겼다. 김기진은 자신의 소유지가 전혀 없는 순소작농이었으며, 4두락의 소작지에 10여 식구의 생계를 의존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김기진은 소작령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⁴³⁾ 정확히 말해 소작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뒤이어 7월에는 통도사가 이양기에 소작인을 교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소작농은 울산군 소작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

(42) 『東亞日報』 1932년 9월 20일, 1933년 2월 14일.

(43) 『東亞日報』 1936년 5월 21일.

다.⁽⁴⁴⁾

소작농을 함부로 바꾸거나 고율 소작료를 수취하는 부작용은 주로 부재지주의 현지 대리인인 農監이나 마름(畝音)에 의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936년 6월에는 삼남면의 加藤農場에서 소작쟁의가 발생했는데, 농장의 마름 이와마(岩間)와 소작인간의 충돌이었다.⁽⁴⁵⁾ 조선농지령 이후 발생한 소작쟁의는 소작권보다 소작료를 둘러싼 것이었다. 지주나 마름은 더욱 많은 소작료를 수취하기 위해 말질이나 저울질을 부정하게 하였다. 1938년 12월 동아일보는 언양 농촌의 고율 소작료와 관련된 지주들의 횡포를 가리켜 ‘농민 대중의 옹호기관’인 농지령에 위반되는 처사라고 비난하였다.⁽⁴⁶⁾ 총독부는 어느덧 농민 대중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바뀌어 있었다. 총독부의 소작정책에 대한 농민의 기대는 컸다. 1939년의 대한밭을 맞아 언론은 다른 작물로 代播한 토지에 대해 지주들이 소작료를 수취해서는 안 된다는 논설을 펼치기도 하였다.⁽⁴⁷⁾

이 같이 소작농의 지위와 권리는 1930년대에 들어 총독부의 사회정책에 힘입어 부쩍 강화되었다. 地主制는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1940년 이후 전시기에 들어 그러한 추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농민들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이전보다는 확실히 안정적이었다. 앞서 소개한 태기리의 김기진이 12년간이나 4두락의 소작지에 10여 식구의 생계를 의존할 수 있었던 것은 畝作의 생산성이 높아진 가운데 소작료가 장기간 저렴한 수준에서 고정되었기 때문이다. 김기진이 지불한 소작료는 두락당 6.5두였는데, 이는 평균 생산고의 1/4 수준에 불과하였다. 일본으로 건너간 가족으로부터의 送金도 농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홍제한·이영훈(2008, pp.131~134)]. 彦陽場을 무대로 한 상업의 발전은 가난한 농가에 商業作物이나 家內工業과 같은 보충적 생계수단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1939년 6월 동아일보는 언양의 일반 농가가 언양장에서 비료를 구입하는데, 올해는 비료의 부족에 시달린다고 하였다.⁽⁴⁸⁾ 이처럼 언양장은 종자, 비료, 농구와 같은 농업의 중간재를 공급하였으며, 이는 농업생산성의 증가에 기여하였다.

(44) 『東亞日報』 1936년 7월 1일.

(45) 『東亞日報』 1936년 6월 10일.

(46) 『東亞日報』 1938년 12월 16일.

(47) 『東亞日報』 1939년 10월 19일.

(48) 『東亞日報』 1939년 6월 29일.

4.8. 소농사회의 안정화

일정기의 농촌경제에 관한 종래의 연구는 지주제와 총독부의 수탈로 빈곤에 찌든 農民의 群像을 전제하였다. 일본인 지주를 필두로 한 지주제의 고율 소작료는 농가의 잉여를 모조리 빼앗았다. 총독부의 增産政策은 실패하였으며, 대량의 미곡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데만 성공하였다. 농가는 고리대의 텃에 걸렸으며, 이는 농민의 全階層的 몰락을 초래하였다. 농민들은 일본, 만주로 유랑하였다. 貧農은 도시의 노동자와 함께 민족해방과 사회주의혁명의 주력을 형성하였다. 1920년대 이래 농민들은 농민조합을 결성하고 활발한 소작쟁의로 지주계급과 총독부에 저항하였다. 농민운동은 점차 혁명적인 赤色農民組合運動으로 발전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 농민운동은 총독부 경찰의 극악한 탄압을 받았다. 혁명적 농민조직은 지하로 잠복하였으며, 해방을 기다려 다시 활성화하였다.

각종 역사책에서 흔하게 찾아지는 이 같은 농촌경제의 이미지는 과도하게 정치화한 것이다. 지주는 수탈만을 일삼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지주제 자체가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없다. 지주제는 지대 수입의 안정적 증가를 위해 종자, 비료, 식료, 수리, 토지개량과 같은 여러 생산조건을 확보,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 결과 농가경제는 오히려 안정될 수 있다. 全北의 평야부에 건립된 일본인 농장의 小作人村은 주변의 촌락에 비해 여러 모로 안정적이었다. 총독부의 증산정책은 1920년대 후반의 혼란기를 제외한다면 대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대량의 인구가 일본과 만주로 빠져 나간 것은 오랫동안 적체해 온 農村過剩人口의 해소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인구의 대량 유출은 농촌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농가의 전 계층적 몰락은 사실이 아니다. 총독부 企劃部の 조사에 의하면, 1922~1938년에 900평 이하를 경작한 영세 농가의 수는 63만에서 48만으로 감소하였다. 9,000평 이상을 경작한 대규모 농가의 수는 28만에서 17만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900~3,000평의 소규모 농가가 85만에서 132만으로, 3,000~9,000평의 중규모 농가가 67만에서 87만으로 증가하였다. 900~3,000평의 증가는 주로 남부지방에서, 3,000~9,000평의 증가는 주로 북부지방에서였다[朝鮮總督府企劃部(1941)]. 이 같은 농가의 계층분화는 ‘小農의 標準化’라 할만 것이었다. 그것은 작은 토지에 다량의 勞動과 肥料를 투하하여 고생산성을 추구하는 多勞多肥的 小農農業의 발전이었다. 일정기의 농업생산력은 17~19세기 소농농법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경로에[李榮薰(1988, pp.497~559)] 충실하였다.

일정기 언양면의 소농경제가 어떤 길을 걸었는지를 개별 농가의 수준에서 관찰한 자료는 없다. 앞서 설명했듯이 언양면에서는 自作農 내지 自小作農이 농민의 지배적 범주를 이루었다. 지주제의 발달은 제한적이었다. 대량의 인구가 일본으로 유출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 총독부의 소작정책은 친농민적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언양면에서 수리의 개발은 오래 전에 나름의 완성을 보았으며, 일정기에 걸쳐 뚜렷한 개선은 없었다. 그렇지만 종자의 개량, 비료의 보급, 노동의 증투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제고는 다른 지방과 다를 바 없었을 터이다. 이 같은 제반 환경의 개선에 힘입어 언양면의 소농경제는 일정기에 걸쳐 안정화의 추세를 밟았다고 여겨진다.

〈표 14〉는 1912~1952년에 걸친 언양면 茶開里와 直洞里 주민의 姓貫別 戶數의 추이다. 1912년 다개리 주민 122호는 30개 성관으로 구성되었다. 慶州 李氏를 비롯하여 7호 이상의 7개 성관이 전 122호 가운데 78호의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 이하 3~5호가 5개 성관, 1~2호가 18개 성관이다. 1~2호의 영세 규모는 친족집단을 구성했다고 간주하기 힘든 경우이다. 이후 1952년까지 다개리의 호수는 148호로 증가하였다. 성관별 증감은 한결 같지 않았다. 淸州 韓氏와 南陽 洪氏는 1912년의 13호에서 1952년의 21호와 23호로 族勢를 늘렸다. 羅州 林氏는 3호에서 8호로, 全州 李氏는 2호에서 7호로 크게 불었다. 반면 密陽 朴氏는 8호에서 4호로 위축되었다. 1952년까지 다개리에서 모습을 감춘 성관은 金寧 金氏를 비롯한 5개 성관이다. 대조적으로 다개리로 유입한 성관은 草溪 邊氏를 비롯한 5개 성관이다.

다개리가 언양면 북단의 고현산 자락에 놓인 반면, 직동리는 언양면의 중심인 서부리, 남부리와 인접하였다. 이 같은 지리적 조건에서 직동리의 호수는 1912년의 107호에서 1952년의 140호로 보다 많이 증가하였다. 1912년 주민의 성관별 구성도 다개리보다 다양하였다. 직동리에서 7호 이상의 지배적 성관은 慶州 金氏를 필두로 한 5개 성관이다. 여기서도 40년간 성관별 동향은 한결 같지 않았다. 가장 지배적인 경주 김씨가 17호에서 26호로 늘어났으며, 이하 밀양 박씨와 금녕 김씨의 신장이 두드러져 보인다. 7개 성관이 소멸한 반면, 7개 성관이 新入하였다. 이 같은 다개리, 직동리 주민의 성관별 구성의 변동은 나머지 리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일일이 다 소개하지 않겠다.

20세기 전반에 걸친 이 같은 성관별 구성의 변동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때 확실히 안정적이었다. 18~19세기 농가의 재생산구조는 낮은 수준의 농업생산력, 왕조의 稅와 役 수취, 班常의 신분 차별에 규정되어 전반적으로 불안정하였다. 〈표15〉는 1711,

〈표 14〉 언양면 茶開里와 直洞里의 姓貫別 戶數의 추이

茶開里							直洞里						
	本貫 姓	1912	1922	1932	1942	1952		本貫 姓	1912	1922	1932	1942	1952
1	慶州 李	18	18	18	17	17	1	慶州 金	17	20	22	24	26
2	淸州 韓	13	18	17	21	21	2	慶州 卞	13	10	9	12	14
3	南陽 洪	13	14	14	19	23	3	密陽 朴	8	13	13	14	15
4	慶州 金	10	13	11	10	10	4	金海 金	7	10	13	11	10
5	慶州 崔	9	9	11	10	10	5	慶州 李	7	6	8	9	11
6	密陽 朴	8	7	4	4	4	6	金寧 金	6	7	9	9	12
7	金海 金	7	10	11	10	9	7	坡平 尹	6	6	7	9	9
8	安東 權	5	6	5	6	6	8	海州 吳	3	5	6	4	4
9	金海 許	4	3	3	3	2	9	寧越 嚴	3	4	3	3	3
10	仁同 張	3	4	3	3	3	10	達成 徐	3	3	4	3	3
11	羅州 林	3	2	2	6	8	11	驪陽 陳	3	3	3	3	3
12	金寧 金	3	1	1	0	0	12	東萊 鄭	3	2	2	2	2
13	全州 李	2	3	6	7	7	13	慶州 孫	2	3	3	3	3
14	曲阜 孔	2	2	2	1	1	14	廣州 安	2	2	2	1	1
15	寧越 嚴	2	2	2	3	3	15	延日 鄭	2	2	1	0	0
16	延日 鄭	2	2	2	2	2	16	廣州 金	2	1	2	2	2
17	淸州 楊	2	2	2	1	1	17	英陽 千	2	1	2	1	1
18	慶山 全	2	1	1	1	1	18	江陵 金	2	1	0	0	0
19	青松 沈	2	0	0	0	0	19	淸安 李	1	3	3	3	3
20	永川 黃	2	0	0	0	0	20	咸安 趙	1	2	2	2	2
21	東萊 鄭	1	1	1	2	4	21	青松 沈	1	1	2	2	2
22	平山 申	1	1	2	2	1	22	水原 白	1	1	1	1	1
23	咸安 趙	1	1	1	1	1	23	高靈 申	1	1	1	1	1
24	慶州 鄭	1	1	1	1	1	24	安東 金	1	1	1	1	1
25	驪州 李	1	1	1	1	1	25	順興 安	1	1	1	1	1
26	星州 裴	1	1	1	1	1	26	星州 裴	1	1	1	1	1
27	達成 徐	1	1	1	1	1	27	平康 蔡	1	1	1	1	1
28	晉州 姜	1	1	0	1	1	28	淳昌 薛	1	1	1	1	1
29	慶州 全	1	1	0	0	0	29	安東 權	1	1	1	0	1
30	恩津 宋	1	1	0	0	0	30	仁同 張	1	1	1	0	0
31	草溪 邊	0	0	1	2	4	31	鶴城 朴	1	1	1	0	0
32	月城 金	0	0	1	1	1	32	南平 文	1	1	0	0	0
33	坡坪 尹	0	0	1	1	1	33	淸州 韓	1	0	0	0	0
34	新安 朱	0	0	0	1	1	34	咸昌 金	1	0	0	0	0
35	水原 白	0	0	0	0	2	35	全州 李	0	1	2	2	2
							36	蔚山 金	0	1	1	1	1
							37	濟州 高	0	1	0	0	0
							38	醴泉 林	0	1	0	0	0
							39	(不明) 金	0	0	1	1	1
							40	文化 柳	0	0	0	0	1
							41	光州 魯	0	0	0	0	1
	合	122	127	126	139	148	合	107	120	130	128	140	

자료: 『彦陽面除籍簿』.

〈표 15〉 彦陽縣 戶籍에 있어서 主戶의 변동(1708~1861)

	1708~1711년	1774~1777년	1795~1798년	1810~1813년	1858~1861년
前式年 戶總	1,351	1,213	1,224	1,224	1,224
移去·逃亡·絶戶 戶	276	99	175	113	87
加現戶	157	101	175	113	87
今式年 戶總	1,232	1,215	1,224	1,224	1,224

자료: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上)·(下), 『慶尙道彦陽縣丁西式戶籍大帳』.

1777, 1798, 1813, 1861년 언양현 호적의 卷末 集計部에서 보는 각 시기별 언양현 戶總의 변동 상황이다.⁽⁴⁹⁾ 前式年은 각 연도의 3년 전을, 今式年은 위의 각 연도를 말한다. 1708~1711년의 경우 1,351호 가운데 276호, 무려 20.4%가 移去, 逃亡, 絶戶를 하였다. 이렇게 3년 안에 호적에서 사라지는 호의 비중은 1774~1777년에는 8.1%, 1795~1798년에는 14.3%, 1810~1813년에는 9.2%, 1858~1861년에는 7.1%이다. 호적에서 호의 이동은 그 자체로 농가의 전체적 이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후술하겠지만, 호적에 등록되는 호는 主戶라 하여 농가 가운데 상대적으로 부유한 상층부를 이루었다. 그 계층에서 시기별로 상이하지만 위와 같은 변동률을 보인 것은 농가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했음을 이야기함에 이의가 없다. 예컨대 3년간의 이동률이 평균 10%라면, 단순화할 때, 30년이 지나면 모든 농가가 이동해 버리는 결과가 된다.

실제로 18~19세기 대부분의 농가는 當代에 다른 面으로 이동함이 보통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경상도 丹城縣 法勿野面의 호적에서 확인하였다. 1717년 범물야면의 호적에 등록된 368호가 이후 동 호적에서 家系를 이은 기간은 평균 42년이다. 신분별로 차이가 있어서 양반 신분의 가계는 평균 78년, 상민 신분의 가계는 평균 30년 전후이다. 이에 1717년의 368호 가운데 1825년까지 존속한 가계는 45호에 불과하였다. 이후 19세기에 들어 농가의 이동성은 더욱 심해졌다. 1825년 동 범물야면의 호적에 등록된 567호가 이후 동면에서 가계를 유지한 기간은 평균 22년이었다. 이에 1882년까지 성공적으로 존속한 가계는 567호 가운데 59호에 불과하였다[이영훈·조

(49) 1711, 1798, 1813, 1861년 호적은 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가 1989년에 영인, 보급한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上)·(下)에 포함되어 있다. 1777년 호적 『慶尙道彦陽縣丁西式戶籍大帳』은 孫淑景·李勛相 編著, 『朝鮮後期 彦陽의 鄉班 昌寧 成氏 家門과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釜山教會史研究所, 1999)에 실려 있다.

〈표 16〉 彦陽縣 中北面 茶開里와 機池里 主戶의 姓貫別 구성(1711~1861)

	1711~1777		1777~1798		1798~1861	
	存續	脫落	存續	脫落	存續	脫落
茶開里	慶州 劉 7 慶州 金 3 慶州 李 3 慶州 朴 2 達城 徐 2 慶州 崔 1	金海 金 6 青山 吳 2 東萊 鄭 1 礪山 宋 1 載寧 李 1 坡平 尹 1	慶州 李 5 淸州 韓 4 慶州 金 3 慶州 崔 2 慶州 朴 1 密陽 朴 1	礪山 宋 2 慶州 孫 1 慶州 安 1 慶州 劉 1 達城 徐 1 星州 李 1 安東 金 1 玉川 薛 1 青松 沈 1	淸州 韓 8 慶州 金 3 慶州 李 3 慶州 崔 3 金海 金 2 東萊 鄭 1 密陽 朴 1 安東 權 1	慶州 朴 2 南平 文 1 延安 宋 1 昌原 黃 1
機池里 (直洞里)	金海 金 6 密陽 朴 4 東萊 鄭 3 慶州 李 1 慶州 崔 1 青松 沈 1	安東 崔 7 玄風 郭 3 長鬐 吳 2 晉州 李 2 慶州 林 1 仁同 張 1 坡平 尹 1 陝川 李 1	金海 金 12 慶州 崔 7 密陽 朴 5 慶州 金 2 慶州 李 2 青松 沈 2 達城 徐 1 靈山 辛 1 忠州 石 1	慶州 朴 1 東萊 鄭 1 豐川 任 1 鶴城 李 1 海州 吳 1	金海 金 10 慶州 金 5 慶州 崔 5 慶州 李 2 靈山 辛 2 曲阜 孔 1 南陽 洪 1 青松 沈 1 達城 徐 1	密陽 朴 7 慶山 全 1 南陽 金 1 安東 金 1 忠州 石 1 坡平 尹 1

자료: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上)·(下), 『慶尙道彦陽縣丁酉式戶籍大帳』.

영준(2005, pp.3~25)].

개별 농가의 높은 유동성은 친족집단의 빈번한 興亡盛衰로 나타났다. 경상도 大丘府 月背 지역의 호적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1690~1858년에 걸쳐 長期存續에 성공한 친족집단은 11개, 소멸한 친족집단은 11개, 거의 소멸 중인 친족집단은 4개였다. 번성하여 지역의 지배적 세력으로 올라선 친족집단은 3개였다[嶋陸奧彦(2010, pp.200~201)]. 친족집단의 이 같은 유동성은 언양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표 16〉은 1711, 1777, 1798, 1861년의 언양현 中北面 호적에서 茶開里와 機池里 주호의 姓貫別 구성을 제시한 것이다. 〈표 1〉에서 보듯이 기지리는 이후 직동리로 바뀌었으며, 1912년 이후는 直洞里와 台機里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표 16〉은 〈표 14〉의 18~19세기 前史에 해당하는 셈이다. ‘存續’은 어느 주호가 이전 호적과 이후 호적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며, ‘脫落’은 그렇지 못한 경우이다. 제시된 숫자는 이전 호적

상의 戶數를 말한다. 이후 호적 상의 호수는 제시되지 않았다. 예컨대 1711년 다개리의 慶州 劉氏는 7호였는데, 1777년의 호적에도 주호로 등록되어 ‘존속’으로 분류되었다. 반면 1711년 다개리의 金海 金氏 6호는 1777년 호적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아 ‘탈락’으로 분류되었다.

1711년 다개리에 거주한 성관은 12개인데, 그 중에 6개가 1777년까지 ‘존속’이고 나머지는 ‘탈락’이다. 기지리의 14개 성관 중에는 6개가 ‘존속’이고 8개가 ‘탈락’이다. 두 리를 합하여 1711년 26개 성관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개가 ‘탈락’이다. 그 가운데는 호수가 3~7개인 성관, 곧 성씨집단을 이루었다고 간주되는 성관이 3개이다. 1777~1798년의 경우도 대개 마찬가지이다. 도합 29개 성관 가운데 14개가 ‘탈락’에 속하였다. 이 같은 성관별 이동의 양상은 위에서 소개한 다른 군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18세기 언양의 농가경제가 결코 안정적이지 못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성씨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1717년 다개리의 경주 유씨 7호는 1777년에는 1호에 불과했으며, 1798년까지 소멸하였다. 다개리에서 족세를 불림에 성공한 성씨집단은 1777년 그 모습을 드러낸 청주 한씨 정도였다. 청주 한씨는 1777년의 4호에서 1798년의 8호로 증가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 1861년까지는 ‘탈락’의 수가 이전보다 줄어 농가경제가 좀 더 안정되었다고 보인다. 그렇지만 기지리에서 밀양 박씨 7호가 소멸하였듯이 여전히 성씨집단의 유지가 쉽지 않음은 이전과 마찬가지였다.

18~19세기 농촌사회가 양반 신분의 동성 친족집단을 기초 단위로 하여 안정적 구성을 이루었다는 역사학자들이 공유해 온 통념은 과장된 것이다. 친족집단은 형성되는 도중이었으며, 그것이 특별한 속도로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20세기였을 것이다. 어쨌든 <표 14>에서 보는 20세기 다개리와 직동리 주민의 성관별 구성의 안정성과 집단 형성의 경향성은 18~19세기는 그리 뚜렷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조선의 小農社會는 20세기 전반의 일정기에 안정화하였다. 눈에 띄는 대로 편하게 소묘하다 보니 이 글은 기존의 오랜 통념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앞서 여러 가지를 열거였다. 유서 깊은 산간부 도작지대라는 생태환경, 대량의 인구유출, 그를 통한 농촌과잉인구의 해소, 총독부의 친농민적 소작정책, 그리고 상술하지는 않았지만 多勞多肥의 小農農法の 성숙 등등이다. 이하 두 가지를 추가한다. 이 두 가지가 더 중요했는지 모른다. 하나는 彦陽場을 중심으로 한 상업경제의 발전이고, 다른 하나는 本籍制와 戶主制를 축으로 한 家族의 성립이다.

5. 새로운 물결

5.1. 1910년대의 언양장

언양면 남부리 일대에서 언제부터 닷새마다 場市가 열리기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것이 문헌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은 1770년의 『增補文獻備考』에서이다. 명칭은 邑內場이라 했으며, 매 2일과 7일에 열렸다. 그 다음은 徐有渠의 『林園經濟誌』 「倪圭志」에서인데, 대략 1830년대로 보인다. 역시 읍내장이라 했으며, 市日은 역시 2일과 7일이었다. 서유구는 유익하게도 장시의 주요 거래 물목을 소개하였다. 쌀(米), 콩(豆), 보리(粳麥), 참깨(脂麻), 차조기(水蘇), 면포(綿布), 마포(麻布), 소금(鹽), 당귀(當歸), 도라지(桔萹), 석류(石榴), 고사리(薇蕨), 지치(紫艸), 담배(烟艸), 왕골자리(莞席), 유기(鋤器), 농기(農器), 꿩(雉), 닭(鷄), 소(牛犢) 등이다. 그 다음의 문헌은 1914년의 『朝鮮地志資料』인데, 장시의 이름이 彦陽場으로 바뀌어져 있다. 구 언양군이 울산군에 통합된 소치로 보인다. 이 자료는 언양장의 연간 거래액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후 언양장의 연간 거래액을 제시한 문헌으로서는 1925년의 『慶尙南道統計年報』와 1938년의 『朝鮮の市場經濟』를 들 수 있다. 1914년과 1938년의 두 문헌에 나타난 울산군 내 장시들의 주요 정보는 <표 17>과 같다.

1914년 울산군에는 언양장을 포함하여 6개 장시가 있었다.⁽⁵⁰⁾ 언양장을 제외한 5개 장시는 모두 바닷가로 치우쳐 있다. 언양장은 내륙부에 위치한 유일한 장시로서 근방 6개 면(상북, 중남, 삼동, 두서, 두동, 범서)에서 경쟁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울산군 6개 장시에서 시장규모가 가장 작았다. 언양장의 연간 거래액은 3,253원에 불과하였다. 개시일이 연간 70회라면, 1시일당 거래액은 40~50원이다. 그에 비해 울산군 중심에 위치한 邑內場(이후 蔚山場)은 연간 거래액이 6만 4,000여 원으로서 언양장의 20배나 되었다. 언양장은 궁벽한 산촌의 凋殘하기 그지없는 시장이었다.

1910년대 언양의 경제에 관해서는 1911년 총독부 農商工部가 행한 ‘釜山方面商工業調査’에서 유익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언양의 경제를 가장 심각하게 제약한 것은 열악한 교통사정이었다. 그에 관해서는 앞에서 이미 소개하였다. 언양에서 울산 방면 20km에 관해서만 다시 소개하면, 도중에 고개가 돌이고 하천이 여섯인데, 도로가 평탄하지만 橋梁이 전혀 없어서 하루아침의 비에도 며칠 간 교통이 두절되었다. 주요

(50) 1915년판 『慶尙南道道勢要覽』에 의하면 울산군의 장시는 11기이다.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 『朝鮮地志資料』의 6기는 개략적인 조사의 결과로 보인다.

〈표 17〉 蔚山郡의 場市(1914, 1938)

	名稱	所在地	開市日	1個年去來額
1914年	邑內	蔚山邑	5·10	64,694
	兵營	下廂面 南外里	3·8	10,212
	南倉	溫陽面	3·8	8,848
	內廂	下廂面 伴鷗里	1·6	8,239
	目島	溫山面	4·9	5,275
	彦陽	彦陽面	2·7	3,253
1938年	蔚山	蔚山邑	5·10	935,020
	彦陽	彦陽面	2·7	448,175
	德下	靑良面	2·7	426,000
	目島	溫山面	4·9	217,300
	南倉	溫陽面	3·8	94,500
	方魚津常設	方魚津邑	매일	86,323
	仁甫	斗西面	1·6	81,000
	禾山	西生面 禾山里	1·6	77,700
	兵營	下廂面	3·8	57,500
	虎溪	農所面	1·6	38,395
	新岩	西生面 新岩里	2·7	33,100
	西生	西生面 西生里	5·10	26,300
	古沙	大峴面	1·6	24,608
	大福	熊村面	1·6	23,100
	亭子	江東面	2·7	18,450
	方魚津	方魚津邑	매일	4,300

자료: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1918).

文定昌(1938, pp.276~277).

운반 수단은 소, 말, 사람의 등짐이고, 수레는 아직 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1904년 이 일대를 통과한 일본인들은 울산에서 밀양까지 소금 20斗를 등에 지고 험한 고개를 넘는 상인의 모습에 感服하였다. 소금의 무게는 75kg이나 되었다. 소금의 원가는 1斗에 엽전 1兩이며, 밀양장에서 팔면 利文이 1량이라고 하였다[三成文一郎·有働良夫(1905, p.78)]. 교통사정의 열악함이 지역 간 화물의 유통을 제약하고, 그에 따라 단위 거래의 수익률이 턱없이 높았던 당시 농촌시장의 실태를 전하는 사례이다. 1911년 4월 郵便取扱所가 언양면에 개설되었다.⁽⁵¹⁾ 그렇지만 우편물의 발송은 隔日 또는

(51)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4월 26일.

隔數日이고, 소포의 발송은 勿禁驛이나 울산우편취급소에 가야 할 수 있고, 郵便換도 역시 그러하여 불편하였다[朝鮮總督府農商工部(1911, p.158쪽)].

언양의 공업에 관해서는 鑰器製造業 5호가 조사 대상으로서 유일하였다. 創業 시기는 불분명하나 父祖 이래로 경영해 왔다고 하였다. 연간 제조액은 분명치 않았다. 작업일은 1개월에 약 15일인데, 정해진 날은 없고 정월의 보름간을 제외하고 거래 상황에 따라 임시로 휴업하였다. 생산규모는 작업장 당 主人과 補助員 2인으로써 하루에 5組(15個)를 제작하는 정도였다. 원료와 鑄型은 東萊 方面에서 들어오고, 작업장은 좁고 불완전하지만 鎔鑛을 비롯한 제반 설비는 갖추어져 있었다. 제품은 언양장에 반출되었으며, 판매 구역은 울산군과 인접 군이었다[朝鮮總督府農商工部(1911, p.158~159)].

언양장에서 타지로 반출되는 주요 화물은 精米, 玄米, 大豆, 麥, 木炭, 牛였다. 언양장은 소를 거래하는 牛市場도 겸하였다. 연간 반출량은 정미가 6,380개, 현미가 2,350개, 대두가 1,632개, 맥이 3,772개, 목탄이 2,304개, 소가 712두이다. 각각의 價額은 알 수 없으나 정미, 현미, 맥 등의 곡류가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험한 산으로 둘러싸인 지대라 목탄의 반출도 적지 않았다. 산중 도처에 숯가마가 있었다. 주요 搬出先은 울산 方面인데, 소만큼은 동래 方面이었다. 반입된 주요 화물은 소금, 사탕, 정미, 鹽魚, 生魚인데, 搬入先은 모두 울산이었다. 연간 반입량은 소금이 8,902개, 사탕이 3,200근, 정미가 2,710개, 염어 126관이었다. 언양장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서 客主나 居間이 없으며, 찾아오는 裸負商의 대열도 없었다. 거래의 방식은 대개 1市(5일간) 혹은 2市(10일간)의 신용거래이며, 그 사이의 이자는 붙지 않았다. 화폐는 銀行券과 新補助貨를 주고받기는 하지만 절반 정도는 여전히 古葉錢이며, 於音이나 다른 유통수단은 없었다[朝鮮總督府農商工部(1911, p.159~160)].

언양의 특산물로서 이후에 유명해진 미나리는 아직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였다. 1911년의 조사는 언양에서 특용작물로 미나리가 산출되지만 부근 주민의 식료에 이바지할 뿐, 타군으로 이출은 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1911년의 조사에서 언양의 특산물로 조사된 것은 紫水晶이다. 연간 120貫이 채취되며, 생산액은 약 1,000원이었다. 근년에 일본 야마나시(山梨)현으로 이출되어 가락지나 커피스단추로 가공되는데, 교통이 불편하여 반출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하였다. 그 외에 砂金이 생산되어 이미 採取權을 취득한 사람이 있지만, 아직 채취의 설비를 갖춘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朝鮮總督府農商工部(1911, p.160)].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1911년 3월, 1912

년 9월, 1913년 10월에 총독부로부터 사금광 채취업의 허가를 취득하는 일본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黃金慾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1911년 3월 최초로 허가를 취득한 다카기(高木つね)는 1913년 10월에 廢業 신고를 하였다.⁽⁵²⁾

5.2. 조잔한 상공업자들

18~19세기 남부 지방에서 5일마다 열리는 장시는 대개 반경 6~7km를 圈域으로 하였다. 장시에서는 한 달에 2~3회 출시하는 소농들 간의 單純商品去來가 이루어졌다. 소농들은 가정의 잉여생산물을 장시에 내다 팔고, 비자급 필수품을 구매하였다. 거래는 소농 상호간의 物物交換인 경우가 많았다.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생활재료의 취득은 상인과의 거래를 통해서였다. 상인들은 지역의 잉여산품을 다른 지역으로 반출했으며, 지역의 비자급 필수품을 다른 지역에서 반입하였다. 상인들의 존재형태는 몇 개의 장시를 巡廻하는 行商이었다. 상업적 수요가 희박하여 定住商人의 점포는 19세기 말까지 성립하지 않았다. 전통 장시는 소농과 행상으로 구성되었다.

앞의 <표 10>을 다시 보면, 언양장이 열린 구 上北面의 세대 총수는 954이며, 그들의 직업구성은 농업 693, 상업 151, 공업 3, 日稼 40, 무직 17, 기타 33이다. 이 가운데 농업을 제외한 244세대의 대부분이 언양장을 무대로 생계를 꾸린 商工業者나 賃勞動者였다. 전 세대에서 상업호의 비중이 16.0%나 되어서 언양장에서 상업이 번창했다는 인상을 받기 쉽지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소개하였듯이 1914년 울산군에서 가장 번창한 장시는 읍내장이었다. 1910년 그 읍내장이 위치한 구 울산군 上府面의 상업호는 235이다. 언양장의 연간 거래규모는 읍내장의 1/20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언양장의 상업호는 읍내장의 235에 비해 그리 적지 않은 151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언양장 상인의 존재형태와 관련해서는 언양면의 제적부와 토지대장으로부터 유익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농촌의 基層市場에서 활동한 상인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이만큼 자세한 정보가 알려진 적이 없다. 1910년에 조제된 최초의 호적은 戶主의 직업을 欄外에다 임의적으로 기재하였다. 구 상북면 954호의 호적은 현재 언양읍사무소에 전하는 除籍簿에서 그 전부가 복구되지 않는다. 초창기 호적 행정의 부실로 인해 1915~1922년의 제적부가 많이 망실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최초의 954호 가운데

(52) 『朝鮮總督府官報』 1911년 3월 39일, 1912년 9월 28일, 1913년 10월 2일, 10월 9일.

483호의 호적만이 현재의 제적부에서 복구될 뿐이다. 그 가운데 농업 이외의 직업에 종사한 세대는 80호이다. <표 18>은 그들에 관해 호적과 토지대장이 제공하는 주요 정보이다.

<표 18> 1910年代 彦陽面의 非農業戶 一覽

	職業	居住里	姓名	出生年度	除籍年度	除籍事由	轉出지	所有地
1	總督府 郡書記	東部里	홍재하	1886	1912	死亡1		없음
2	郡衙 書記	南部里	김보원	1871	1911	轉出	斗北面	없음
3	醫師	西部里	박시훈	1871	1913	死亡1		畚 1,514평, 田 209평 垓 102평
4	醫師	松臺里	이규중	1870	1911	轉出	上北面	없음
5	代書業 (農業)	南部里	신형식	1889	1914	轉出	蔚山邑	垓 88평
6	鎗器商	路東里	김문이	1867	1913	轉出		垓 37평
7	鎗器商	南部里	강우문	1857	1913	轉出	中南面	垓 65평
8	鎗器商	南部里	조명수	1878	1912	轉出	三同面	없음
9	鎗器商	南部里	박제현	1869	1911	轉出	靑良面	없음
10	鎗器商	南部里	로광택	1880	1915	轉出 死亡	上北面	垓 35평
11	陶器商	於音里	김중수	1848	1913	轉出	中南面	畚 156평, 田 128평 垓 111평
12	油商	南部里	문구불	1873	1913	死亡2		垓 27평
13	魚商	東部里	륙해동	1853	1911	轉出	釜山府	없음
14	魚商	路東里	최갑출	1869	1912	轉出	上北面	없음
15	魚商	南部里	천갑이	1863	1912	轉出	凡西面	없음
16	魚商	南部里	김일기	1851	1914	轉出 死亡	上北面	垓 40평
17	鹽商	南部里	김학선	1865	1912	轉出	中南面	없음
18	鹽商	於音里	서성근	1846	1912	死亡2		垓 45평
19	鹽商	盤松里	조룡발	1868	1914	死亡2		田 1,026평, 垓 103평
20	鹽商	盤湖里	량유권	1863	1913	死亡1		畚 314평, 田 741평
21	錦商	西部里	최춘명	1881	1913	廢家		없음
22	白木商 兼農業	路東里	이복도	1871	1912	轉出	中南面	없음

〈표 18〉 계속

	職業	居住里	姓名	出生年度	除籍年度	除籍事由	轉出지	所有地
23	煙竹商	南部里	손익모	1870	1911	轉出 廢家	熊下面	없음
24	煙草商	南部里	최봉규	1848	1912	死亡2		垆 60평
25	草履商	西部里	김춘성 하우수	1836 1848	1914	死亡 轉出	東萊郡	垆 20평
26	雜貨商	東部里	남정양	1842	1915	轉出 死亡		垆 29평
27	雜貨商	南部里	한덕모	1878	1914	轉出 死亡	上北面	垆 24평
28	雜貨商	西部里	김기화	1840	1915	轉出 死亡	上北面	없음
29	屠畜業	南部里	이윤이	1871	1913	轉出	慶北 慶州郡	垆 94평
30	屠畜業	南部里	조도선	1852	1912	死亡2		없음
31	屠畜業	南部里	이정술	1849	1913	轉出	梁山郡	垆 31평
32	旅人宿	西部里	김재원	1862	?	廢家		없음
33	旅人宿	南部里	이태운	1854	1912	轉出	慶北 永川郡	없음
34	旅人宿	盤松里	김교홍	1862	1912	死亡2		田 89평
35	飲食店	南部里	김반식	1834	1912	逃亡		없음
36	飲食店	西部里	방갑술	1874	1912	廢家		없음
37	飲食店	路東里	공재봉	1901	1912	廢家		없음
38	飲食店	南部里	이갑이	1870	1913	轉出 廢家	中南面	없음
39	飲食店	南部里	김상임 김복수	1851 ?	1912 1913	死亡 轉出	東萊郡	없음
40	飲食店	南部里	이사문	?	1912	逃亡		없음
41	飲食店	南部里	오희출	1901	?	廢家		없음
42	飲食店	泉所里	정필두	1844	1912	死亡2		田 881평, 垆 140평
43	飲食店	盤松里	한자운	1880	1914	轉出	馬山府	없음
44	飲食店	盤松里	김봉학	1883	1913	轉出	慶北 慶州郡	없음
45	飲食店	盤松里	김운식	1878	1912	轉出	凡西面	없음
46	飲食店	盤松里	박재희	1872	1914	轉出 死亡	上北面	없음
47	飲食店	盤松里	변극엽	?	1914	轉出	上北面	垆 85평
48	飲食店	西部里	윤출이	?	1914	轉出	東萊郡	없음
49	酒商	南部里	전재규	1871	1911	轉出	凡西面	없음
50	商業	盤谷里	최세명	1880	1914	轉出	三同面	垆 123평
51	商業	西部里	김화순	1876	1914	轉出	慶北 延日郡	없음
52	商業	南部里	정문숙	1852	1913	轉出	中南面	垆 65평

〈표 18〉 계속

	職業	居住里	姓名	出生年度	除籍年度	除籍事由	轉出지	所有地
53	大工	東部里	김성운	1865	1913	死亡1		垓 83평
54	馬夫	南部里	최근이	1871	1911	轉出	上北面	없음
55	日稼	西部里	오복이	1884	1913	轉出	凡西面	없음
56	日稼	西部里	박덕중	1858	1914	死亡2		없음
57	日稼	松臺里	서유근	1866	1912	轉出	慶北 鬱陵島	없음
58	日稼	松臺里	전치화	1865	1911	轉出	慶北 清道郡	없음
59	日稼	路東里	정원석	1837	1912	死亡2		垓 10평
60	日稼	路東里	량한성	1849	1911	死亡1		없음
61	日稼	南部里	안두일	1879	1914	轉出	釜山府	없음
62	日稼	南部里	김선장	1862	1914	轉出	慶北 鬱陵島	없음
63	日稼	南部里	최이원	1868	1913	死亡1		없음
64	日稼	東部里	정학송	1890	1912	廢家		없음
65	日稼 農業	南部里	이상민	1882	1911	轉出	府內面	없음
66	日稼	於音里	김순봉	1859	1911	轉出	梁山郡	없음
67	日稼	盤松里	이유곡	1849	?	廢家		없음
68	日稼	東部里	김송아	1875	1914	轉出	上北面	없음
69	日稼	南部里	김한진	1851	1914	轉出 死亡		없음
70	日稼	南部里	임우문	1846	1914	死亡1		없음
71	日稼	南部里	박근수	1877	1915	轉出	慶北 慶州郡	없음
72	商業	盤松里	김동채	1855	1918	死亡		田 401평
73	商業	東部里	조광헌	1880	1935	轉出 死亡	慶北 金泉郡	垓 60평
74	商業	東部里	신광채	1884	1943	轉出 死亡	上北面	垓 81평
75	商業	東部里	고용득	1872	1943	死亡1		없음
76	商業	西部里	김말술	1889	1938	死亡2		없음
77	商業	東部里	정영복	1856	1936	廢家		田 610평
78	商業	東部里	이작지	1874	1947	死亡1		垓 121평
79	商業	東部里	권의정	1891	1958	死亡2		없음
80	匠人	東部里	강봉학	?	1967	轉出 死亡	釜山市	없음

자료: 『彦陽面除籍簿』, 『彦陽面土地臺帳』.

비농업 80호의 직업은 官吏 2호, 醫師 2호, 代書業 1호, 鑰器商 5호, 陶器商 1호, 油商 1호, 魚商 4호, 鹽商 4호, 錦商 1호, 白木商 1호, 煙竹商 1호, 煙草商 1호, 草履商 1호, 雜貨商 3호, 屠畜業 3호, 旅人宿 3호, 飲食店 14호, 酒商 1호, 商業 11호, 大工 1호, 馬夫 1호, 日稼 17호, 匠人 1호이다. 상업 11호와 장인 1호에 대해 더 자세하게는 알 수 없다. 여인숙, 음식점, 주상은 사실상 동일 업종이다. 연번 35 김반식의 직업은 음식점인데, 호적은 그의 이전 직업이 여인숙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들 80호의 제적 사유는 轉出, 廢家, 逃亡, 死亡으로 나뉜다. 전출은 다른 面, 郡, 道로 이주한 경우이다. 폐가는 호의 폐지를 말한다. 호주가 사망했으나 호주를 승계할 사람이 없거나, 사망 전이라도 너무 貧寒하여 호를 유지할 수 없어서 다른 호주의 호에 附籍되는 경우이다. 他姓의 인물을 부적하는 조선시대의 관행은 1910년대의 호적 행정에까지 이어졌다. 도망은 채무에 떠밀린 一家의 夜半逃走를 말한다. 폐가와 다를 바 없으나 그렇게 별도로 구분되었다. 사망은 호주의 사망에 따른 정상적인 제적을 말한다. 그것을 사망1과 사망2로 구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이다. 사망1은 호주의 사망에 따라 호주를 승계한 사람이 있지만, 新戶主의 호적이 현재의 제적부에서 확인되지 않은 경우이다. 그 호적은 아마도 1915~1922년의 망실된 제적부에 편철되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사망1의 신호주는 1915~1922년에 주로 전출의 사유로 제적된 자들이라고 짐작된다. 다시 말해 사망1은 좀 뒤늦은 전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사망2는 신호주의 호적이 현재의 제적부에서 확인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언양면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家系를 이은 사람들이다. 하나의 호에 2명의 인물이 제적된 경우가 있다. 연번 25의 김춘성과 하우수는 夫妻 간이다. 夫 김춘성이 죽자 妻 하우수가 호주를 승계한 다음, 곧바로 동래군으로 전출하였다. 연번 40의 김상임과 김복수는 父子 간이다. 父 김상임이 죽자 長男 김복수가 호주를 승계하였으며, 역시 곧바로 동래군으로 전출하였다.

80호의 제적 시기를 1915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살핀다. 이전에 제적된 호는 71호이다. 이들의 제적 사유는 전출 46호, 폐가 7호, 도망 2호, 사망1이 7호, 사망2가 9호이다. 사망2를 제외한 62호가, 그러니까 1910년의 비농업호 244호 가운데 4분의 1이 1915년까지 언양면을 떠나거나 폐가하였다. 1916년 이후 제적된 호는 9호이다. 전출 3호, 폐가 1호, 사망1 3호, 사망2 2호이다. 사망2를 제외한 7호가 역시 언양면을 떠나거나 폐가하였다. <표 18>에 열거된 80호 이외의 비농업호 164호는 어디로 갔을까. 그들은 1915~1922년의 제적부에 속하였으며, 제적 사유 역시 위와 비슷하였

을 터이다. 다시 말해 1910년 비농업호 244호의 거의 대부분이 이후 10년 내에 언양면을 떠나거나 폐가하였으며, 언양면에서 정상적으로 가계를 계승한 사람은 20여 호 남짓에 불과하였다.

토지대장을 통해서는 이들 비농업자들이 얼마만큼의 토지를 소유했는지를 알 수 있다. <표 18>의 소유지 란이 그에 관한 정보이다. 전 80호 가운데 51호가 畓, 田, 塚 어느 것도 소유하지 않았다. 21호가 대지만을 소유하였는데, 그 크기는 대개 50평 미만의 영세규모이다. 답이나 전을 소유한 사람은 8호에 불과하다. 토지를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은 답 1,514평, 전 209평, 대 102평을 소유한 박시훈인데, 상인이 아니라 의사이다. 상인으로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염상 조롱발(전 1,026평), 염상 량유권(전답 1,055평), 음식점 정필두(전 881평) 정도인데, 부유하다고 평가하기 곤란하다. 富商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한 마디로 언양장의 상인들은 직업이 日稼로 분류된 임노동자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가장 빈한한 하층민에 속하였다. 姓氏로 보아 그들은 대개 친족집단을 결여한, 흔히들 근본을 알 수 없다고 하는 常民 신분에 속하였다. 원래 유동성이 강하여 언양면에 정착한지 얼마 되지도 않거나 얼마 있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사람들이었다.

연번 6~10의 鑰器商 5호는 1911년의 '부산지역상공업조사'가 그 영업 실태를 관찰한 유기제조업자 5호 바로 그들이다. 그들이 소유한 畓는 그들의 作業場일 터이다. 5명 중 3명의 작업장은 30~80평의 규모이다. 작업장이 좁다는 조사자의 관찰은 정확하였다. 2명은 그들 명의의 대지와 작업장이 없었다. 아마 借家 상태였을 것이다. 이들의 창업 연도를 父祖의 代라고 한 조사자의 기술은 정확하지 않다. 5호의 유기제조업자들은 예외 없이 1914년까지 언양면을 떠나 다른 면으로 이주하였다. 그들은 원래 그렇게 이동성이 강한 부류였다. 지역사회의 유기 수요가 그들의 장기 정착을 유인할 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다. 18~19세기의 농촌 상인들이 行商이었다면, 농촌 수공업자들은 行工이라 칭해질만 하였다. 그들이 외부의 조사자를 맞아 부조 대의 창업이라고 대답했다면, 그것은 행공으로서의 창업을 뜻하였다.

1910년 상북면에서 상공업호가 많았던 것은 조사 시점에서 이같이 이동성이 강한, 빈한한 상공인들이 언양장에 다수 積滯하였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의 강우에도 며칠간 교통이 두절되는 열악한 도로사정은 상업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여러 장시를 순회하는 襍負商이 언양장에 들리기는 쉽지 않았다. 언양장에 보부상이 없다고 한 1911년의 조사는 신뢰할만하다. 마찬가지로 언양장의 상인들이 주변의 장시를 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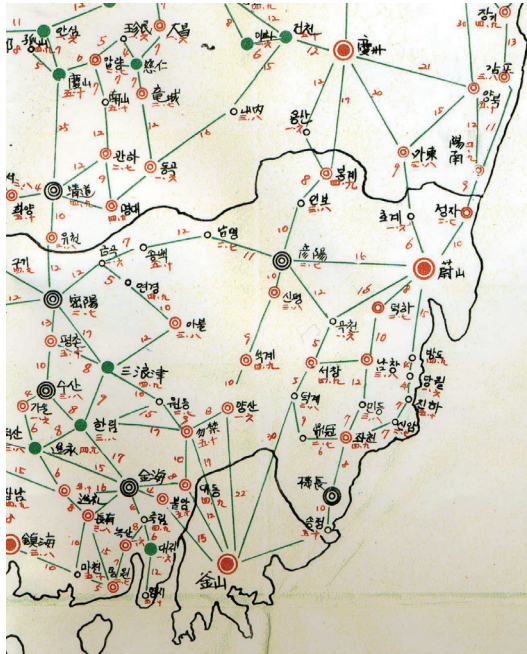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궁벽한 山村의 조잔하기 그지없는 장사에서 非定期的 이동을 전제한 상태로 적체하였다. 언양장에서 상공업호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였다. 18~19세기 농촌 기층시장에서 상공업은 일반적으로 정체하거나 쇠퇴하였다. 그 역사적 귀결의 적나한 사례 하나를 1910년대 초의 언양장에서 찾을 수 있다.

5.3. 언양장의 성장

그러했던 언양장이 1930년대가 되어서는 이전의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었다. <표 17>에서 보듯이 1938년까지 울산군의 장시 수는 16개로 늘었다. 장시의 연간 거래액은 1914년의 10만여 원에서 1938년의 259만여 원으로 25.8배나 증가하였다. 동기간 전국의 연간 시장거래액은 1~3호시장을 합하여 4,341만여 원에서 4억 934만여 원으로 9.4배 증가하였다[文定昌(1941, pp.133~135)]. 그에 비해 울산군 장시의 확장 속도는 2.7배나 빨랐다. 이처럼 일정기 울산군의 경제적 발전은 전국적으로 특별한 수준이었다. 1937년 ‘울산지방소개판’이 동아일보의 2개 지면에 걸쳐 실렸다. 거기서 기자는 울산을 가리켜 “水陸交通網의 획기적 施設”과 “天惠的 海陸産物의 풍부”로 인해 “영남 東端의 雄都”로 성장했다고 선전하였다. 위와 같은 장시 거래액의 증가로 보아 그것은 과장된 修辭가 아니었다. 내용을 좀 더 소개한다. 울산군의 산업은 三山面, 彦陽面, 西生面 일대의 無盡藏한 穀倉으로서 농업과 方魚津, 長生浦 등 동해안 제1의 漁港을 基地로 한 어업을 양대 축으로 하였다. 거기에다 울산을 중흥으로 관통하는 산업도로망, 일본 전역과 연결되어 있는 해상항로, 蔚山國際飛行場, 미구에 완공될 東海線 철도는 울산의 경제, 교육, 문화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켰다.⁽⁵³⁾

울산군에서도 언양면의 발전이 가장 두드러졌다. <표 17>에서 보듯이 1938년 彦陽場의 연간 거래액은 44만 8,000여 원으로서 제1의 蔚山場 93만 5,000여 원에는 비기지 못하지만 군내 16개 장시 가운데 제2의 지위를 차지하였다. 1914년 이래 장시의 수가 증가하면서 그 순위에 적지 않은 변동이 있었다. 이전의 兵營場과 南倉場이 쇠퇴한 반면, 언양장과 새로 생긴 德下場이 2위와 3위에 올랐다. 언양장이 울산군 제2의 장시로 올라 선 것은 이미 1920년대부터이다. 1925년판 『慶尙南道統計年報』에 의하면 언양장의 연간 거래액은 85,981원으로서 울산군 15개 장시 가운데 제2위이다.

(53) 『東亞日報』 1937년 7월 25일.



자료: 國立農業經濟研究所, 『韓國農村市場의 制度和 機能研究』.

<지도 2> 1970년대 慶南 東南部の 場市網

제1위는 143,024원의 울산장이다. 언양장의 거래를 보면 농산물이 16,609원, 수산물이 5,387원, 직물이 3,603원, 축류가 53,769원, 기타 잡품이 6,613원이다. 가장 중요한 거래는 축류, 곧 소의 거래였다. 언양장은 우시장으로서 크게 발전하였다. 그런데 언양장에서의 농산물 거래는 울산장을 능가하였다. 울산장의 농산물 거래는 11,187원이다. 언양장은 곡류를 취급한 농산물시장으로서는 군내 제1이었다.⁽⁵⁴⁾

<지도 2>는 1975년 國立農業經濟研究所가 그린 경남 동남부 일원의 場市網이다. 이에서 보듯이 당시 언양은 울산과 밀양, 경주와 양산을 잇는 도로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주변 7~8개 시장을 아우르는 中心市場에 해당하였다. 주지하듯이 1960년대에 들어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개시하였다. 울산에 건설된 공업단지가 그 주요한 동력을 이루었다. 이 같은 입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양의 중심시장으로서의 지위는 1960년대에 더욱 강화되었을 터이다. 그렇지만 그 역사적 출발을 따지면 위와 같이 1920년대부터였다.

(54) 『朝鮮總督府慶尙南道統計年報』 1925년판, pp.178~179.

이전에 가장 조잔했던 장시를 일대의 중심시장으로 밀어올린 것은 무엇보다 도로 사정의 개선이었다. 1900년대까지 언양은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바깥 세상과 격리된 궁벽한 산촌이었다. 도로가 改修되기 시작하는 것은 총독부의 통치가 개시된 직후부터이다. 1912~1913년 경상남도가 蔚山-彦陽線(폭 4.5m, 길이 21.4km)의 3등 도로를 개수하였다. 뒤이어 1913~1914년에는 울산군이 蔚山郡廳-梁山郡廳線(폭 3.6m, 길이 28km)의 3등 도로를 개수하였다.⁽⁵⁵⁾ 뒤이어 경주-양산 간의 44km 도로가 개수되었다. 울산군 내에서는 언양면과 중남면, 온산면, 두동면을 연결하는 도로가 차례로 개수되었다. 울산-밀양 간의 70km 도로도 일찍이 착공을 보지만, 加智山을 넘는 난공사로 인해 遲遲不進을 면치 못하였다. 이 공사는 1939년까지도 9km의 未改修 구간을 남기고 있었다.⁽⁵⁶⁾ 도로의 개수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교량이 결여되어 교통사정은 여전히 좋지 못하였다. 그에 대해 1933년의 동아일보는 언양-경주의 3등 도로 80리에 무엇 때문에 교량이 없는가라는 불평의 기사를 냈다.⁽⁵⁷⁾

그렇지만 교통사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 간 추세는 분명하였다. 1936년 8월에는 언양면과 상북면을 하루 4차례 왕복하는 버스 노선이 개통되었다.⁽⁵⁸⁾ 그와 더불어 동년 연말까지는 언양면과 두동면, 두서면, 범서면, 울산읍을⁽⁵⁹⁾ 연결하는 産業道路가 완성될 계획이었다. 그에 따라 울산군 서부 일대의 산업개발은 ‘一大曙光’을 맞이할 참이었다. 그 중심지는 도로망의 완성에 따라 일대의 농산물과 임산물이 더욱 집중할 언양면이었다. 그에 대해 동아일보는 “千古 이래 손을 대보지 못한 임야농산물의 개발과 아울러 언양을 중심으로 한 비약적 발전이 주목된다”고 하였다.⁽⁶⁰⁾

언양면이 지방 상업도시로 발전하는 양상은 면내 시가지의 순차적 정비에서도 확인된다. 앞서 소개한대로 1912년 면내의 도로는 1필지에 불과하였다. 그것이 1919년 16필지, 1930년 30필지, 1932년 124필지, 1933년 164필지, 1936년 204필지, 1940년 277필지, 1952년 300필지로 증가하였다. 1930년대까지의 증가는 언양면의 중심부인 동부리, 서부리, 남부리, 어음리, 송대리 일대에서였다. 1919년 최초의 시가지 정비에서는 16필지의 대지가 도로로 분할, 편입되었다. 그에 따라 읍성 남문 안의 彦陽公立

(55) 『朝鮮總督府慶尙南道道勢要覽』, 1914, 341-342쪽.

(56) 『慶尙南道道勢概覽』 1939년판, 242쪽.

(57) 『東亞日報』 1933년 5월 5일, 6월 12일.

(58) 『東亞日報』 1936년 8월 24일.

(59) 蔚山面은 1931년부터 蔚山邑으로 승격하였다.

(60) 『東亞日報』 1936년 5월 14일.

普通學校를 위한 通學路가 개통되었다. 그 다음의 중요한 정비는 1932년인데, 94필지의 대지가 도로로 분할, 편입되었다. 그로 인해 언양면을 남북과 동서로 관통하는 오늘날의 남문길과 현양길이 완성되었다.

시가지가 대대적으로 정비된 1932년에 언양면에 電氣가 들어왔다. 지방 유력자들이 다년간 電燈을 가설코자 노력한 결과, 蔚山電氣會社가 그해 1월부터 가설공사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點燈이 이루어졌다. 면내 500여 호 가운데 예상 燈數는 440호라 하였다. 1933년에는 면사무소가 동부리의 공유지로 이전하여 신축되었다. 1937년 남부리에는 카페가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美貌의 카페 걸을 둘러싸고 읍내 청년들 간에 사랑의 각축전이 벌어졌다.⁽⁶¹⁾ 1930년대에 걸쳐 언양면은 뚜렷이 근대적 도시로 변모해 갔다.

그와 더불어 언양장도 공간을 확충하고 시설을 개선하였다. 1930년 경상남도는 언양장의 면적 변경 및 설비의 건을 허가하였다. 그에 따라 남부리의 3필지가 시장구역에 편입되어 시장면적이 1,373평에서 1,462평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콘크리트 지면에 함석지붕을 한 38평의 魚市場이 설비되었다.⁽⁶²⁾ 그럼에도 언양장은 이후 급증하는 거래를 모두 포섭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았다. 1938년 언양장의 이전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동아일보는 당시 언양장의 실태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언양장은 구 언양현 5개 면의 1만 호는 물론, 인근 울산군, 양산군과 경북 경주군, 청도군도 이용하는 近邑에서 볼 수 없는 큰 농촌시장인데, 원래 道路規則을 무시하고 복잡한 道路邊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바, 物貨가 대대적으로 集散될 때에는 이리저리 함부로 옮겨 시내의 골목골목이 시장으로 바뀌어 來往客의 불편이 여간 적지 않은지라, 1만 호 주민은 관유지인 남천변 제방의 넓은 곳으로 公設市場을 이설하기를 갈망하고 있다.⁽⁶³⁾

이후 다시 언양장의 실태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한참 뒤인 1969년이다. 당시 언양종합시장으로 불린 언양장의 대지는 5,000여 평에 달하였다. 1938년 이후 언젠가 넓은 곳으로 이전했음을 알 수 있다. 시장에는 죽세공 10여 점포, 의류·잡화상 194점포, 농기구상 20점포, 1만여 개의 질그릇을 항상 쌓아둔 陶器店들이 상설점포로 입점해 있었다. 이외에 장날이면 500여 露店商이 전을 펼쳤다. 언양장을 찾는 사람은 1시일에 무려 3만여 명에 달하였다. 牛市場도 함께 열려 1시일에 평균 200마리

(61) 『東亞日報』 1932년 11월 6일, 1933년 5월 2일, 1937년 6월 29일.

(62)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1월 12일.

(63) 『東亞日報』 1938년 9월 23일.

의 소가 거래되었다. 靑果의 거래도 활발하여 50여 톤에 달하였다.⁽⁶⁴⁾ 1938년은 일정기에 걸쳐 조선의 경제가 최고 수준에 달한 해이다. 최근의 계량적 연구는 당시의 1인당 소득수준이 회복되는 것은 1960년대 중반임을 밝히고 있다[김낙년 편(2012, pp.518~519)]. 이를 고려하면 언양장의 1938년의 번성함은 1969년의 그것에 크게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다.

앞서 지적한대로 1910년대 이래 언양장의 주요 반출품은 쌀과 소였다. 쌀은 언양을 ‘米의 彦陽’이라 칭할 정도로 언양장의 주요 반출품이었다. 1932년 동아일보는 울산의 특산물을 소개하면서 울산의 야채와 참외는 自古로 유명하며, 언양의 쌀과 장생포의 고래는 “전 조선을 통하여 그 類가 드물다”고 하였다. 그만큼 언양은 맛좋은 쌀로 유명하였다. 1939년이면 “南朝鮮 유일의 穀倉”이라는⁽⁶⁵⁾ 다소 과장된 수사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언양의 벼농사는 지역의 비교우위산업으로 군림하였다.

1936년 동아일보가 언양장으로 주변의 임산물이 몰려든다고 할 때, 그 가운데는 목탄 뿐 아니라 竹細工品도 있었다. 언양 주변의 화잠산, 대운산, 신불산에는 예부터 질이 좋은 왕골(莞草)이 풍부하게 자생하였다. 농민들은 그것으로 자리, 광주리, 바지개, 소쿠리, 채반 등의 죽세공품을 만들어 언양장에 출시하였다. 오래 전부터의 일이었다. 『임원경제지』는 언양장에서 왕골자리(莞席)가 거래된다고 하였다. 일정기 도로사정의 개선과 더불어 농가부업으로서 죽세공품의 제작은 더욱 활발해졌다. 1969년 언양장에는 죽세공품을 취급하는 10여 점포가 있었으며, 그들에 의해 1시일에 약 6,000개의 죽세공품이 부산으로 반출되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일정기에 일본으로 수출되었다고 한다.⁽⁶⁶⁾ 언양의 또 하나의 특산물을 들자면 미나리이다. 1930년 동아일보는 서울의 명물을 빈대라 하면, 언양에는 미나리가 있다고 하였다.⁽⁶⁷⁾ 언제 부턴가 域外로 반출되기 시작한 언양의 미나리는 1930년경이면 높은 평판을 얻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언양장은 19세기까지 그를 고립시켰던 열악한 도로사정이 개선됨에 따라 쌀과 소를 주요 상품으로 하면서 목탄, 도기, 죽세공품, 미나리 등을 특산물로 하는 일대의 중심시장으로 성장하였다.

(64) 『每日經濟』 1969년 11월 1일.

(65) 『東亞日報』 1930년 2월 14일, 1932년 11월 6일, 1937년 7월 25일, 1939년 7월 17일.

(66) 『每日經濟』 1969년 11월 1일.

(67) 『東亞日報』 1930년 2월 14일.

5.4. 신흥세력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언양면에서는 종래의 鄕班이나 鄕吏과 구분되는 신흥 세력이 등장하였다. 언양면에서 근대적인 공업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이다. 1939년 총독부 殖産局의 조사에 의하면 동년 언양면에는 5개의 공장이 있었다. 1개는 釀造場이고 4개는 精米所이다[朝鮮總督府殖産局(1941, p.254, 344)]. 1개의 양조장은 남부리의 彦陽釀造合資會社로서 대표는 朴炫鎭이며, 창업 연도는 1928년이다. 제조품은 濁酒이며, 종업원 5~50인의 규모이다. 언양에서 양조장이 처음 설립된 것은 그보다 일렀다. 1926년 蔚山郡酒造組合이 제조장 품평회를 열었는데, 언양의 권의정이 2등에 선정되었다.⁽⁶⁸⁾ <표 18> 79번의 권의정(1891~1958) 그 사람이다. 1910년대 초의 상인으로서 이후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권의정 뿐이다. 그렇지만 그의 양조장은 1928년에 설립된 박현진의 양조장에 밀려 오래 가지 못했던 것 같다.⁽⁶⁹⁾

朴炫鎭(1874~1958)의 직업은 1910년의 호적에서 원래 농업이었다. 1912년 그는 답 3,418평과 대 125평의 소유자로서 부농이었다. 그가 1928년 양조장을 창업한 경위는 알 수 없으나, 이후 인근의 탁주 수요를 독점함으로써 크게 성공하였다. 1939년 울산군 내의 양조장은 모두 7개인데, 언양면과 주변 6개 면에서는 박현진의 양조장이 유일하였다. 1933년 경남의 水災에 30전 이상의 義捐金을 낸 언양면민은 7명인데, 그 중에 박현진과 그의 아들 朴泳讚, 조카 朴泳翰이 포함되었다. 박영찬과 박영한은 1934년의 三南水災義捐金 모집에서도 30전을 냈다.⁽⁷⁰⁾ 1936년 언양공립보통학교의 교실이 협착한 것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그 때 박현진은 학급증설비로 2,000원의 거금을 희사하였다. 당시 기부를 한 사람은 3명인데, 나머지 2명의 기부금은 500원과 300원이었다. 1937년 박현진은 춘궁기에 빈민들의 戶稅를 자진하여 부담하였다. 이를 보도하면서 동아일보는 박현진이 지역사회로부터 活佛로 칭송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 같은 동아일보의 보도는 동사 彦陽分局의 초대 지국장이 박영한임을 고려할 때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 1939년 박현진은 서부리의 진흥야학교가 경영난에 빠지자 特志를 냈다.⁽⁷¹⁾ 그의 아들 박영찬은 일본 明治大學을 졸업하고

(68) 『東亞日報』 1926년 11월 4일.

(69) 박현진이 권의정의 양조장을 인수한 것 같지는 않다. 박현진 양조장의 주소는 남부리인 반면, 권의정의 주소는 동부리이다.

(70) 『東亞日報』 1933년 7월 25일, 1934년 8월 24일.

(71) 『東亞日報』 1936년 7월 16일, 1937년 6월 24일, 1939년 10월 19일.

아버지의 양조장 경영을 이어받았다. 그의 조카 박영한은 1931년 이래 5년간 동아일보 언양분국의 지국장으로서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했으며, 1936년부터는 7년간 언양면의 面長으로 봉직하였다. 1930년대의 언양면에서 박현진 일가는 제1의 신흥 名門이었다.

다른 농촌과 마찬가지로 언양면에서도 대표적인 공업은 搗精業이었다. 1939년 4개의 정미소가 있었는데, 精米가 아니라 玄米를 생산했다. 그 가운데 가장 번창한 것은 1928년에 설립된 玄基奉粳摺工場이었다. 玄基奉(1898~1965)은 빈농 출신으로서 自手成家하였다. 1912년 그의 부 현두만이 토지대장에서 소유한 것은 89평의 대지 밖에 없었다. 언양면 중앙통에 위치한 그의 정미소 마당에서는 동아일보 언양분국이 주최한 活動寫眞 대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뛰어난 경영술과 훌륭한 인품으로 언양면과 주변 5개 면 농민의 거의 절반이 그의 정미소를 이용하였다. 1936년 産業組合의 정미소가 설립되지만 현기봉의 정미소를 따라 잡을 수 없었다.⁽⁷²⁾

현기봉에 이어 1929년 吳一泳(1898~1965)이 정미소를 설립하였다. 그 역시 1912년에는 76평의 대지 밖에 없는 빈농 출신인데, 不撓不屈의 의지로 경제적 성공을 이루어 1937년에는 언양면을 대표하는 유지의 한 사람이 되었다. 오일영의 정미소는 1939년에는 金敬玉粳摺工場으로 바뀌어져 있었다. 김경옥(1892~?) 역시 빈농 출신이다. 1912년 그의 부 김형운이 소유한 토지는 422평에 불과하였다. 그가 무엇으로 경제적 성공을 거두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34년이던 수재의연금 명단의 뒷자리에 그의 이름을 넣을 정도가 되었다. 그는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乘用車의 보유자였다. 1938년 그 승용차의 운전수가 사고를 냈는데, 법원은 자동차 소유주인 김경옥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⁷³⁾ 1935년 언양면, 상북면, 중남면을 구역으로 하는 彦陽産業組合이 결성되었다. 언양면 면장 金奎煥과 언양양조장의 박현진 등이 이를 주도하였다. 조합원은 3개 면에서 근 1,000명에 달하였다. 그 산업조합에 의해 1936년 彦陽産業組合粳摺工場이 설립되었다.⁽⁷⁴⁾

1937년 동아일보가 '울산지방소개판'을 낼 때 박현진, 현기봉, 오일영은 울산지역의 존경받은 유지로서 그 이름이 소개되었다. 이 외에 울산의 유지로 소개된 언양 사람은 金奎煥과 安孝植이다. 김규환(1897~?)은 어음리의 경주 김씨 출신이다. 향반 신

(72) 『東亞日報』 1933년 5월 26일, 1937년 7월 25일.

(73) 『東亞日報』 1938년 3월 4일.

(74) 나머지 1개의 정미소는 서부리의 金大善粳摺工場인데 설립연도는 불명이다.

분이지만 가세는 넉넉지 않았다. 1912년 그의 부 김봉호가 소유한 토지는 1,017평이었다. 그는 언양공립보통학교를 졸업했으며, 1924년 동교의 10주년 축하회에 졸업생 대표로 참석하였다. 1928년에는 언양면 면장에 임명되어 1936년까지 여러 가지 업적을 남겼다. 1928년에는 총독부로부터 大禮記念章을, 1933년에는 國勢調査記念章을 수여받았다. 1933년 언양면 면사무소가 동부리에서 근대식 건물로 신축된 것은 그의 공로였다. 면장을 그만 둔 다음에는 彦陽産業組合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김규환은 재력가는 아니었다. 1936년 면내의 그의 토지는 1,928평에 불과하였다. 그는 언양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이후 戰時期가 되자 그의 정치적 지위는 더욱 중요해졌다. 1939년 일본인을 단장으로 한 彦陽警防團이 조직될 때 그는 부단장의 직을 맡았다.⁽⁷⁵⁾

安孝植(1898~)은 의사이다. 京城醫專을 졸업하였으며 울산읍에서 개원을 하였다. 新幹會 울산지부의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1933년 언양면의 박현진을 비롯한 유지들이 언양면에 公醫를 배치해 줄 것을 청원한 결과, 1935년 안효식이 부임하였다. 안효식은 동년 12월 경남도의원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경남도의회에서 그는 조선인의 일본 도항을 제한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맹렬히 규탄하였다. “釜山과 시모노세키(下關) 사이에 철교를 가설하라”고 咆哮한 안효식의 연설은 도의회에서 열광적 반향을 일으켰다. 1938년에는 彦陽農業實習學校를 삼남면에 유치하는 데 공을 세웠다. 1939년 3월에는 모종의 혐의로 경찰에 검거되어 심문을 받기도 하였다.⁽⁷⁶⁾

1939년 5월 18府와 63邑·面의 범위에서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언양면에서도 面議會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3개월에 걸친 선거운동의 결과 당선된 사람은 <표 19>와 같다.⁽⁷⁷⁾ 1명은 일본인 무라다(村田龍吉)이다. 1930년대 언양면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25호 전후의 일본인들이 살았다. 무라다는 그들을 대표했다고 보인다. 9명의 조선인 당선자 가운데 앞서 소개한 김규환, 현기봉, 김경옥이 포함되었다. 정미업자 현기봉은 延州 玄氏이다. 현기봉의 주소는 서부리이다. 1939년 서부리 210호 가운데 연주 현씨는 그 뿐이다. 정미업자 김경옥은 月城 金氏이다. 그가 거

(75) 『東亞日報』 1924년 1월 1일, 1935년 3월 2일, 1937년 7월 25일, 1939년 8월 2일.

『朝鮮總督府官報』 1930년 1월 30일, 1933년 7월 4일.

(76) 『東亞日報』 1937년 7월 25일, 1938년 1월 23일, 1939년 3월 6일.

(77) 『東亞日報』 1939년 5월 24일.

〈표 19〉 1939년 彦陽面會의 議員 구성

姓名	住所	本貫	年齡	土地財産(坪)				비고
				畜	田	垓	合	
吳旼根	남부리	海州	37	4,037		231	4,268	전임면장
金奎煥	어음리	慶州	42	396	1,735	193	2,324	
金壽麟	반곡리	金海	73	555		159	714	
金永經	태기리	慶州	43	3,106	1,460	210	4,776	
韓淳敎	다개리	淸州	49	6,092	1,588	446	8,126	
金敬倫	반천리	慶州	39	1,858	1,765	367	3,990	정미소
玄基奉	서부리	延州	41	10,967	1,923	579	13,469	
權宜涉	평리	安東	56	377	2,438		2,815	
金敬玉	어음리	月城	47	2,077	1,188	397	3,688	
村田龍吉	동부리			2,413	315	196	2,924	

자료: 『彦陽面除籍簿』, 『彦陽面土地臺帳』.

주한 어음리 119호에서 월성 김씨는 그를 포함하여 단 2호에 불과하였다. 이처럼 친족집단을 결여하였음에도 그들이 면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것은 성공한 상공업자로서 주민의 넓은 인정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김규환의 주소는 김경옥과 같은 어음리이다. 그 어음리에서 2명의 의원이 나온 것은 순전히 김규환과 김경옥의 개인적 역량에서이다. 김규환은 앞서 소개한대로 전임 면장으로서 정치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김규환은 慶州 金氏로서 鄕班 신분이지만, 그가 동족의 지원을 받아 면장이 되거나 의원에 선출된 것은 아니었다.

나머지 6명의 이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대개 향반 신분으로서 주소지에 세거한 同族의 신분적 위세로 또는 새롭게 강화된 족적 결합의 지원으로 당선되었다고 보인다. 직업은 농업이며, 토지재산의 규모로 보아 자작농 또는 자작지주였다. 남부리의 오민근은 海州 吳氏로서 언양의 유서 깊은 鄕吏 가문 출신이다. 태기리의 김영경은 경주 김씨, 반천리의 김경륜은 경주 김씨, 평리의 권의섭은 安東 權氏, 다개리의 한순교는 淸州 韓氏로서 언양면에 분포한 동족의 신분적 위세에 힘입어 당선되었을 것이다. 반곡리의 김수린은 金海 金氏으로서 상민 신분이다. 그는 73세의 高齡에다 토지 재산도 714평에 불과하여 의원에 선출될 만한 자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그가 면의원에 당선된 것은 언양면에 널리 분포한 동족의 지원에 의해서였다고 보인다. 1939년 언양면에서 제1의 동성 집단은 경주 김씨로서 222호이다. 그 다음이 김해 김씨로서 210호이다. 김수린의 당선을 통해서도 원 상민 신분이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고 있었던 일정기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언양면은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었다. 구래의 신분이나 족적 위세에 기반을 둔 지배세력을 대신하여 개인의 능력과 성취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세력이 대두하고 있었다. 1939년의 13부와 68읍·면의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1,344명 의원의 직업은 商業이 가장 많아서 237명이고, 그 다음이 會社員과 辯護士였다.⁽⁷⁸⁾ 이처럼 전국적으로 일렁인 새로운 물결은 언양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옛 시대가 밀려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지방선거에서 동족 집단의 위세는 여전히 강하였다. 언양 면의원 9명 가운데 거의 절반이 그런 배경에서 당선되었다. 구래의 상민 신분이 단합하여 면의원을 배출하였듯이 족적 결합은 강화되기도 하였다. 새로운 물결과 전통의 물결은 한 데 어우러져 극히 복잡하고 우회적인 역사의 물줄기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6. 가족, 신분, 친족

6.1. 가족의 성립

오랫동안 의식되지 않았지만, 일제의 조선 지배는 家族制를 창출하였다. 나는 이야말로 일제의 조선 지배가 남긴 가장 중요한 역사적 유산이라고 생각한다. 正의 유산이든 負의 유산이든 가족제의 창출은 조선인의 사회·경제생활에 이후 오랫동안 이어지는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그 과정에서 오늘날의 韓國人이 창출되었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였음은 따지고 보면 신기할 정도이다.

일제의 지배는 세계사적 범주로서 ‘近代’를 조선에 이식하였다. 1912년 총독부는 朝鮮民事令을 발포하여 일본의 民法를 조선에서도 실행하였다. 민법은 개인과 국가 사이에 天然의 공동체로서 家族이 介在함을 전제한다. 민법이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私權의 主體로 설정할 때, 그 인간은 현실적으로 가족의 성원으로 존재한다. 그러한 취지에서 민법은 가족 내에서의 개인의 身分, 곧 家長과 成員의 관계와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규정한다. 1912년부터 실행되기 시작한 일본의 민법은 가족에 대해 “戶主의 친족으로서 그 家에 있는 者 및 그 配偶者는 이를 家族으로 한다”고 정

(78) 『東亞日報』 1939년 5월 24일.

의하였다. 친족의 범위는 호주의 直系尊屬 및 直系卑屬과 그 배우자, 傍系親과 그 배우자로서 원칙적으로 한계가 없었다. 다시 말해 호주의 家에 속한 친족집단을 가리켜 가족이라 하였다. 대조적으로 非血緣人은 가족이 될 수 없었다. 가족의 형식은 戶籍의 戶였다. 같은 가옥에 함께 살더라도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가족이 아니었다. 다른 곳에 떨어져 살아도 동일 호적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족이었다. 모든 호에는 그의 주소가, 곧 本籍이 있었다. 호주가 죽으면 원칙적으로 호주의 직계비속으로서 아들이 호주의 지위와 권리를 승계하였다. 다시 말해 가족이란 어느 本籍地에서 永續한다고 상정되는 戶에 소속된 호주와 그의 친족집단을 가리켰다[孫炳圭(2007, p.108)].

이 같은 가족의 개념이나 형태는 19세기까지의 조선왕조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우선 ‘家族’이란 말 자체가 없었다. ‘가족’이라는 현대 한국인에 익숙한 생활용어는 민법과 함께 일본에서 들어온 것이다. 조선시대에 가족에 상응하는 호칭으로서는 家眷, 家率, 食口, 食率 등이 있었다[정공식(2008, p.207)]. 이하 이들을 묶어서 家라고 칭한다. 조선왕조는 나름의 戶口制를 마련하여 인간들의 기초적 생활단위인 家를 호적에 등록하고 이를 戶라 하였다. 조선시대의 호는 戶首와⁽⁷⁹⁾ 그의 친족 이외에 奴婢, 雇工, 挾戶와 같은 非血緣 隸屬人을 포괄하였다. 그에 비해 20세기의 가족은 하늘이 낸 天然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非血緣人이나 隸屬身分을 배제하였다.

조선시대의 戶는 본질적으로 왕조에 대한 役務의 단위를 의미하였다. 이 점이 20세의 가족과 결정적으로 상이하였다. 조선왕조는 16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자에 대해 특정의 役을 부여하였다. 조선왕조가 호적을 3년마다 작성한 것은 役을 부담할 人口를 조사하고 그들을 役의 수행에 적합한 형태로 편성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조선시대의 호는 왕조의 지배체제에 편입된 백성의 家를 말하였다. 그래서 戶를 가리켜 編戶라고도 하였다. 백성의 家가 役의 단위인 戶로 편성되었다는 뜻이다. 매 3년마다 정상적인 家의 가장은 가의 구성원을 戶口單子에 적어 군현에 보고하였다. 그렇게 호구단자를 제출하여 호적에 등록된 家를 가리켜 主戶라고 하였다.

主戶의 戶首는 가의 구성원을 죄다 신고하지는 않았다. 군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된, 반드시 고정적이지 않은, 호와 인구의 總數가 있었다. 군현에 의한 호적의 편성은 그 총수를 충당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호구단자를 제출하는 때 주호에게도

(79) 조선시대에 戶主라는 말은 없었거나 간혹 쓰여도 다른 뜻이었다. 20세기의 戶主에 상응하는 조선시대의 용어로서는 戶首가 일반적이었다.

사실상 할당된 口數가 있었다. 戶首는 그것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가의 구성원을 신고하였다. 가의 구성원을 남김없이 보고하는 것은 역의 부담을 늘리는 어리석은 일이었다. 지나치게 적게 신고하는 것은 역의 부담을 이웃의 다른 家에 轉嫁하는 결과가 되어 均현의 규제를 받았다. 부유하고 식구가 많은 家는 均현에 의해 아버지와 아들을 호수로 하는 두 개의 호로 분할되었다. 어쨌든 일반적으로 말해 실재하는 인구보다 적은 인구가 호적에 등록되었다. 모든 성인 남자는 특정의 역을 진다는 왕조의 지배 이념과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할당된 인구수에 적합하게 신고된 남자에 한해서 관철되었다. 奴婢나 雇工과 같은 비혈연 예속인은 대체로 남김없이 신고되었다. 그래야 주호의 그들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보호받을 수 있었다. 兩班 신분의 남자는 호적에 등록되지 않고서는 科擧를 볼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 때문에 양반 신분의 성인 남자는 비교적 성실하게 호적에 등록되었다.

모든 인구가 다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음은 家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家가 다 호적에 등록되지는 않았다. 常民신분으로서 가난한 가는 호적에 등록되지 않았다. 역의 부담을 견딜만한 능력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다. 전술한대로 均현에는 중앙정부가 할당한 호의 총수가 있었다. 그것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호구단자를 제출할 主戶가 지정되는 과정에서 가난한 농가는 자연스럽게 배제되었다. 이렇게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낮은 신분의 가난한 세대를 가리켜 挾戶라 하였다. 원래 협호는 외지에서 어느 동리로 흘러 들어온 사람을 말하였다. 협호는 그를 맞이한 主戶의 예속인과 다를 바 없었다. 협호는 주호로부터 약간의 토지를 并作으로 임차하는 대신, 갖가지 노동을 주호에 제공하였다. 18세기 초 중앙정부는 전국의 협호를 挾戶成冊이라는 별도의 장부에 등록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였다. 협호는 호적에서 누락된, 중앙정부의 파악 밖에 놓인 집단이었다. 그 전국적 실수를 알 수야 없지만, 대체로 주호의 총수가 2라면 협호의 총수는 1이었다. 어느 마을에 협호로 정착한 가난한 농민은 가정경제의 개선과 더불어 적절한 시기에 주호로 승격하였다. 주호 집단에 결원이 생기면 협호 집단 가운데 건설한 세대가 그를 메웠다. 그 점에서 협호는 18~19세기 농촌에서 農家가 自立的 小農으로서 성립, 발전, 해체되는 과정과 조선왕조의 지배체제가 맞물려서 빚어낸 非自立的 小農을 총괄하는 범주라고 할 수 있다 [李榮薰(1988, pp.303~322)].

이상과 같이 조선시대의 戶는 戶首의 혈연 친족뿐 아니라 그에 예속된 비혈연 노비, 고공, 협호를 포섭한 복합적 구조였다. 18~19세기에 걸쳐 소농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奴婢類의 비혈연 예속인의 수가 줄었다. 전국의 戶總과 口總도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호의 복합적 구조는 19세기 말까지 변하지 않았다. 개별 인신으로부터 역을 수취하는 왕조의 지배체제가 개혁되지 않은 가운데 소농경제의 불안정성이 여전하여 협호를 위시한 비자립적 소농의 범주가 존속하였기 때문이다. 1901년 조선왕조의 마지막 量田이 시행되었다. 그 때 만들어진 충청남도 扶餘와 韓山을 위시한 7개 군의 量案에서 농가의 34%는 협호에 속하였다. 양안에 등록된 垡를 하나의 家로 간주할 경우, 충남 7개 군에서 가의 총수는 23,416이었다. 그 가운데 7,947가가 협호였다[李榮薰(1988, pp.266~268)]. 협호의 존재형태는 다양하였다. 외지에서 유입한 가난한 농가와 노비 출신의 예속인 뿐 아니라, 주호의 傍系親族으로서 부유한 농민까지 협호의 범주를 이루었다[李榮薰(1988, pp.356~371)]. 그렇지만 그들은 왕조의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家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었다.

전국의 인구가 왕조의 지배체제로부터 해방되어 그 畧數가 조사되는 것은 保護國期의 일이다. 1907년 統監府는 경찰과 헌병을 동원하여 전국의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호총이 1904년의 142만에서 1909년의 274만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호적에 등록되었던 主戶層은 물론, 관습적으로 누락되어 온 挾戶層이 빠짐없이 조사된 결과였다. 1909년 통감부는 民籍法을 공포하여 조선왕조의 호적과 상이한 형식의 호적을, 民籍의 이름으로 조제하였다. 새롭게 조사된 274만 세대는 민적에 개별 호로 등록되었다. 바로 그 때 앞서 소개한 근대적 개념의 가족이 생겨났다.

조선시대의 주호와 협호는 20세기의 가족과 적지 않은 차이를 안고 있었다. 우선 家를 구성하는 혈연 친족의 범위가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이었다. 17~19세기 兩班家의 호구단자를 분석한 어느 연구는 핵가족, 직계가족, 결합가족, 방계가족 등 온갖 형태의 가족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일정한 방향성도 없이 변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은기수(2004a, p.205)]. 또한 양반가는 그를 둘러싼 친족 집단에 埋沒된 형태로 존재하였다. 양반신분의 가는 친족집단의 공존과 번성을 위한 공동의 권리와 책임으로 그 家系가 계승되었다[은기수(2004b, p.135)]. 대조적으로 상민신분의 경우 친족집단이 빈약하거나 결여되었다. 상민신분의 가는 소농경제의 일정한 성숙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였다. 빈번한 흉작과 稅役의 중압으로 인해 상민신분의 가계는 끊어지기 쉬웠으며 지역 간의 높은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였다[이영훈·조영준(2005)]. 또한 조선시대에는 20세기의 戶主制와 같은, 家長의 가족성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에 호를 대표한 戶首는 어

다까지나 왕조에 대한 역의 이행을 책임지는 존재였다. 요컨대 조선시대에 걸쳐 개별 家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인 사회질서의 기초 단위로서 그 결합의 범위, 내용, 원리가 명확한 형태로 규정되고 제도화한 적은 없었다.

이 같은 역사에 규정되어 1909년의 민적법은 일본의 家族制를 그대로 조선에 이식하고자 했다. 그 결과 가족이 제도적으로 原始創出되었다. 인간이면 누구나 民籍에 등록되어야 했다. 그것은 마치 모든 有體, 無體의 재산권이 국가가 정한 양식의 登記簿에 등록되어야 함과 동일한 원리였다. 민적에서 모든 인간은 그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처지의 차이와 무관하게 오로지 이름과 가족관계와 본적만으로 추상화된 존재였다. 그 같은 민적의 형식은 민법이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으로 설정함에 상응하였다. 다만 天然의 공동체로서 가족과 관련하여 가장과 성원의 관계를 조선의 관습과 실정에 맞게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새롭게 제정될 민법의 커다란 숙제였다. 통감부는 그 민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서둘러 민적법을 공포하여 일본의 가족제를 도입하였다[이승일(2008, pp.225~227, 232~234)].

일본의 가족제에서 家長, 곧 戶主는 가족 성원의 부양을 책임짐과 동시에 그 구성과 신분의 변동을 결정할 권리를 보유하였다. 가족 성원의 出生, 死亡, 結婚, 離婚, 入養, 破養, 分家, 一家創立, 附籍, 移居, 改名 등의 변동 사항은 호주의 동의와 신고를 통해서야 법적 효력을 발생하였다. 가족은 호주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를 정할 수 없었다. 가장은 妻의 재산을 관리할 권리를 가졌으며, 누구의 재산인지 불명확한 가족의 재산은 가장에게 귀속되었다. 가족은 이 같은 호주의 권리가 그의 상속자에게 승계되는 법적 단위이기도 하였다. 모든 호에는 그의 법률적 주소로서 本籍이 따랐다. 본적의 공유는 가족이 성립하는 본질적 요건의 하나였다. 가족의 제도적 창출은 本籍制의 성립이기도 하였다. 가족 성원의 일부가 다른 곳에 이주하더라도 본적을 공유하는 한 그는 가족의 일원이었다.

1909년 민적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점진적이었다. 민적에 등록된 최초의 戶들은 조선시대의 호 그대로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호주와 그의 상속자가 별개의 호로 분리된 경우도 있었으며, 곤궁한 처지의 비혈연 예속인이 이전처럼 주호의 호적에 附籍된 경우도 있었다[孫炳圭(2006, pp.16~19, 23~25)]. 조선인에게 일본의 가족제는 아직 낯설었다. 무엇보다 가족제의 실제 법규로서 민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1912년 朝鮮民事令의 공포로 드디어 민법의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 그 민법에서 가족제의 영역은 조선의 관습에 위임되었다. 총독부 권력은 용의주도하

제도 관습이 지배하는 조선인의 일상생활의 영역에 무리하게 침입하지 않았다.

가족제에 있어서 실질적인 변화는 1920년대부터이다. 1921년 조선민사령이 개정되어 그 동안 관습에 위임되었던 조선인의 人格, 親族, 相續의 영역을 대상으로 일본 민법이 확대 시행되었다. 그 같은 실체 법규의 정비와 더불어 1922년 기존의 민적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戶籍令이 공포되었다. 그것은 일본의 가족제를 조선에 더욱 온전하게 이식하는 취지였다. 가족제의 이식은 이상하게도 큰 저항 없이 수용되었다. 예컨대 당초 민적에 별개로 등록되었던 아버지의 호와 아들의 호가 새로운 가족제의 취지에 맞추어 자발적으로 통합하였다[孫炳圭(2006, pp.20~21)]. 새로운 가족제가 조선인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된 데에는 그럴만한 역사적 소지가 있었다. 다만 아니라 嫡長子로 상속되어온 祭祀의 권리였다.

17~19세기에 걸쳐 재산의 상속은 長子優待의 分割相續의 방식에 의하였다. 장자를 우대하는 것은 그가 제사의 의무와 권리를 상속하기 때문이었다. 제사의 봉행은 家系의 신분적 위세를 대변하였다. 가계의 성립은 高祖-曾祖-祖-父 4대에 대한 奉祀를 전제하였다. 4대 봉사를 통한 종법의 실천을 결여할 경우 양반신분의 家系로 인정받기 힘들었다. 상민 신분의 가에서 제사는 대개 1~2대 父祖의 魂靈을 위로하는 종교적 의미에 그쳤다. 17~19세기 걸쳐 성리학적 종법에 기초한 친족집단의 형성과 4대 奉祀의 관행이 널리 확산되었다. 그것은 양반신분의 사회적 확산 과정이었다. 일본 가족제의 이식에 대해 조선인의 저항이 심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호주상속제가 조선의 제사상속 관행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이승일(2008, p.238)]. 새로운 가족제의 성립은 제사상속을 넘는 포괄적인 범위에서 조선인의 가족·사회생활을 깊이 규정하였다. 언양면의 제적부에서 새로운 가족제의 波長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났던가.

6.2. 가족의 확대

〈표 20〉은 언양면의 제적부에서 1912년부터 10년 간격으로 언양면 14개 리의 戶當人口의 추이를 제시한 것이다. 각 연도의 호수와 인구는 각 연도 10월 1일의 것이다.⁽⁸⁰⁾ 추이의 하한을 지금까지의 1952년에서 1962년으로 늘렸다. 호당 인구는 卍 별로 같지 않다. 1912년 동부리의 호당 인구는 4.40명인데, 어음리의 호당 인구는 5.42명이다.

(80) 언양면의 제적부 데이터베이스에서 각 연도 10월 1일 기준 호수와 인구수를 검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는 朴二澤(2013b)를 참고하시오.

〈표 20〉 彦陽面 戶當 人口의 추이(1912~1962년)

		1912년	1922년	1932년	1942년	1952년	1962년
南部里	戶	179	176	212	232	243	250
	人口	806	879	1,222	1,543	1,796	1,902
	戶當人口	4.50	4.99	5.76	6.65	7.39	7.61
茶開里	戶	122	127	126	139	148	154
	人口	610	718	852	1,010	1,148	1,330
	戶當人口	5.00	5.65	6.76	7.27	7.76	8.64
大谷里	戶	101	116	124	123	124	155
	人口	511	652	801	891	992	1,241
	戶當人口	5.06	5.62	6.46	7.24	8.00	8.01
東部里	戶	121	112	132	160	166	194
	人口	533	555	764	1,035	1,216	1,518
	戶當人口	4.40	4.96	5.79	6.47	7.33	7.82
盤谷里	戶	129	146	151	156	160	214
	人口	625	788	960	1,139	1,329	1,727
	戶當人口	4.84	5.40	6.36	7.30	8.31	8.07
盤松里	戶	139	125	142	147	156	178
	人口	675	709	885	1,126	1,222	1,481
	戶當人口	4.86	5.67	6.23	7.66	7.83	8.32
盤淵里	戶	61	79	77	70	67	68
	人口	308	424	486	543	620	662
	戶當人口	5.05	5.37	6.31	7.76	9.25	9.74
盤泉里	戶	131	142	150	155	169	225
	人口	691	811	966	1,133	1,369	1,733
	戶當人口	5.27	5.71	6.44	7.31	8.10	7.70
西部里	戶	158	178	207	226	245	264
	人口	696	862	1,160	1,418	1,740	2,075
	戶當人口	4.41	4.84	5.60	6.27	7.10	7.86
松臺里	戶	63	77	93	99	98	107
	人口	326	436	572	689	759	827
	戶當人口	5.17	5.66	6.15	6.96	7.74	7.73
於音里	戶	76	93	106	124	137	172
	人口	412	537	742	993	1,108	1,429
	戶當人口	5.42	5.77	7.00	8.01	8.09	8.31

〈표 20〉 계속

		1912년	1922년	1932년	1942년	1952년	1962년
直洞里	戶	107	120	130	128	140	185
	人口	511	650	818	1,062	1,333	1,696
	戶當人口	4.78	5.42	6.29	8.30	9.52	9.17
台機里	戶	73	83	81	85	91	94
	人口	351	455	506	586	694	829
	戶當人口	4.81	5.48	6.25	6.89	7.63	8.82
平里	戶	74	81	77	80	94	101
	人口	355	439	502	611	680	836
	戶當人口	4.80	5.42	6.52	7.64	7.23	8.28
合	戶	1,534	1,655	1,808	1,924	2,038	2,361
	人口	7,410	8,915	11,236	13,779	16,006	19,286
	戶當人口	4.83	5.39	6.21	7.16	7.85	8.17

자료: 『彦陽面除籍簿』.

1명이면 적지 않은 차이다. 1962년 남부리의 호당 인구는 7.61명인데, 반연리는 9.74 명으로서 더 큰 차이다. 리에 따라 호당 인구에 차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호당 인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제적부에서 확인되는 1912년 언양면의 호수는 1,534, 인구수는 7,410으로서 호당 인구는 4.83명이다. 이 수는 1922년에 5.39명, 1932년에 6.21명, 1942년에 7.16명, 1952년에 7.85명, 1962년에 8.17명으로 일관되게 증가하였다. 2003년 朴二澤이 언양면 제적부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최초로 확인한 이 사실은 근년에 한국의 사회과학계가 거둔 최대의 학술적 성취라고 생각한다[朴二澤 (2013b)]. 기왕의 家族史 연구자들이 알지 못했던 이 사실이 시사하는 역사적 함의는 실로 풍부하다.

우선 戶當 人口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일정기에 가족제가 창출 될 때, 그 가족은 법제로서 호적에 등록된 호주 하의 혈연집단을 가리켰다. 다시 말해 호당 인구는 法制로서 家族의 규모를 말한다. 종전의 가족사 연구는 이 법제로서 가족이라는 범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1925년 총독부가 최초의 센서스를 실시 할 때 조사 대상이 된 것은 법제로서 가족이 아니라 그의 하부 단위로서 개별 世帶였다. 1925년 전국의 조선인 세대 총수는 348만 3,481이며, 인구 총수는 1,854만 3,326

이다. 세대 당 인구는 5.3명이다.⁽⁸¹⁾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가 최초로 시행한 1955년의 센서스에서조차 마찬가지이다. 세대 당 인구는 5.5명이다. 세대의 결합 형태는 夫婦와 未婚子女로 구성된 夫婦家族이 60%의 지배적 비중을 차지하며, 아버지 부부와 家系를 계승할 자식의 부부가 동거하는 直系家族은 34%이다. 직계가족은 부부가족에 비해 비중이 적지만, 1950년대의 한국인이 지향하는 완성 형태의 가족이다[崔在錫(1994, p.26, 104)]. 사회학자들이 주도한 이 같은 가족사 연구는 자연스럽게 20세기 한국인의 가족은 소규모 직계가족을 전형으로 하였다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 같은 가족사 연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제로서 가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충분하다. 법제로서 가족도 엄연히 가족이었다. 인간들의 가족 의식에는 법제로서 가족에 대한 의식이나 지향이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법제로서 가족은 호적 상의 형식적 구성만은 아니었다. 호주가 호의 구성원에 대해 행사하는 제반 권리는 실제적이었다. 법제로서 가족은 그 자체로 단일 世帶일 수도 있지만, 여러 세대의 결합인 경우가 더 많았다. 후자의 경우, 次男 이하는 결혼 이후 대개 아버지와 형의 세대를 떠나 자신의 세대를 꾸리지만, 아버지나 형을 호주로 하는 호의 성원으로 남으며, 그러함을 당연하게 나아가 의무로 여겼다. 차남 이하가 아버지나 형의 호로부터 분리되어 독자의 호주가 되는 것은, 곧 법적으로 分戶를 하는 것은 결혼 이후의 同戶 상태를 몇 년이고 경과한 다음, 자신의 소생이 2~3명이 되는 즈음의 일이었다. 그 사이 호적 상의 법제로서 가족은 여러 세대가 결합한 大家族으로 부풀려졌다.

대가족으로 결합한 여러 세대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유대감으로 강하게 결속하였다. 개별 세대의 사회·경제활동은 대가족적 유대를 전제로 하였다. 나아가 개별 세대의 사회·경제적 독립은 대가족적 유대로부터 지지되었다. 農繁期에 農牛나 農具를 부담 없이 공유할 수 있는 혈연집단은 대개 父-子-孫 3대에 한하였다. 곧 법제로서 가족이라는 범주에 해당하였다. 기존의 가족사 연구는 개별 세대와 법제로서 가족 사이에서 이루어진 공동체적 유대와 그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다. 기존의 가족사 연구에서도 친족집단의 존재와 역할은 중시되었다. 그렇지만 가족적 유대와 친족적 유대는 그 내용과 지향에서 상이하였다. 가족적 유대가 경제적인 것이라면, 친족적 유대는 문화적인 것이었다. 요컨대 기존의 가족사 연구에서 가족은 소규모 개별 세

(81) 『朝鮮總督府統計年報』1925年度版, p.24.

대로서 그를 둘러싼 직접적이며 실체적인 혈연관계로부터 절연된 비실체적 추상물로 다루어졌다.

법제로서 가족의 규모는 앞서 보았듯이 1912년 이래 일관되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언양면에서 가족의 평균 규모는 1912년의 4.83명에서 1962년의 8.17명으로 1.7배나 커졌다. 개별 세대의 규모가 보통 5명 전후라면, 1912년의 가족은 그 자체로 하나의 개별 세대였다. 그러했던 당초의 가족이 50년 뒤에는 평균 1.7개의 개별 세대의 결합으로 바뀌었다. 결합의 범위는 보통 男系로서 父, 兄, 弟, 子, 姪이었다. 그 규모는 최대 40명에 달하기도 하였다[朴二澤(2013b, pp.360~362)]. 女系의 姉, 妹, 姑母는 부차적이었다. 叔父가 姪이 호주인 호의 성원인 경우도 예외적이지 않았다.

법제로서 가족 규모의 증가는 개별 세대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分戶 또는 同戶를 강제하거나 지지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었다. 개별 세대는 분호 상태보다 동호 상태를 선호하였다. 가족 규모의 증가 추세는 결혼 이후 분호를 행하는 시기가 의도적으로 늦추어졌음을 말한다. 그러한 선택에는 무언가의 유인이나 지향이 작용하였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小農經濟의 성립, 발전, 해체의 순환과정에서 개별 소농이 가계의 번영과 영속을 위해 선택하는 전략적 행동원리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개별 세대의 결합을 통한 대가족 형성의 방향으로 추구되었던가. 이러한 질문은 아주 새롭고도 중요한 것이다. 20세기 한국인의 역사를 그 일상의 행동원리에서 추구해 들어가는 작업이다.

6.3. 가족 규모와 신분

冒頭에서 밝힌 대로 이 글은 素描하는 것이다. 나는 이 새롭고도 중요한 질문에 온전하게 대답할 수 없다. 다만 소묘를 충실히 더 진행함으로써 몇 가지 유력한 단서를 후속하는 연구에 남기고자 한다. 호당 인구, 즉 법제 가족의 규모는 신분에 따라 달랐다. <표 21>은 台機里 주민의 성씨별 호수와 호당 인구의 1912~1962년에 걸친 추이다.

<지도 1>에서 보듯이 태기리는 里域의 대부분이 산지인, 외부로부터 상대적으로 격리된 마을이다. 1912~1962년에 걸쳐 태기리의 지배적 성씨집단은 경주 김씨였다. 경주 김씨가 태기리에 입거한 것이 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표 16>에서 보듯이 1711년 언양현 중부면 기지리 호적에서 경주 김씨는 없었다. 경주 김씨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1777년의 호적에서이다. 경주 김씨가 태기리에 들어온 것은 그 사이

〈표 21〉彦陽面 台機里 姓氏別 戶數와 戶當 人口

	本貫 姓	1912		1922		1932		1942		1952		1962	
		戶數	戶當 人口	戶數	戶當 人口	戶數	戶當 人口	戶數	戶當 人口	戶數	戶當 人口	戶數	戶當 人口
1	慶州 金	19	6.21	25	6.32	28	6.68	31	7.61	33	8.27	36	9.33
2	金寧 金	11	4.55	10	5.10	11	6.82	12	8.17	14	7.79	15	8.27
3	金海 金	8	4.00	9	4.67	6	6.83	6	7.00	6	7.50	7	7.57
4	寧越 嚴	6	3.50	7	5.43	5	6.60	5	6.80	6	7.00	7	9.57
5	鶴城 李	4	4.50	4	5.50	4	5.25	3	7.33	3	10.33	2	8.00
6	慶州 崔	3	3.67	3	4.33	2	3.50	2	5.00	2	4.00	2	4.50
7	高靈 申	3	4.33	4	5.50	4	5.50	3	7.67	3	7.00	1	12.00
8	曲阜 孔	3	4.00	3	6.33	3	8.33	2	9.00	3	11.67	3	13.67
9	平澤 林	3	5.00	3	7.33	2	12.00	3	5.33	3	6.67	3	11.33
10	東萊 鄭	2	4.50	2	7.50	1	5.00	1	3.00	1	7.00	1	9.00
11	文化 柳	2	7.00	3	4.67	3	5.00	4	5.50	4	6.50	4	7.00
12	密陽 朴	1	3.00	1	3.00	1	4.00	2	2.50	2	3.00	1	6.00
13	靈山 辛	1	4.00	2	4.00	2	3.50	2	2.50	2	5.00	2	6.50
14	密陽 孫	1	5.00	1	2.00	1	4.00	1	4.00	1	6.00	1	5.00
15	南平 文	1	6.00	1	11.00	1	15.00	1	11.00	1	13.00	1	25.00
16	永川 黃	1	2.00	1	2.00	1	4.00	1	5.00	1	5.00	1	7.00
17	昌寧 黃	1	5.00	1	3.00	1	4.00	1	7.00	1	9.00	1	10.00
18	慶州 申	1	3.00	1	1.00	1	1.00	0		0		0	
19	玉山 全	1	5.00	1	5.00	0		1	10.00	1	11.00	1	11.00
20	蔚山 金	1	5.00	0		0		0		0		0	
21	光州 金	0		1	4.00	1	4.00	1	2.00	1	2.00	1	2.00
22	慶州 李	0		0		1	5.00	1	7.00	1	9.00	1	10.00
23	仁同 張	0		0		1	2.00	1	5.00	1	5.00	1	7.00
24	清州 韓	0		0		1	1.00	1	1.00	1	1.00	1	1.00
25	晉州 姜	0		0		0		0		0		1	3.00
合		73	4.81	83	5.48	81	6.25	85	6.89	91	7.63	94	8.82
3~25 合		43	4.26	48	5.13	42	5.81	42	6.00	44	7.09	43	8.58

자료: 『彦陽面除籍簿』.

어느 시기였다. 1777년 고작 2호인 경주 김씨는 1798년에 5호, 1861년에는 10호로 늘어나 태기리에서 가장 큰 성씨집단을 이루었다. 그 때까지 官職이나 學問에서 경주 김씨의 두드러진 성취는 없었다. 生員과 進士를 배출한 적도 없었다. 鄉校나 書院

으로 결집한 언양현의 鄉班社會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다.

경주 김씨의 족보에 의하면 최초의 관직 보유자는 金龍洙(1838~1917)인데, 정3품의 通政大夫 行敦寧府都正을 지냈다. 일정 금액을 헌납하고 취득한 納粟職이었다. 누대에 걸친 勤儉篤農으로 가정경제를 일군 과실이라고 하겠다. 19세기 말 태기리 경주 김씨는 언양의 향반사회에서 일석을 차지하게 되었다. 1910년 11월 72세의 용수는 총독부가 尙齒恩典을 베푼 언양군의 5명 가운데 1명이었다.⁽⁸²⁾ 1912년 토지대장에 의하면 용수의 토지는 전 2,557평, 답 4,207평, 대 653평, 분묘지 561평으로 도합 7,978평이었다. 이와 별도로 장남 炳經(1860~1932)의 토지가 4,310평, 장손 知鶴(1893~1975)의 토지가 5,684평이었다. 이보다 못하지만 용수의 네 동생들도 넉넉할 살림이었다. 셋째 동생인 龍河(1842~1914)의 아들 洪經(1870~1943)은 1914년 언양면이 생기자 초대 면장을 지냈다.

〈표 21〉에서 보듯이 1912년 태기리의 호수는 73호이며, 호당 인구는 평균 4.81명이다. 그에 비해 경주 김씨 19호의 호당 인구는 6.21명으로서 리의 평균보다 1.3배나 많다. 경주 김씨 다음으로 큰 성씨 집단은 11호의 金寧 金氏인데, 호당 인구가 4.55명이다. 나머지 연번 3에서 20까지 16개 성씨 집단 43호의 호당 인구는, 표의 맨 아래 행에 제시되어 있는데, 4.26명이다. 경주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성씨는 그럴듯한 姓貫의 수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의 처지에서 양반신분이라 하기 힘들었다. 이로부터 양반신분일수록, 나아가 친족집단이 클수록 호당 인구, 즉 법제로서 가족의 규모는 컸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1912~1962년 태기리의 호수는 73호에서 94호로 늘었는데, 그 사이 성씨 집단의 구성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경주 김씨가 1912년의 19호에서 1962년의 36호로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 금녕 김씨가 11호에서 15호로 증가하였다. 그 다음은 金海 金氏와 寧越 嚴氏인데, 호수에서 변화는 없다. 나머지 1~3호의 영세한 집단도 마찬가지이다. 1962년 성씨별 호당 인구를 보면 경주 김씨는 9.33명, 금녕 김씨는 8.27명, 나머지 21개 성씨 집단은 8.58명이다. 이렇게 양반신분일수록 그리고 친족집단이 클수록 호당 인구가 많아지는 관계는 196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태기리 주민의 성관별 구성의 변동 양상은 앞의 〈표 14〉에서 제시한 다개리와 직동리의 그것과 거의 다를 바 없다. 마을의 戶數가 증가하는 가운데 유력 성씨 집단의

(82) 『慶州金氏雞林君派大同譜』 卷9, p.30.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다. 1~3호의 영세한 집단 몇 개가 소멸하고 신입하는 변동을 있을 뿐이다. 이를 두고 앞에서는 19세기까지의 역사와 구별되는 小農社會의 安定化 현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그 원인의 한 가지로 本籍制와 戶主制에 기반을 둔 가족의 성립을 지적하였다. 가족의 성립과 발전은 언양면 14개 리에서 예외 없이 전개된 호당 인구의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호주를 중심으로 한 父, 兄, 弟, 子, 姪의 공동체적 결속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의 공동이용, 공동노동의 결성, 나아가 소득의 공유 등을 통해 개별 세대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가족의 규모에는 身分別 差等이 있었다. 양반신분의 가족 규모는 상민신분의 가족 규모를 능가하였다. 농촌 주민의 결혼은 1950년대까지 身分內婚이었다. 양반은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결혼하였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양반신분의 남자는 適齡期에 양반신분의 妻를 맞이하였으며, 남편과 적절한 터울의 건강한 처는 많은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는 가족의 규모를 늘리고 나아가 토지재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반면 가난한 상민신분의 남자는 적령기에 결혼을 하기 힘들었다. 남편의 혼인 연령은 불규칙하였으며, 처와의 연령 터울도 들쭉날쭉하였다. 이는 상민신분 처의 출산 회수와 가족 규모를 제약하였으며, 나아가 토지재산의 증식을 제약하였다. 양반과 상민신분 간의 가족 및 재산 규모의 차이는 이 같은 家族 生涯史의 전개가 신분별로 차별적이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점을 1912년 태기리의 경주 김씨 집단과 금녕 김씨 이하의 집단에서 관찰되는 가족 규모의 차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족 규모의 신분별 차이는 1962년까지 이어졌다. 경주 김씨의 호당 인구는 여전히 다른 성씨 집단보다 컸다. 1912년 민법의 공포에 따라 사회생활의 공식 영역에서 양반과 상민의 신분 차별은 해소되었다. 그러한지 5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의 일상생활에서 班常의 신분 감각이나 질서는 여전히 존속하였다. 그것을 꾸준히 재생해 온 것은 결혼을 포함한 가족 생애사의 차이였다. 그렇지만 반상의 신분 감각이나 질서는 크게 보아 해소되는 추세였다. 경주 김씨가 마을의 지배세력임은 1962년까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금녕 김씨의 호당 인구는 1932년과 1942년에 경주 김씨를 능가하였다. 1932년 경주 김씨 28호의 호당 인구는 6.68명임에 비해, 금녕 김씨 11호의 호당 인구는 6.82명이다. 1942년 경주 김씨의 호당 인구는 7.61명임에 비해 금녕 김씨의 호당 인구는 8.17명이다. 그렇게 경주 김씨와 금녕 김씨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실력은 근접하고 있었다. 나아가 경주 김씨, 금녕 김씨, 여타 성씨의 세 집단 간의 격차도 해소되는 추세였다. <표 19>에서 보는 세 집단의 호당 인구

상호간의 變動係數(표준편차/평균)는 1912년 0.21, 1922년 0.13, 1932년 0.08, 1942년 0.16, 1952년 0.08, 1962년 0.06로서 감소하는 추세이다.

요컨대 1910년대 이래 1950년대까지 법제로서 가족의 규모는 커지는 추세였으며, 이는 개별 세대의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그와 더불어 가족 규모의 신분별 격차와 그에 기인하는 경제력의 신분별 격차는 해소되고 있었다. 반상의 신분 감각과 질서는 끈질기게 존속했지만, 이 같은 추세에 떠밀려 그 역시 점차 해소되는 추세였다. 일제의 지배정책이 창출한 가족제는 개별 농가로 하여금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가족의 결합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戶主를 중심으로 특정의 주소에서 永續하는 혈연집단이라는 새로운 家族制의 정책적 지향은 그에 상응하는 효과로서 현실화하고 있었다.

6.4. 친족집단의 확산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개별 세대의 전략적 선택은 가족 결합을 넘어 친족 결합의 강화로도 추구되었다. 가족이 父-子-孫 3대에 걸친 혈연결합이라면, 친족은 高祖-曾祖-祖-父-子 5대에 걸친 혈연결합이다. 고조를 같이 하는 친족집단을 가리켜 흔히들 堂內라 하였다. 당내의 핵심 기능은 祭祀였다. 당내는 4代奉祀를 위한 祭祀共同體에 다름 아니었다. 그 외에 당내는 婚禮, 喪禮에 상호 부조하였다. 혼례와 장례는 가족의 생애사에서 가장 큰 지출을 요하는 의례이다. 당내는 그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한 친족공동체였다. 혼상례의 공동 부담은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을 제고하였다. 당내의 일원으로서 4대봉사를 행하고, 정기적으로 조상의 묘소에 時祭를 드리고, 혼·상례를 맞이하여 상호부조하는 것은 가족의 사회적 신분이 兩班임을 증명하는 불가결의 조건을 이루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한 가족의 전략적 선택은 당내 조직의 추구로 나타났다.

1910년대 이래 언양 소농사회에서 친족집단은 확산 일로에 있었다. 堂內를 결성하는 가족의 수를 임의적이긴 하지만 15호라고 간주하자. <표 22>는 언양면 14개 리에서 리 내에 호주의 성관이 동일한 호가 15호 이상인 집단의 수, 그에 속한 戶數, 면의 戶總에 대비된 그 비중을 연도별로 제시한 것이다.

1912년 언양면 각리에서 15호 이상의 동성 친족집단은 17개였다. 이 친족집단은 1922년에 22개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1962년까지 45개로 증가하였다. 그에 속한 호수는 1912년의 321호에서 1922년의 422호, 1962년의 1,052호로 증가하였다. 언양면

〈표 22〉 彦陽面 各里에서 15호 이상 親族集團의 數와 戶數의 추이

연도	1912년	1922년	1932년	1942년	1952년	1962년
面 戶總(A)	1,534	1,655	1,808	1,924	2,038	2,361
親族集團數	17	22	27	34	34	45
同上 戶數(B)	321	422	537	696	744	1,052
비중(B/A)	20.9	25.5	29.7	36.2	36.5	44.6

자료: 『彦陽面除籍簿』.

호충에서 동성 친족집단에 속한 호의 비중은 1912년의 20.9%에서 1922년의 25.5%, 1932년의 29.7%, 1942년의 36.5%, 1952년의 36.5%, 1962년의 44.6%로 일관되게 증가하는 추세였다. 물론 당내 친족집단의 결성은 개별 리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았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따져야겠지만, 2~3개 리나 언양면 전역에 걸쳐 분포한 당내 친족집단은 위보다 더 많은 수에 더 큰 비중이었음이 분명하다. 크게 말해 1962년 언양면 전체 인구의 적어도 절반 이상은 당내 친족집단에 속하였을 터이다.

20세기 전반 彦陽 小農社會에서는 4대 조상의 忌祭祀, 名節을 맞아 산소에서 거행하는 時祭祀, 성원의 혼·상례를 맞아 빈번하게 모였다 흠어지는 당내 친족집단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사회단체를 이루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당내가 실천하는 유교적 윤리와 의례를 통해 자신의 신분을 兩班으로 감각하였다. 점점 많은 한국인들이 양반신분의 감각과 상징의 확보에서 평등해졌다. 가족제를 창출한 민법은 인간을 자유롭고 평등한 사권의 주체로 상정하지만, 20세기 전반 한국인이 추구한 민법적 가치는 소농사회를 둘러싼 고유한 역사적 맥락에서 가족결합의 강화와 친족집단의 확산을 통한 ‘儒敎的 人間化’ 그것이였다. 20세기 한국인의 역사는 이식된 근대에 기인하는 ‘近代的 轉換’과 그에 대항하면서 또는 그에 편승하면서 전개된 ‘儒敎的 轉換’이 어울린 ‘複線의 轉換’ 과정이였다.⁽⁸³⁾

친족집단의 결성과 운영은 성씨에 따라, 같은 성씨라 해도 가족에 따라 다양하였다. 당내의 유지를 위해서는 高祖 이하 4대에 걸친 宗의 성립이 요구된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느 집단은 宗의 성립과 유지에 성공한 반면, 다른 어느 집단은 실패하였다. 중가가 가정경제에 실패하여 영락하기도 했다. 전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도시에서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 앞서 소개한 ‘새로운 물

(83) 20세기의 한국사를 ‘근대적 전환’과 ‘유교적 전환’이 어울린 ‘複線의 轉換’으로 파악하는 나의 관점에 대해보다 상세하게는 이영훈(2014)를 참조할 수 있다.

결'이 상징하듯이 유교적 생활원리로부터 해방된 사람들도 있었다. 언양면 14개 리에 분포한 친족집단의 역사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추적하는 것은 장래의 큰 과제이다. 20세기 전반에 걸친 언양 소농사회에 관한 소모는 여기서 그친다.

7. 맺음말

20세기 전반의 언양면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그려온 것을 순서에 구애되지 않고 요약한다. 미처 의식하지 못한 것들, 앞뒤 맥락이 맞지 않아 그리지 못한 것들도 포함한다. 이 그림의 시작은 1910년 朝鮮王朝가 망한 때부터이다. 전통 왕조의 패망은 많은 변화를 몰고 왔다. 우선 전, 답, 가옥, 산지, 분묘지, 저수지를 포함하여 인간생활에 유용한 모든 자원들이 국가가 정한 양식의 공적 대장에 등록되었다. 이런 일은 불완전하나마 이전 시대에도 있었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동시적 변화로 인해 이전 시대와는 비견할 수 없는 제도적 정확성과 규범성을 발휘하였다.

첫째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국가의 공적 대장, 곧 戶籍에 등록되었다. 인간도 토지처럼 등기가 된 것이다. 모든 토지가 경제적 가치로 평가되는 재산으로서 동질적이듯이 호적에 등록된 인간도 그러하였다. 호적제의 법적 근거를 이룬 民法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私權의 주체로 상정되었다. 호적에서 모든 인간은 天然의 공동체인 家族의 일원이었다. 그 점에서 모든 인간은 동질적이었다. 모든 가족에게는 本貫과 本籍이 부여되었으며, 그 점에서 모든 가족은 평등하였다. 전통 왕조가 그의 백성에게 강요한 身役과 身分의 차별은 사라졌다. 외래 권력이 주도한 가족을 단위로 한 인간 등록제도는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토지 등록을 시행한 土地調査事業 이상의 중대한 변화를 조선인의 삶과 사회적 행동의 원리에서 초래하였다.

둘째, 토지와 인간을 관리하는 地方行政의 제도와 기구가 정비되었다. 전통 왕조의 지방행정은 租稅의 수취, 刑事 범죄의 처벌, 民事 분쟁의 조정에 그쳤다. 그에 비해 총독부가 지방행정의 새로운 중심으로 창출한 面制와 그 행정기구인 面事務所의 역할은 도로, 교량, 제방, 관개, 배수, 시장, 조림, 농사, 축산, 묘지, 위생, 소방 등 사회·경제의 구석구석까지 널리 포괄하였다. 이를 위해 인구와 토지의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지방행정의 단위가 상호간의 명확한 경계와 함께 성립하였다. 1914년 언양면과 14개 리의 성립은 새롭게 창출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구래의 면리제

는 토지와 인구에 기반을 둔 공간적 구획이라기보다 인적 지배의 착종하는 분할이었다. 관련하여 재미있게 발견한 사실은 彦陽邑城을 둘러싼 東部里와는 별개의 동부리가 언양현의 동쪽 경계에 설치되었다는 사실이다. 거기서 나오는 조세가 鄉吏 집단의 소득이 되는 契房村이었다.

언양면은 그를 둘러싼 생태환경에서 유서 깊은 山間部 稻作地帶였다. 일찍부터 풍부한 溪間 川水를 활용하는 저수지와 沕가 발달하였으며, 개간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그렇다고 풍요롭거나 상업이 발달한 지역은 아니었다. 언양면의 발전을 가로막은 가장 심각한 제약은 조그만 비에도 며칠간 통행을 끊은 열악한 道路 사정이었다. 20세기 초 언양면은 사실상 사방으로부터 두절된 궁벽한 山村이었다. 언양장은 울산군의 6개 장시 가운데 거래 규모가 가장 작은 한산한 장시였다. 언양장을 무대로 약 150호의 상인들이 있었지만, 언양면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빈한한, 사회적 지위에서 가장 초라한, 이동성이 강한 부류들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10년 이내에 언양면을 떠났다. 상업적 부는 전통 언양면의 경제와 무관한 범주였다.

일정의 개시와 함께 언양면을 가장 먼저 찾아온 가시적 변화는 사방의 주요 도시와 언양면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통이었다. 사람과 물자가 도로를 타고 대량 이동함에 따라 언양면 서부리와 남부리에서 열린 彦陽場은 울산군 서부 6개 면의 中心市場으로 떠올랐다. 울산군에서 가장 한산했던 언양장은 1930년대에 이르러 울산군 제2의 장시로 성장하였다. 시가가 정비되고, 장시가 확장되고, 전기가 들어오는 등, 언양장과 면사무소가 놓인 언양면의 중심부는 점차 근대적 地方都市로 발전해 갔다. 1920년대 후반에는 최초의 근대적 공업시설로서 釀造場과 精米所가 들어섰다. 1939년까지 양조장은 하나였지만, 정미소는 도작농업의 발전을 배경으로 4개로 늘어났다. 양조장과 정미소의 경영자들은 전통 양반신분과 무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신분적 친족적 배경도 없이 오로지 개인의 능력으로 사업체를 일구고 발전시켰다. 이들 신흥세력은 일정의 개시와 함께 한반도를 찾아온 이른바 ‘近代化’의 물결을 상징하였다.

언양면의 농업과 그에 바탕을 둔 전통 사회구조의 변화는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았다. 언양면의 농업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人口流出이었다. 1920년대부터, 특히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량의 인구가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으로 장기간 또는 단기간 이주한 사람은 언양면 인구의 거의 4~5할에 육박하였다. 이는 적체한 農村過剩人口를 해소하고 농가경제를 안정시킴에 큰 도움이 되었다. 거꾸로 언양면에

들어온 일본인은 얼마 되지 않았다. 10년 이상 장기체류한 가족은 열이 채 못 되었다. 그들은 언양면의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지 못하였다. 어느 두 지역 간에서 대량의 인구를 유출한 쪽을 植民地라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모순이다. 그 점에 생각이 미치자 나는 그 시대를 植民地期라고 불렀던, 별 생각 없이 오랫동안 되풀이 했던 습관을 버렸다. 그 대안으로서 해방 후 한국인들이 그 시대를 가리켜 즐겨 사용한 日政期라는 말을 이 글에서 되살렸다.

언양면 중심부에 일렁인 근대화의 새로운 물결에도 불구하고, 언양면 14개 리에 걸친 토지소유와 농업생산의 구조에서의 변화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농민의 지배적 형태는 始終如一하게 自作農과 自小作農이었다. 토지소유의 지배적 형태도 自作農地와 在地地主지였다. 일정기 평야부에서 발달한 지주제는 산간부의 언양면과 거리가 있었다. 不在地主의 토지는 전반적으로 영세했으며, 그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 인구의 대량 유출은 언양면의 자작농체제를 유지하고 강화하였다.

수도작의 기반을 이루는 水利施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溪間川水를 저류한 貯水池의 수와 수와 면적은 놀랍게도 1930년대까지 하등의 변화가 없었다. 볼만한 변화는 일정 최말기인 1944년의 일이었다. 총독부의 농업개발을 상징한 水利組合은 언양면과 무관하였다. 일찍이 상인으로 진입하여 경제적으로 성공한 어느 일본인이 彦陽水利組合의 결성을 추진하였다. 그에 맞서 토착 주민은 浮里湫改良契라는 전통 수리시설을 개량하는 조직을 결성하였다. 총독부는 후자를 지원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부리보개량계는 목적 사업을 준공한 뒤 자발적으로 해체하였다. 계의 책임자가 계의 기금을 유용하였기 때문이다.

토지조사사업의 성과로 조제된 土地臺帳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언양면의 사회조직적 특질에 관한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1912년 언양면에는 26개의 저수지가 있었다. 1,000평 미만의 17개 소규모 저수지는 대부분 개인의 재산이었다. 그 가운데는 다른 面과 郡에 거주하는 不在地主도 적지 않았다. 부재지주의 저수지 소유에 대한 현지 마을이나 주민으로부터의 제약은 없었다. 저수지는 매매와 상속의 대상이 되는 개인적 재산이었다. 납득하기 힘들지만, 저수지는 公共財가 아니었다. 대조적으로 1,000평 이상의 9개 대규모 저수지는 개인적 재산이 아니었다. 그를 둘러싸고서는 공동의 수리조직이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을 맞아 대규모 저수지의 소유권은 수리조직을 대표하는 몇 사람의 共同名義로 査定되었지만, 결국 국유지로 돌려지고 말았다. 총독부가 수리조직의 권리를 수탈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 몇 사람은 저수지가 놓인

마을을 대표할만한 신분적 지위에 있지 않았다. 그들은 저수지의 관리에 종사한 마을의 하민과 같은 처지였다. 결국 마을의 총의와 단합에 바탕을 둔 수리조직이나 관습적 권리는 없거나 취약하였다.

이 같은 결론을 내림에 나는 적지 않게苦心하였다. 또 우리나라 역사를 貶下하는가. 그러다가 앞서 소개한 부리보개량계 사건을 접하였다. 그 사건은 湫를 둘러싼 상설적 수리조직이 없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토착 주민들은 수리조합을 결성하려는 당국의 정책에 자극되어 그들의 전통 수리조직을 근대적 형태로 재편성하였지만, 오래 유지할 능력이나 유인이 없었다. 해마다 湫의 水路를 개수할 때면, “부릿보 役事 나오이소”라는 통지가 들고[彦陽邑誌發刊推進委員會(2001, p.231)], 마을 사람들은 관례에 따라 赴役하였다.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계간 천수를 풍부하게 인입할 수 있었던 산간부 도작지대의 자연환경은 대규모 기금이나 시설을 요하는 상설적 수리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런 수준의 편리하면서도 임의적인 수리조직은, 자연과 사회와의 균형은, 저수지의 개발과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저수지만이 아니다. 전, 답, 대, 임야, 분묘를 비롯한 대부분의 토지는 개인의 소유였다. 1912년 전 토지에서 畝의 소유지는 0.2%, 鄕校 등 공공기관의 소유지는 0.2%의 비중에 지나지 않았다. 조선왕조의 屯土에 기인하는 國公有地의 비중이 8.3%였는데, 이후 대부분 연고 소작인에 불하되었다. 그 결과 개인 소유지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토지를 공동 소유한 團體나 機關이 이토록 저조한 현상은, 내가 아는 한, 다른 지방의 토지대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토지대장에 의하는 한, 조선왕조의 시대는 社會組織의 면에서 眞空狀態이다. 공유재산에 바탕을 둔 마을도, 학교도, 상인과 공업자의 단체도 없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조선왕조의 신분 차별에 기초한 신역 지배체제가 그러한 사회구조를 초래했던가. 19세기의 위기가 그 원인인가. 일본과 중국,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 토지를 둘러싼 사회조직은 어떠한가. 나는 오랫동안 이 같은 의문에 사로잡혀 왔다. 이 그림을 그리게 된 한편의 동기는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더욱 세밀하게, 실수하지 않기 위해, 門中으로 불린 친족집단의 공동소유지에 대해 살폈다. 문중의 공유지는 아무래도 많지 않았다. 언양면의 여러 문중 가운데 토지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문중은 두 문중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다수의 문중에서 공유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宗孫의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었다. 그러했던 한, 그것은 문중의 공유인지 종손의 개인재산인지 불명확하였다. 문중 조직은 종손이 주관하는 祖上 祭祀를 본질적 기능으로 하는 文化的 威勢團體였다. 제사의 비용을 공동

으로 마련하는 것은 문중 조직의 본질적 요건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 문중 조직이 이 그림의 대상인 일정기를 포함하여 1950년대까지 줄곧 널리 확산되었다. 그 점이야말로 이 그림이 발견한 최대의 성취이다.

우선 앞서 그 역사적 의의를 강조한 새로운 人間 登錄制度로서 家族에 대해 이야기하자. 민법의 공포와 戶籍制의 시행은 조선인에게 가족이란 혈연결합을 제도화하였다. 가족은 호적에 등록된 戶主와 그의 혈연집단으로 정의되었다. 호주는 성원에 대해 가족 내에서의 지위와 그 변동을 결정할 때나 강력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모든 가족에게는 本貫과 本籍이 부여되었다. 이에 가족은 특정의 조상에 뿌리를 두면서 특정의 주소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영속하는 혈연집단으로 감각되고 또 그렇게 실천되었다. 戶主制, 本貫制, 本籍制 가족은 모든 조선인을 오랜 身分과 身役의 굴레에서 해방시켰다. 혈연을 매개로 한 가족 결합의 강화는, 그리고 그것의 확장 형태로서 친족집단의 형성은 어느 인간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양반신분임을 자각하고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經路를 이루었다.

당연하게도 호적에 등록된 법제로서 가족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 차남 이하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함이 보통이지만, 자신의 소생이 2~3명이 되기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와 형을 호주로 하는 호의 구성원으로 머물렀다. 그 결과 가족의 규모는 1912년의 4.83명에서 1962년의 8.17명으로 줄곧 확대되었다. 가족 결합을 통한 농지, 농우, 농구, 노동의 공유는 개별 세대의 경제적 자립성을 제고하였다. 실제 성관별 호수의 추이를 통해 본 20세기 전반 언양면 소농사회는 이전 18~19세기에 비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과시하였다. 총독부와 지주제의 수탈로 인해 농가의 전 계층이 몰락하였다는 일정기 농촌경제에 관한 종전의 이미지는 언양면과 그와 유사한 환경의 지역에 관한 한, 재고될 필요가 있다. 대량의 인구유출, 상업경제의 발달이 농촌경제를 안정시킨 다른 한편의 요인이었다면, 가족 결합의 강화를 추구한 개별 세대의 전략적 선택은 소농의 가계를 안정시킨 다른 무엇보다 뚜렷한 효과였다.

가족 결합의 강화와 가족의 사회적 신분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가족의 규모는 마을을 지배한 양반신분과 그 아래의 하민신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 규모의 확대는 상하 신분 간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였다. 사회적 신분을 개선하기 위한 개별 가족의 노력은 친족결합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언양면 14개 리에서 동일 성관의 친족집단에 속한 인구의 비중은 점점 커지는 추세였다. 예컨대 각리에서 성관이 동일한 15호의 집단은 1912년의 17개에서 1962년의 45개로, 그에 속한 호수

의 비중은 1912년의 20.9%에서 1962년의 44.5%로 증가하였다.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조상 제사를 위해 모였다 흠어지는 친족집단을 보유하게 된 것이야말로 20세기 전반의 언양 소농사회를 관철한 가장 뚜렷한 사회적 동향이었다. 친족집단의 확산이 개별 인간의 자립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친족집단의 확산은 조상제사의 봉행을 통해 양반신분임을 과시하는 문화적 현상이다. 20세기 전반 언양 소농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 가치가 그들에게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자 그것을 그들의 전통 생활윤리인 유교적 가치의 추구로 구체화하였다. 20세기 언양인의 생활사는 ‘근대적 전환’과 ‘유교적 전환’이 어울린 ‘복선의 전환’이었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51-74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전화: (02) 880-6368
팩스: (02) 886-4231
E-mail: yhrhee@snu.ac.kr

참 고 문 헌

〈자료〉

- 『慶尙南道道勢概覽』
- 『慶尙南道彦陽郡籌板』(北一同).
- 『慶尙道續撰地理誌』
-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上)·(下), 釜山大學校 韓國文化研究所, 1989.
- 『慶尙道彦陽縣丁西式戶籍大帳』, 孫淑景·李暈相 編著(1999), 『朝鮮後期 彦陽의 鄉班 昌寧 成氏 家門과 天主教 受容者들 그리고 이에 관한 古文書』, 釜山教會史研究所.
- 『慶州金氏雞林君派大同譜』
- 『近世韓國五萬分之一地形圖』
- 『東亞日報』
- 『每日經濟』
- 『彦陽面除籍簿』, 蔚山廣域市 蔚州郡 彦陽邑事務所 所藏
- 『彦陽面土地臺帳』, 蔚山廣域市 蔚州郡 彦陽邑事務所 所藏

- 『彦陽邑再製簿』, 蔚山廣域市 蔚州郡 彦陽邑事務所 所藏
- 『林園經濟誌』
- 『在彦陽日本人除戶簿』, 蔚山廣域市 蔚州郡 彦陽邑事務所 所藏
- 『朝鮮日報』
- 『朝鮮總督府慶尙南道道勢要覽』
- 『朝鮮總督府慶尙南道統計年報』
- 『朝鮮總督府官報』
- 『朝鮮總督府及附屬官署職員錄』
- 『中外日報』
- 『한국근현대인물자료』 (<http://db.history.go.kr>)
- 『戶口總書』
- 『皇城新聞』

〈논저〉

- 강정택 지음 · 박동성 옮김 · 이문웅 엮음(2008): 『식민지 조선의 농업사회와 농업경제』, YBM-sisa.
- 久間健一(1950): 『朝鮮農業經營地帶の研究』, 東京, 農林省農業總合研究所.
- 김낙년 편(2012): 『한국의 장기통계: 국민계정 1911-2010』,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金翼漢(1996):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地方支配體制の構築過程と農村社會變動』, 東京, 東京大學 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 博士學位論文.
- 金鴻植 외(1990):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서울, 민음사.
- 內部警務局(1910): 『民籍統計表』, 출판사.
- 嶋陸奥彦(2010): 『韓國社會の歴史人類學』, 風響社.
- 文定昌(1941): 『朝鮮の市場』.
- 박기주 · 김성남(2013): 『한국인 초혼연령의 추이: 전시기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54, 39-70.
- 박섭(1997): 『한국근대의 농업변동 - 농민경영의 성장과 농업구조의 변동』, 서울, 一潮閣.
- 박이택(2013a): “20세기 언양지역의 인구변천 - 언양읍 호적 자료의 분석”, 『보건경제

- 와 정책연구』 **19. 3**, 101-128.
- 朴二澤(2013b): “20세기 언양지역의 가족구성의 변천 - 언양읍 제적부와 재제부의 분석”, 『大東文化研究』 **83**, 347-386.
- 박이택(2014a): “20세기 언양지역에서의 유년인구의 가족형태 - 언양읍 제적부와 재제부의 분석”, 『아세아연구』 **57. 3**, 212-269.
- 朴二澤(2014b): “20세기 언양지역에서의 노년인구의 가족형태 - 언양읍 제적부와 재제부의 분석”, 『大東文化研究』 **87**, 279-321.
- 三成文一郎·有働良夫(1905): 『韓國土地農産調査報告』(慶尙道·全羅道)「附錄」.
- 細谷定(1915): 『日鮮對照朝鮮民籍要覽』.
- 孫炳圭(2006): “한말·일제초 제주 하모리의 호구과약 - 光武戶籍과 民籍簿 비교 분석”, 『大東文化研究』 **54**, 1-39.
- 孫炳圭(2007): “民籍法の ‘戶’ 규정과 변화 - 일본의 明治戶籍法 시행경험과 ‘朝鮮慣習’에 대한 이해로부터”, 『大東文化研究』, **57**, 81-15.
- 손숙경(2012): “19세기 언양 鄕班社會의 새로운 구성원들과 그 성격 - 鄕校의 儒案과 구성원들의 層位”(원고본).
- 彦陽邑誌發刊推進委員會(2001): 『彦陽邑誌』.
- 外村大(2004): 『在日朝鮮人社會の歴史的研究』, 綠蔭書房.
- 울산대국박물관(2015): 『언양읍성 - 마을과 사람들』, 울주, 울산대국박물관.
- 越智唯七 編纂(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京城(서울), 中央市場, 大正 6.
- 은기수(2004a): “의성김씨가 가족의 변화”, 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 義城 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백산서당, 139-206.
- 은기수(2004b): “가계계승의 다양성과 ‘종족전략’”, 문옥표 외,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 義城 金氏 川前派 고문서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 백산서당, 103-138.
- 이승일(2008):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조선민사령』, 서울, 역사비평사.
- 李榮薰(1988): 『朝鮮後期社會經濟史』, 서울, 한길사.
- 李榮薰(1990): “光武量田에 있어서 ‘時主’ 과약의 실상 - 忠淸南道 燕岐郡 光武量案의 사례분석”, 金鴻植 외,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서울, 민음사, 89-137.
- 李榮薰(2000): 『韓國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歷史的 特質』, 서울, 韓國開發研究院.

- 이영훈(2014): 「한국사회의 역사적 특질: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의 비교제도적 토대」, 『한국형시장경제체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67-427.
- 이영훈·조영준(2005): “18~19세기 農家의 家系繼承의 추이 - 경상도 丹城縣 法勿也 面 戶籍에서”, 『경제사학』 39, 3-25.
- 정금식(2008): “한국의 호주제도에 대한 역사적 성찰”, 『식민지주의의 정치적 유산』(국제학술대회발표논문집).
- 丁若鏞 著, 茶山研究會 譯註(1979): 『譯註 牧民心書 II』, 서울, 創作과 批評社.
- 정요근(2014): “GIS 기법의 활용을 통한 조선후기 越境地의 복원”, 『歷史學報』 224, 109-162.
- 鄭震英(1993): “조선후기 村落의 구조와 ‘分洞’”, 『國史館論叢』 47, 1-30.
- 朝鮮總督府(1925): 『朝鮮の聚落』 後篇,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1944): 『人口調査結果報告』,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1925, 1930, 1935): 『朝鮮總督府國勢調査結果報告』, 京城(서울), 朝鮮總督府.
- 朝鮮總督府企劃部(1941): 『朝鮮農業人口ニ關スル資料(其二)』.
- 朝鮮總督府農商工部(1911): 『釜山方面商工業調査』.
- 朝鮮總督府殖産局(1941): 『朝鮮工場名簿』 1941年度版.
-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1918a):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 朝鮮總督府臨時土地調査局(1918b): 『朝鮮地志資料』.
- 崔在錫(1994): 『改訂韓國家族研究』, 서울, 一志社.
- 한국고문서학회 엮음(1996): 『조선시대생활사』, 서울, 역사비평사.
- 홍제환·이영훈(2008): “일제 말기 조선 농촌의 경제동향, 1935~1944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소토지소유자 증가 추세를 중심으로”, 『경제사학』 45, 109-141.

Abstract

The Peasant Society of Eonyang in the First Part of 20th Century

Young Hoon Rhee

According to the land register and family register of Eonyang-myon(彦陽面), Gyeongnam(慶南) province, the dominant form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nd landownership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consisted of independent farmers who cultivated their own lands. The natural environment surrounding Eonyang-myon, namely the mountainous paddy area, formed its main background. Furthermore, contrary to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the peasant economy became stabilized under the Japanese rule. Much population flowed out to Japan, which subdued rural surplus population considerably. The development of rural periodic market on Eonyang-myon contributed also to the stabilization of peasant households.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institutional. The civil law proclaimed in 1914 created the legal category of family. It strengthened familial tie and enlarged family scale. It helped families consolidate their kinship relations. Most of rural families became more egalitarian in their economic and social status. The traditional social discrimination between Yanbang(兩班) and Sangmin (常民) disappeared concomitantly. The 20th century history of Eonyang-myon was not merely the modernization just started, but also the prolonged Confucian transformation which had started several centuries ago in Korean history.

Keywords: Peasant society, Mountainous paddy area, Regime of independent farmer, Confucian transformation, Modernization in double track